

2011
수산관련법령집(하)



목 차

■ 어 선 법	1
○ 어선법 시행령	27
○ 어선법 시행규칙	33
■ 낚시어선업법	225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235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248
■ 어장관리법	267
○ 어장관리법 시행령	281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291
■ 내수면어업법	311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327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311
■ 수산물품질관리법	323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47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49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337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338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335
■ 기르는 어업육성법	703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717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727

■ 어업자원보호법	747
○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751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57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17
○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9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5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어 선 법

어 선 법

전문개정	1993. 6. 11	법률제4559호
일부개정	1995. 12. 30	법률제5131호(수산업법)
	19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1997. 12. 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 12. 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 12. 17	법률제5470호(선박안전법)
	1999. 2. 8	법률제5921호
	1999. 4. 15	법률제5971호(선박안전법)
	1999. 4. 15	법률제5972호(선박법)
	2002. 1. 14	법률제6609호
	2007. 1. 3	법률제8221호
	2008. 2. 29	법률제8852호
	2008. 3. 28	법률제9007호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제10219호

제 1 장 총 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설비·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제3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명·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5.27]

제4조(만재흡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흡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

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 2 장 어선의 건조

제7조 삭제 <1999.2.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② 삭제 <1999.2.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삭제 <1999.2.8>

제12조 삭제 <1999.2.8>

제 3 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8.3.28]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관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관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관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관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 삭제 <1999.2.8>

제 4 장 어선의 검사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3조 삭제 <1997.12.17>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

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6조 삭제 <1997.12.17>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 [본조신설 2009.5.27]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5.27]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제 5 장 삭 제

제31조 삭제 <1997.12.17>

제 6 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 7 장 삭 제

제34조 삭제 <1999.2.8>

제35조 삭제 <1999.2.8>

제36조 삭제 <1999.2.8>

제 8 장 보 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

를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제38조(청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② 삭제 <19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어선 또는 어선설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 대행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제 9 장 벌 칙

제43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1.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흡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 삭제 <1997.12.17>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와 「선박안전법」 제83조제9호, 제85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개정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7>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부 칙 <제4559호, 1993. 6.1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농림수산부령 제939호 1985·7·4 개정)”은 제3조·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청장의 고시일 전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 (어선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어선에 해당하게 되는 선박(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면허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는 선박에 대하여 등록후 1월이내에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을 위한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어선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어선등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건조·개조중인 어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건조·개조중인 선박으로서 당해 선박의 소유자 또는 당해 선박을 건조·개조하는 자가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4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어선의 총톤수측정에 대한 특례)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의 소유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어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공무원
제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5조제25호에 계기한 자에 있어서는 그 소속관서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제27조제4항중 “어선법 제16조”를 “어선법 제21조”로 한다.

제32조제3호중 “어선법 제26조”를 “어선법 제34조”로 한다.

부 칙 <제5131호, 1995.12.30>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수산제조업”을 “수산물가공업”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 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 생략

<21>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제12호, 제4조 본문, 제5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제1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제4호, 제2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 제27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6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 본문,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내지 제5항, 제46조제3호, 제49조 후단,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제5조제1항 단서·제2항, 제8조제1항·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제3호, 제22조제1항·제4항·제6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5항, 제26조, 제2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제37조, 제39조 본문 및 제41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2〉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제5470호, 1997.12.17>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어선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선의 검사, 제조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어선검사등”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설비, 만재흡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의한 선박시설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생략

제9조 (한국어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이하 “어선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어선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어선협회의 명의로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어선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어선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술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어선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어선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어선의 등록·검사 및 조사·연구”를 “어선의 등록 및 조사·연구”로,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향상”을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제21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중 “어선의 등록·검사등”을 “어선의 등록등”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제39조제6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의 제목중 “검사”를 “총톤수측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

②시·도지사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술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벌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8조중 “제43조 내지 제47조”를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벌칙의 준용) 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제50조중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을 “선박법”으로 한다.

제51조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구”를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중 “검사증서등을 교부하는 어선협회”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기술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 <제5921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방치된 어선의 관리 또는 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5971호, 1999. 4.15>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원”을 각각 “검사협회”로 한다.

제52조중 “기술원”을 “검사협회”로 한다.

부 칙 <제5972호, 1999. 4.15> (선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등록신청 및 이에 따른 선박국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선적증서교부신청 및 이에 따른 선적증서교부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제36조제2호(동법 제1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톤수증서를 비치·반환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 칙 <제6609호, 2002. 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 건조·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허가취소는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어선의 등록을 한 것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말소 신청에 관하여 행한 최고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어선번호판 등의 반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중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8221호, 2007. 1. 3>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제2항”을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6> 까지 생략

<667>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6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007호, 2008. 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부 칙 <제9718호, 2009. 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제8조제1항·제9조제1항·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제조·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흡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0219호, 2010. 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어선법 시행령

전문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0호
일부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7. 29	대통령령	제15447호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 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99. 4. 7	대통령령	제16226호
	2002. 6. 3	대통령령	제17623호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7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3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제2조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때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채권금액·촉탁기관·촉탁일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5]

제3조 삭제 <1999.4.7>

제4조 (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제5조 삭제 <1998.7.1>

제6조 삭제 <1998.7.1>

제7조 삭제 <1998.7.1>

제8조 삭제 <1998.7.1>

수산물관련법령집

제9조 삭제 <1998.7.1>

제10조 삭제 <1998.7.1>

제11조 삭제 <1999.4.7>

제12조 삭제 <1999.4.7>

제13조 삭제 <1999.4.7>

제14조 삭제 <1999.4.7>

제15조 삭제 <1999.4.7>

제16조 삭제 <1999.4.7>

제17조 삭제 <1997.12.31>

제18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명령과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명령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3, 2008.2.29, 2008.6.25, 2009.11.2>

[전문개정 1999.4.7]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6.25]

부 칙 <제14090호, 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차어선의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에 대하여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3. 통신부의 승무기준중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선(무선전신시설을 설비한 선박에 한한다)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	통신장	3급통신사
	총톤수 500톤이상 2만톤미만의 선박	통신장	2급통신사
	총톤수 2만톤이상의 선박	통신장	1급통신사 (외국선박은 2급통신사)

②전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을 “어선법제5조제1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5]의 제3종국의 대상선박란중 “제2종 또는 제3종의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어선”으로 한다.

[별표6]의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이 있는 어선”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3673호, 전과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표중 어선의 항행구역란중 “제2종 또는 제3종 종업제한을 가진 어선”을 삭제한다.

부 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4조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호,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7>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15447호, 1997. 7.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어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임차어선에 대한 법적용)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한 어선에 대하여 법을 적용할 사항은 법 제11조, 법 제13조(등록부분에 한한다),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8조 내지 제20조, 법 제35조, 법 제37조제1항·제3항, 법 제38조제2호, 법 제39조제2호 내지 제5호, 법 제42조, 법 제47조제5호·제6호, 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 법 제53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중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를 “법 제5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중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부 칙 <제16226호, 1999.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623호, 2002. 6. 3>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권한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한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직권등록말소 등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어선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0867호, 2008. 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803호, 2009.11. 2>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09.11.2>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1호	10만원
2.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2호	30만원
3. 법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3호	5만원 1만원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4호	5만원 1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5호	5만원 1만원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가. 10일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법 제53조제1항제6호	5만원 1만원
7.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 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법 제53조제1항제7호	30만원

비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1994· 6· 16	농림수산부령제	1143호
일부개정	1998· 1· 24	해양수산부령제	48호
	1998· 9· 5	해양수산부령제	70호(선박안전법시행규칙)
	1999· 5· 17	해양수산부령제	117호
	2000· 1· 6	해양수산부령제	156호(선박법시행규칙)
	2001· 12· 31	해양수산부령제	212호
	2002· 7· 15	해양수산부령제	231호
	2004· 8· 7	해양수산부령제	277호
	2007· 11· 23	해양수산부령제	390호
	2008· 2· 4	해양수산부령제	408호
	2008· 2· 27	해양수산부령제	413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2008· 7· 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호
	2009· 12· 1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10· 4·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2009.12.14>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 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만재흘수선”이란 어선이 사람과 어획물 또는 화물을 싣고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흘수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

5. “동력어”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지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사양서·계산서·표·자료 등 어선의 치수·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 2 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제4조(건조·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2.27, 2008.3.3, 2008.7.8, 2009.12.14>

1. 농림수산물부 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산물운반선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12.31]

제5조(건조·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1999.5.17>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2009.12.14>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먼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1999.5.17]

제7조(건조·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9.5.17>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먼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1999.5.17>
3.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삭제 <1998.1.24>

제9조 삭제 <1999.5.17>

제10조 삭제 <1999.5.17>

제11조 삭제 <2009.12.14>

제 3 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제 1 절 어선의 톤수측정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 측정·개측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8.3.3,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13조 삭제 <2009.12.14>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에 따른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

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④ 총톤수·순톤수·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에 따른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12.14>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개측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여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 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④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측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 또는 표”라 한다)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축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9조 삭제 <2008.7.8>

제20조 삭제 <2009.12.14>

제 2 절 어선의 등록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1999.5.17>
5. 삭제 <2002.7.15>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2008.7.8>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0.1.6, 2008.3.3, 2008.7.8>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7.8>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 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17, 2008.7.8>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 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구·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1999.5.17>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군·구·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1999.5.17>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

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삭제 <1999.5.17>
- ⑥ 삭제 <1999.5.17>
- ⑦ 삭제 <1999.5.17>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7.10.18, 2008.7.8, 2009.12.14>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범선의 경우에 한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 나. 상갑판위의 용적
 - (1) 선수루의 용적
 - (2) 선교루의 용적
 - (3) 선미루의 용적
 - (4) 갑판실의 용적
 -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 가. 선수루의 용적
 - 나. 선교루의 용적
 - 다. 선미루의 용적
 - 라. 갑판실의 용적

-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8>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2009.12.14>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 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1999.5.17, 2008.7.8>

-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

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8.7.8, 2009.12.14, 2010.4.28>

③ 삭제 <1999.5.17>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7.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7, 2002.7.15, 2008.7.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7, 2002.7.15, 2008.7.8>

제27조 삭제 <1999.5.17>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2.7.15, 2008.7.8>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2.7.15, 2008.7.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2009.12.14>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전문개정 2001.12.31]

제 3 절 선박국적증서등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0.4.28>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전문개정 2008.7.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제목개정 2008.7.8]

제35조 삭제 <1999.5.17>

제36조 삭제 <1999.5.17>

제37조 삭제 <1999.5.17>

제38조 삭제 <1999.5.17>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1999.5.17>

제40조 삭제 <2009.12.14>

제 4 장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 등

제 1 절 통 칙

제41조(만재흡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흡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12.14]

제 2 절 검사의 집행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와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 가.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본조신설 2009.12.14]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水密性)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위벽(圍壁)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으로 어선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4. 탱크, 펌프실,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변경하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제11호의 설비로 한정한다.
 8. 법 제4조에 따른 만재흡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거나 그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증설·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의 감항성(堪航性)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 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

략한다)

3.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어선개조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8조(임시항행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의 측정 또는 개측을 받을 장소로 항행하려는 경우
2. 어선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어선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항행하려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제8호·제9호·제11호의 설비와 해당 어선의 감항성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어선의 항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49조(어선의 검사 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어선의 검사가 면제되는 어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어선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선을 하려는 어선소유자는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42호서식의 계선사유서에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증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선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이 끝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선한 어선이 제2항에 따른 계선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어선을 항행에 재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정기검사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

가.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나.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본조신설 2009.12.14]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1조(건조검사의 면제)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조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3.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4.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고시하는 외국 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52조(예비검사)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이란 별표 3의 어선용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대하여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예비검사신청서에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하여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선용품 중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수리 또는 정비에 착수하였을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4의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45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⑤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경우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6호서식의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한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인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의 발급에 갈음하여 정비기록부에 선박검사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예비검사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3조(별도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신청서에 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하여 승인받은 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설비와 만재흡수선으로 하되,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별도건조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4조(도면의 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변경)신청서에 별표 6에서 정한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면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도면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이 없는 경우의 도면
2.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어선의 도면
3. 대행검사기관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의 기존 도면. 다만, 기존 도면이 해당 어선과 같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당 대행검사기관에서 설계하거나 설계 감리한 도면
5.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어선의 도면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면승인의 표시는 별표 7의 증인(證印)을 도면의 적절한 곳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어선내의 장소가 좁아 도면을 갖추어 둘 수 없는 어선으로서 어선소유자,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통하여 도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해당 어선의 정기검사 시에 측정하며,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6조(검사의 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나 중간검사에서 해당 정기검사일이나 중간검사일 전 6개월 이내에 부분적인 수리나 정비를 하고 임시검사에 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의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한정한다), 제4호다목 및 제7호다목(구명설비의 현상검사에 한정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령 15년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선체에 관한 준비사항 중 별표 8 제1호가목의 선체에 대한 입거 또는 상가준비를 수중검사 준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별표 8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준비는 면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 결과 부식 또는 손상 등으로 인하여 입거 또는 상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거 또는 상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은 별표 15와 같다.

⑥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1항부

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의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는 별표 16과 같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8조(어선 검사 등의 참여) ① 어선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어선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 등에 참여한 자는 검사 및 검정·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 시험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한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2. 형식승인증서번호와 형식승인일자
3.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 물건이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공정, 부품, 자재 및 각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여 제조사양서대로 제조되었는지와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형식승인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검정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형식승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4(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 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미사업장(이하 “우수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우수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5(우수사업장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의 개요
2. 제59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에 관한 규정(우수건조사업장 또는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고, 이하 “건조·제조규정”이라 한다)
 - 가.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 나.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 다. 건조·제조공정
 - 라. 품질관리
 - 마. 시험과 검사체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이 포함된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하며, 이하 “정비규정”이라 한다)
- 가.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 나.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 다.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 라. 조립 후의 조정방법

5.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장이 제59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서류와 현장심사(이미 지정받은 품목과 같은 품목인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한다)를 통하여 확인하고,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며, 해당 사업장이 건조·제조 또는 정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6(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우수사업장지정(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및 사유가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7(지정대상물건의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대상물건과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확인을 받으려는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그 외의 지정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우수사업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우수건조사업장의 경우: 소형어선의 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2. 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3. 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크기 또는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2.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3. 건조·제조 또는 정비일자

4. 건조·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지정대상물건에 제65조에 따른 확인 합격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우수사업장은 해당 지정대상물건이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된 건조·제조 또는 정비규정에 적합하게 건조·제조 또는 정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체검사합격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지정대상물건에는 별표 18의 자체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59조의8(지도·감독)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물건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0조(하역설비의 확인) ① 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

서 1톤 이상의 어획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하역장치 및 하역장구 등)를 갖춘 어선소유자는 제한하중·제한각도 및 제한반경(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경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어선소유자는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2조(하역설비에 관한 검사의 기록 및 비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에 갖추어야 한다.

1. 제한하중등확인서
2.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본조신설 2009.12.14]

제 3 절 어선검사증서 등 <신설 2009.12.14>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

제조·정비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에 대하여 대항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제한기압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어선원과 기타의 자[단순 어부, 「남시어선업법」에 따른 남시승객,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등 어선이 항행하는 동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서 어선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각각 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로 탑승한 인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28>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제한기압 및 만재흡수선의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14]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12.14]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본조신설 2009.12.14]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
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본조신설 2009.12.14]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
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14]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농림
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9조의5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렸으면 그 사유서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그 해당 증서등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제 5 장 보 칙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9.5.17, 2002.7.15, 2008.3.3, 2008.7.8>

1. 어선건조·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1999.5.17>

②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2008.3.3, 2008.7.8>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2008.3.3>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2001.12.31, 2007.11.23, 2008.3.3>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

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삭제 <1999.5.17>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정검하는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4, 1998.9.5, 19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에 대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 제6조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조·개조허가 면제 대상의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4]

부 칙 <제1143호, 1994. 6.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의 길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어선의 길이·깊이 및 너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어선의 총톤수를 개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어선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의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어선번호는 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어선번호판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존하는 어선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정기검사를 받는 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는 날)까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새로이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처음 도래하는 당해어선의 등록일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및 어선검사증서유효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그 검사중 먼저 도래하는 검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어선에 대한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합격시 발급하는 어선검사증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선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부 칙 <제48호, 1998. 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0호, 1998. 9. 5>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43조”를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로, “어선검사집행지”를 각각 “검사장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법 제5조제1항”을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 및 2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어선검사사항을 통보

받은 때”를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로 한다.

제32조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검사업무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어선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한다) 또는 선급법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선박안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검사를 면제받는 어선”을 “선박안전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어선”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장(제41조 내지 제65조)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항해상의 조건 및 위험방지등”을 “국기계양의 의무등”으로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기술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검사업무등을”을 “업무를”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②기술원 또는 선급법인은 검인기간이 지난 후에 선박국적증서등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선적함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중 “한국어선협회”를 “기술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중 “제25조제3항·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4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내지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각각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면중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제40조제1항 또는 제64조제1항”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 한국선급”을 “한

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증, 제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면의 구비서류란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며,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을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중 “한국어선협회장 CHIEF OF KOREAN FISHING VESSEL SOCIETY”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 PRESIDENT OF KOREAN INSTITUTE OF SHIP SAFETY AND TECHNOLOG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검사집행지”를 “검사장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뒷면의 유의사항중 “한국어선협회”를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1호서식의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및 유의사항란중 “한국어선협회”를 각각 “한국선박안전기술원”으로 하고, 동면의 유의사항란중 어선 검사면제 대상어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5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17호, 1999. 5.17>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기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용선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어선으로 등록한 선박의 대한민국 국기게양에 관하여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 및 제11항 후단을 각각 삭제한다.
- ④법 제39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같다.
별표 2의 제목중 “재교부 및 검인”을 “재교부”로 하고, 동표중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의 검인란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부 칙 <제156호, 2000. 1. 6> (선박법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어선법시행규칙중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중 “선박법시행령 제4조제2항”을 “선박법 제26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 칙 <제212호, 2001.12.3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어선의 건조허가면제어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조중에 있거나 건조를 완료한 어선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허가를 면제받은 어선이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31호, 2002. 7.15>

이 규칙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0호, 2007.11.2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어선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소”를 “검사장소”로 한다.

제32조제2호 단서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3항 및 제76조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

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 <제413호, 2008. 2.27>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나목·라목,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제2항, 제32조제2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제1항·제3항, 제76조,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안전정책담당관

실”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6호서식 중 “MINISTER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38>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9호, 2008.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0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년 4월 22일까지는 제4조제1호나목, 제68조제2호 및 별표 16 제3호카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수산업법」 제44조로, 「수산업법」 제27조는 「수산업법」 제29조로,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는 「수산업법」 제43조제3항으로 각각 본다.

제3조(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2008년 10월 1일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어선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배의 길이 7미터 이상: 2010년 3월 31일까지
2. 배의 길이 6미터 이상 7미터 미만: 2011년 3월 31일까지
3. 배의 길이 6미터 미만: 2012년 3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제43조제1항제2호의 승인도면 첨부를 면제한다.

제4조(별도건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2 제2호의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입 전 해당 외국정부(대행 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등이 실시한 검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2. 제작 또는 거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관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단서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로 하고,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하며, 제64조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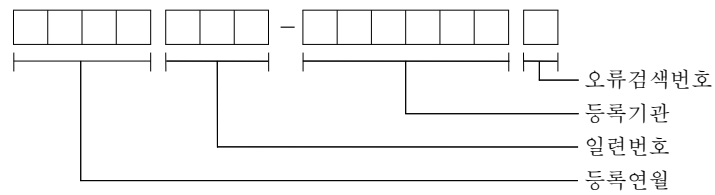
⑧ 및 ⑨ 생략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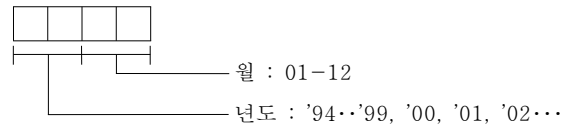
어선번호의 부여방법 (제21조제3항관련)

- 어선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록연월 4자리수, 일련번호 3자리수, 등록기관별 분류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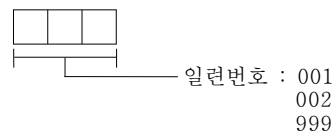
어선번호의 구성체계(14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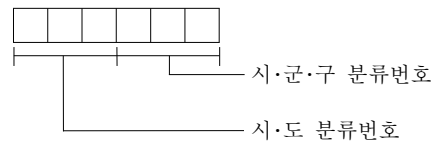
- 등록연월은 연도 끝 2자리수와 월 2자리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일련번호는 어선원부에 기재하는 매월별 순서번호에 의하여 매월마다 새로운 순서에 의하되 그 순서번호가 3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3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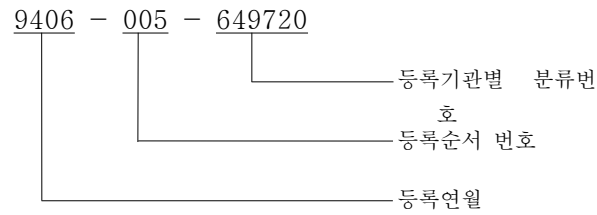
-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는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행정코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다음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등록연월, 등록순서 번호, 등록기관별 분류번호를 차례로 연결한 13자리의 숫자로 만든다.

[예 시]



나. 각 숫자에 차례로 1과 2를 곱한 값(곱한 값이 10을 넘을 경우 그 곱한 값에서 10을 뺀 나머지 값)을 모두 더하여 합을 구한다.

[예 시]

$$\begin{array}{r}
 9406005649720 \\
 \times) 12121212121 \\
 \hline
 9802005248740 \\
 \\
 9+8+0+2+0+0+5+2+4+8+7+4+0=49
 \end{array}$$

다. 합을 10으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예 시] $49 \div 10 = 4$ 나머지 9

라.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다만, 10에서 나머지를 뺀 값이 10인 때에는 0을 오류검색번호로 한다.

[예 시] $10 - 9 = 1$ 오류검색번호

[별표 2] <신설 2009.12.14>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 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강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 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의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노출된 상갑판 및 선루갑판	호스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단격벽에 제2급 폐쇄장치를 갖춘 선루 내의 상갑판		
수밀격벽 및 그 계단부		
외판	호스 내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또는 수고압력. 다만, 이중저·선수창 등을 구성하는 부분의 외판은 해당 부분의 수압시험의 방법에 따른다.	
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묘쇄고	정판까지의 수고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격벽의 수밀문	취부 전	그 수밀격벽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취부 후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1) 넘침관의 상단 2) 만재흡수선
디프탱크	3) 정판 위 2.4미터의 높이 4)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
제1급 폐쇄장치의 개구를 설치한 선루 및 저선미루단의 격벽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추로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판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활어창	정판까지의 장수에 따른 압력
복판타	1.5 D 또는 2 d 중 작은 값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이 경우 D는 배의 깊이, d는 지정된 흡수로 한다.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 방안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별표 3] <신설 2009.12.14>

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

1. 예비검사 대상 어선용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체에 관한 것

- 1) 선체구조용 재료(강재, 강재외의 금속재료, 플라스틱수지, 유리섬유, 고무포 등)
- 2)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 24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3) 선미골재
- 4) 타
- 5) 타두재
- 6) 타심재
- 7) 수밀폐쇄장치

나. 기관에 관한 것

- 1) 내연기관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2) 선내외기(船内外機)
- 3) 선외기(船外機)
- 4) 보일러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5) 배기터빈과급기 또는 그 기관의 중요부분(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재료시험을 받아야 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
- 6) 압력용기
- 7) 열교환기
- 8) 공기압축기(수동식 제외)
- 9) 중간축, 역전기축, 스러스트축, 직경 50밀리미터 이상의 프로펠러축, 기타 동력전달축
- 10) 축계의 클러치, 역전기, 유체커플링, 탄성커플링 또는 감속장치
- 11)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선미관, 선미관실 장치
- 12) 프로펠러 또는 그 날개
- 13) 아웃드라이버장치
- 14) 러더프로펠러장치
- 15) 워터젯트추진장치
- 16) 액량계측장치
- 17) 유량계
- 18) 유가열기
- 19) 원격제어장치

- 20) 1류관용 관류(플렉시블 호스를 포함한다)
- 21) 펌프류
- 22) 밸브류
- 23) 탄성체의 고무엘리먼트

다. 배수설비에 관한 것

- 1) 빌지펌프
- 2) 선외펌프

라.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것

- 1) 유압조타장치
- 2) 닻
- 3) 쇠사슬
- 4) 로프
- 5) 유압펌프
- 6) 유압모터
- 7) 양묘장치
- 8) 계선장치
- 9) 비상예인장치

마. 구멍설비에 관한 것

- 1) 구멍정
- 2) 구조정
- 3) 구멍뗏목지원정
- 4) 구멍정, 구조정, 구멍뗏목지원정의 추진기관
- 5) 공기자급식구멍정의 공기자급장치
- 6) 구멍뗏목
- 7) 진수장치
- 8) 탑승장치
- 9) 보트대빛
- 10) 보트윈치
- 11) 구멍부기
- 12) 구멍부환(구멍줄을 포함한다)
- 13) 구멍조끼
- 14) 구멍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
- 15) 방수복
- 16) 보온구
- 17)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 18) 자기점화등

수산관련법령집

- 19) 탐조등
- 20) 구명조끼 표시등
- 21) 캐노피등
- 22) 수밀전기등
- 23) 구난식량·식수
- 24) 해수탈염장치
- 25)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26) 수압이탈장치
- 27) 위크링크
- 28) 레이더반사기
- 29) 역반사재
- 30) 노출보호복

바. 소방설비에 관한 것

- 1) 소화펌프
- 2) 소화기(휴대식포말방사기를 포함한다)
- 3) 소화장치의 부품(압력용기, 스프링클러헤드, 매니폴드, 모니터, 혼합기, 밸브류, 관류)
- 4) 소화제
- 5) 소화호스, 노즐
- 6) 소방원장구(개인장구, 호흡구)
- 7) 물분무방사기
- 8)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9) 화재탐지장치(탐지기, 제어반, 표시반, 경보장치 및 구성부품)
- 10) 수동화재경보장치(발신기, 표시반 및 제어반)
- 11) 가연성가스검정기
- 12) 방화용재료
- 13) 방화문
- 14) 자동폐쇄형방화담퍼
- 15) 고속배기장치
- 16) 플레임어레스트

사. 거주설비에 관한 것

- 1) 기계식통풍장치
- 2) 현창
- 3) 비상표시등, 탈출유도등
- 4) 비상조명장치
- 5) 공기식 매트리스

아. 항해용구에 관한 것

- 1)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2)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3) 자기컴퍼스
- 4) 자이로컴퍼스
- 5) 음향측심기
- 6) 선속거리계
- 7) 회두각속도계
- 8) 도선사용사다리
- 9) 엔진텔레그래프
- 10) 재화문개폐표시장치
- 11) 누수검지장치
- 12) 흘수계측장치
- 13) 위성항법장치(GPS) 및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자. 어로 및 하역 기타 작업설비에 관한 것

- 1) 크레인
- 2) 하역장치의 부품[테러붐, 윈치, 와이어로프, 블록, 구즈넥(Goose Neck)브래킷]
- 3) 어로용 윈치 또는 그 부품

차. 전기설비에 관한 것

- 1)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 2)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
- 3) 정격출력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변압기
- 4)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배전반
- 5)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제어기
- 6) 방폭형전기기기 및 기구
- 7) 주파수변환장치
- 8) 선박용전선

카. 기타

- 1) 승강설비 또는 그 중요부품
- 2) 냉동설비의 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은 예비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산물관련법령집

가. 다음에서 정하는 어선용품

- 1) 원동기: 22kW(30PS) 미만의 것
- 2) 공기압축기: 수동식의 것
- 3) 중간축: 직경 60밀리미터 미만의 것
- 4) 프로펠러축: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것
- 5) 선미관: 직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프로펠러축에 사용되는 것
- 6) 프로펠러: 직경 700밀리미터 미만의 것
- 7) 관류(플렉시브호스 포함): 1류관용 외의 것
- 8) 펌프류: 수동식의 것
- 9) 밸브류: 안전밸브, 선체불이밸브 및 1류관용 외의 것
- 10) 쇠사슬: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것
- 11) 로프: 계선 또는 계류장치에 사용되는 다음의 로프
 - 가) 지름 1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 나) 지름 24밀리미터 미만의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 12) 현창: KS V ISO 1751 C급 제외
- 13) 발전기: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4) 배전반: 정격출력 5킬로와트 또는 5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5) 변압기: 정격출력 5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것
- 16) 전동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미만의 것
- 17) 제어기: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상의 전동기에 사용되는 것 외의 것
- 18) 하역장치: 1톤 미만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것
- 19) 냉동설비(냉매압축기, 압력용기, 열교환기, 안전밸브): 사용동력이 7.5kW(10PS) 이하로서 1차냉매를 R12, R22, R404a 또는 R502로 하는 냉동설비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으로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선급법인의 검사를 받은 어선용품

- 1) 외국에서 건조나 수리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2)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거나 차용한 어선에 비치된 어선용품
-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어선용품

다.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설치되어 검사를 받아오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물건(다만, 별표 16 제3호카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

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설치하는 기관

[별표 4] <신설 2009.12.14>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
(제52조제1항 관련)

1. 시설

가. 작업장

- 1) 천장의 높이는 4.5미터 이상,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정비하려는 구명뗏목을 펼쳤을 때의 바닥면적보다 클 것
- 2) 구명뗏목을 들어 올려 고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나. 수세장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수세시설을 갖출 것

다. 누설 시험장

- 1)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바닥은 뗏목의 고무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깔 것
- 3)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장치를 갖출 것
- 4) 실내온도 및 상대습도 조절장치를 갖출 것
- 5)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마. 부품 진열장

- 1) 공구, 비품류 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정비하여 놓을 수 있도록 선반식으로 되어 있을 것
- 2)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바. 사무실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사. 위험물저장소

관계 법령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인원

가. 정비기술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관한 정비기술이 있는 것으로

수산관련법령집

로 인정하는 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작업원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기구 및 비품류

가. 점검을 위한 기구류

- 1) 솔 등 뗏목 수세용구
- 2) 용기 분해용공구
- 3) 가스 주입장치 분해용공구
- 4) 손전지 또는 회중전등
- 5) 바닥이음부 시험을 위한 뗏목 지지대 등

나. 정비 및 보수용기구

- 1) 접착가공용구
보관용기(고무풀, 촉진제 및 용제를 포함한다), 솔, 접시저울(칭량 1킬로그램 정도), 빠른 건조를 위한 적외선램프 또는 드라이어, 가위, 롤, 라분대 등
- 2) 끈 및 로프 가공용구
실감개, 바늘류, 절단기
- 3) 봉제 가공용구
공업용재봉틀
- 4) 납땜 가공용구
납땜 인두
- 5) 구멍쇠 및 눌림단추 가공용구
각종 치수의 편치 및 타구
- 6) 도장 및 솔 가공용구
- 7) 젖은 뗏목을 건조시키는 데에 충분한 온풍기
- 8) 진공펌프

다. 검사를 위한 기구

- 1) 누설시험을 위한 기구
압력계(혈압계 수은주 300밀리미터 또는 수압계), 온도계, 기압계(아네로이드형), 공기압축기 및 전동 송·배풍기
- 2) 가스용기검사를 위한 기구류
저울(칭량 20킬로그램), 운수시험용 물탱크(용기 1개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것일 것) 및 용기내압 시험설비
- 3) 자동이탈장치 시험용구(팽창식 구멍뗏목 또는 팽창식 구멍부기의 경우로 한

정한다)[하중 5킬로그램 및 하중 200킬로그램에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일 것]

4) 그 밖의 습도계, 10미터 줄자 등

라. 그 밖의 기구류

1) 컨테이너 개방용공구

스패너, 지렛대 등

2) 그 밖에 특히 지정된 공구류

마. 보수용 비품 및 소모품

보수용 각종 고무포, 심, 끈, 밧줄류, 접착제, 용제, 도료, 인쇄잉크, 교환용부품 등

4. 자체정비기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 기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확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 <신설 2009.12.14>

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

1. 입거(入渠)되거나 상가(上架)된 상태에서 압력시험을 실시한다.
2. 압력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밀시험의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따라 확인한다.
 - 가. 압력시험의 범위는 강력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 또는 상갑판 위의 첫째 갑판 실로 하며 반드시 선박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 나. 수고(水高)나 압력을 확인하고, 물이나 공기가 새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 다.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부재(部材)가 변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 후 보장한다.
 - 라. 선체 각 부에 대한 수압시험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항목	수압시험의 기준
이중저	정판부터 공기관 상단까지 수고압력과 정판부터 격벽갑판까지의 수고압력 중에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수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과 선수 격벽의 높이의 3분의 2까지의 수고압력 중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그 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의 수밀 격벽의 수밀문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선미창(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선미관구획실	만재흡수선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다만, 만재흡수선 이상의 부분은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물탱크나 유탱크로 사용하는 선수창 또는 선미창	정판부터 다음 위치까지의 수고압력 중 가장 큰 것에 상당하는 압력 가) 넘침관의 상단
디프탱크	나) 만재흡수선 다) 배의 깊이의 상부기점으로부터 정판까지의 수직 거리의 3분의 2를 정판부터 상방으로 수직으로 측정 한 높이
측로	호스 내의 압력이 2 bar [2 kgf/cm ²] 이상인 사수에 따른 압력
그 밖의 수밀통로	
제1급 폐쇄장치를 설치한 선루단격벽의 출입구	
수밀폐쇄장치를 갖춘 갑판구(창구를 포함한다)	
현문, 재화문 및 현창	

펌프실과 겸용하지 아니하는 코퍼댐	정관부터 창구 정부까지의 수고압력에 상당하는 압력
펌프실과 겸용하는 코퍼댐	호스 내 압력 2 bar [2 kgf/cm ²] 이상의 사수압력

마.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 대신에 다음의 기밀시험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마다 기밀시험을 희망하는 부위, 시험압력, 시험방법, 사용할 압력계의 종류, 검사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기밀시험방안서를 받아 사전 검토 후 실시하고, 현장 입회시 누설개소가 많거나 사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른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 1) 기밀시험의 압력은 0.2bar[0.2kgf/cm²]로 한다.
- 2) 시험압력은 U자형 게이지나 2개의 원형지시압력계로 확인한다.
- 3) 누설개소의 압력은 검지액(檢知液)을 발라 확인한다.
- 4) 현장 입회 전에 조선소로 하여금 사전확인을 충분히 하게 하고 누설개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게 한다.

[별표 6] <신설 2009.12.14>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54조제1항 관련)

1. 건조(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경우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가) 일반배치도 또는 배의 길이, 너비, 깊이, 최대 승선인원, 격벽위치, 기관의 종류 및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달로그

나)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관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고, 나) 및 다)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 가)의 도면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가) 1)의 가)부터 다)까지의 도면

나) 기관실전체장치도

다)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 50kVA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경우

1) 건조사양서(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2) 일반배치도

3) 선체선도

4) 중앙횡단면도

5)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6) 외관전개도(강선과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7) 배수량등곡선도

8) 기관실전체장치도

9) 흡수표배치도

10) 제개구폐쇄장치도

11) 전기계통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2) 구조 및 배치를 나타내는 설계도면(별도건조검사 대상은 제외한다)

가) 상갑판하 선체구조도

나) 선미재 및 스트러트 구조도

- 다) 선루 및 갑판실 구조도
 - 라) 램프게이트 구조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타(舵)구조도
 - 바) 축계장치도
 - 사) 제관장치도(갑판배관장치를 포함한다)
 - 아) 냉동기기배치도, 열부하계산서 및 이에 따른 배관도(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자) 비틀림진동계산서(중간축구조도, 프로펠러축구조도, 프로펠러구조도 및 계산 관련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차) 하역장치 배치 및 강도계산서(총톤수 300톤 이상인 어선에 설치되어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장치로 한정한다)
 - 카) 전기설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전력조사표
 - (2) 전기기기 배치도
2.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관련 도면
- 가. 제1호의 도면
 - 나. 승강설비에 관한 검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서류
 - 1) 승강설비 장력계산서
 - 2) 승강설비 배치도와 승강설비 구조도
 - 3) 승강설비의 사용재료를 나타내는 서류
 - 4) 승강설비의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서류
3. 임시검사 관련 도면
- 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제2호의 도면 중 해당 도면
 - 나. 만재흡수선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의 도면
 - 1) 선체선도
 - 2) 중앙횡단면도
 - 3) 배수량등곡선도
 - 4) 갑판평면도
4. 예비검사 관련 도면
- 가. 어선의 선체
 - 1) 일반배치도
 - 2) 중앙횡단면도

3) 재료배치도

나. 내연기관

- 1) 조립횡단면도 및 조립종단면도
- 2)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쿨링재킷구조도
- 3) 크랭크축(평형추 및 볼트, 커플링볼트를 포함한다) 구조도
- 4) 피스톤, 크로스헤드, 피스톤로드 및 연결봉 조립도(볼트를 포함한다)
- 5) 연료분사관 및 피복장치도
- 6) 제관장치도(연료유, 윤활유, 냉각유, 냉각수, 공기 및 유압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7) 베드 및 스러스터블록과 기관대와의 거치상세도(주기관으로 한정한다)
- 8) 크랭크실 도출밸브의 구조 및 배치도(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9) 소기용송풍기 또는 배기터빈과급기의 조립단면도
- 10) 기관 주요 요목(종류, 형식, 연속최대출력, 연속최대회전수, 착화순서, 실린더내최대압력, 도시평균유효압력, 정미평균유효압력, 각 실린더의 왕복운동부의 질량, 플라이휠의 중량 및 지름, 평형추의 질량, 회전반지름 및 부착위치, 배기터빈과급기의 사양 등)을 적은 것
- 11)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
- 12) 기관진동에 관한 자료(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수입신품 및 조립완성품의 내연기관(선내외기와 선외기는 제외한다)은 1), 7), 10), 12) 및 정비지침서로 한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선내외기(船内外機) 및 선외기(船外機)

- 1) 기관 주요 요목
- 2) 외형도(기관의 출력 등이 기재된 제작사의 카탈로그를 포함한다)
- 3) 거치도
- 4) 정비지침서 또는 정비표준서

라. 보일러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동체, 노통 및 헤더 등의 상세도 및 노즐상세도
- 3) 배관의 배열 및 상세도(밸브의 배치,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예열기, 보일러 부착품 장치도 또는 장치선도
- 5) 안전밸브의 조립도

- 6)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계통도
- 7) 보일러의 주요 요목, 주요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마. 압력용기

- 1) 전체조립도
- 2) 동체 및 헤더 등의 상세도
- 3) 안전밸브의 조립도
- 4)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계통도
- 5) 압력용기의 주요 요목, 주요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6) 제3종 압력용기는 1) 및 5)로 한정한다.

바. 공기압축기(수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 1)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2)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윤활유, 냉각수 및 압축공기의 각 계통을 포함하여 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기입한 것을 말한다)
- 4) 공기압축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사. 축계장치

- 1) 전체조립도 또는 축계장치도
- 2) 추력축, 중간축, 프로펠러축 및 동력전달축의 구조도
- 3) 커플링 및 커플링볼트 구조도
- 4) 선미관, 선미관베어링, 스트럿베어링 및 선미관실장기구조도
- 5) 프로펠러 구조 및 상세도
- 6)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7)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아. 축계의 클러치, 역진기, 유체 커플링 또는 탄성 커플링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각 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자. 감속장치

- 1) 조립단면도
- 2) 각 기어, 기어축, 플렉시블 커플링, 플렉시블 축 등 주요 부분의 구조도
- 3) 감속기어장치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차. 아웃드라이버 및 러더프로펠러장치

- 1) 조립단면도

수산관련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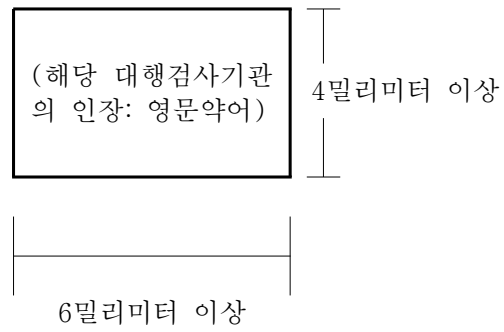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카. 워터제트추진장치
 - 1) 조립단면도
 - 2) 임펠러, 주축, 물흡입관로부, 노즐, 디플렉터, 리버서의 구조도
 - 3)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4) 비틀림진동계산서(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타. 펌프류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주요 부품의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파. 액량측정장치, 유량계, 유가열기
 - 1) 조립단면도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에 관한 자료
- 하. 관 및 밸브류
 - 1)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사용유체·압력·온도에 대한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거. 원격제어장치
 - 1) 원격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제어반의 조립단면도 및 결선도
- 너. 유압조타장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목록표
 - 4) 조타장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서,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더. 구명정·구조정·구명뗏목의 데빳
 - 1) 전체구조도(주요재료 내용을 포함한다)
 - 2)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러. 윈치
 - 1) 기기배치도 및 전체조립도
 - 2) 조정 및 안전장치계통도
 - 3) 제관장치도(관의 재질, 치수 및 사용압력 등을 적어 넣은 것을 말한다)
 - 4) 하중에 대한 강력계산서

- 5) 원치의 주요 요목, 취급설명 및 주요 부품의 재료의 사양
- 며. 구명정 또는 구조정
 - 1) 전체선도
 - 2) 재료배치도
- 버. 발전기 또는 전동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회전축상세도
 - 4) 발전기 또는 전동기의 주요 요목, 특성 및 축재료의 사양
- 서. 변압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변압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 어. 배전반 또는 제어기
 - 1) 전체조립도
 - 2) 내부접속도
 - 3) 배전반 또는 제어기의 주요 요목 및 특성자료
- 저. 냉동장치
 - 1) 제어 및 안전장치계통도
 - 2) 냉매압축기의 조립단면도 및 크랭크축 상세도
 - 3) 냉동기의 주요 요목, 주요 부품의 재료 및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 쳐. 그 밖의 설비
 - 1) 설비의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 2) 설비의 주요 요목, 재료 및 강도가 요구되는 것은 강도계산에 관한 자료

수산물관련법령집

[별표 7] <신설 2009.12.14>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



[별표 8] <신설 2009.12.14>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 선과 배의 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하천·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관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행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짚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수산관련법령집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짚 수 있도록 할 것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착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뿔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착된 중요한 밸브 및 콧을 분해할 것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판의 두께를 짚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1)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콧,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 나. 최고 항해흡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6. 어로·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7.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수산관련법령집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2.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9] <신설 2009.12.14>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2) 프로펠러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쥘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판의 두께를 쥘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닷, 닛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아.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차. 만재흡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멍 및 소방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별표 10] <신설 2009.12.14>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해당 어선에 한정한다)
 - 나. 수밀문·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3. 구멍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4.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5.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해상 시운전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제3호 및 제5호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1] <신설 2009.12.14>

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재료시험 중 재료확인만 해당한다),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2] <신설 2009.12.14>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 가.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비파괴검사(비금속재 어선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강선을 제외한다),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 비파괴검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만재흡수선의 검사에 관한 준비
 - 가. 만재흡수선의 표시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 나. 수밀문·방화문 등의 폐쇄장치의 효력시험의 준비
7.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1호나목, 제3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및 제4호(효력시험만 해당한다)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별표 13] <신설 2009.12.14>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전기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어로·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구명·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항해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어선용품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11. 예비검사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52조제3항의 적용기준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 1)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로서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원이 입회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2)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별표 14] <신설 2009.12.14>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2항 관련)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양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 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L"은 배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어선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양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다. 선령 30년 이상의 어선

위의 나목의 측정범위에 선미부 1단면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두께측정방법

가. 두께측정 실시 전에 선박검사원, 어선소유자 및 두께측정업체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두께측정 준비사항, 두께측정의 범위, 두께측정 요원의 자격, 장비의 검교정 및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두께측정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선박검사원이 두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회의일정 및 참석자
- 2) 측정일정, 조건 및 범위
- 3) 쇄모한도
- 4) 선박검사원, 두께측정 요원 및 어선소유자와의 연락 체계
- 5) 두께측정업자가 제공하여야 할 서류
- 6) 특기사항 등

나. 두께측정은 각 단면당 10포인트 이상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점의 수는 어선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체중양부 0.4L 간의 측정범위에 기관구역 길이의 100분의 50 이상이 중첩될 경우 기관구역은 선체중양부 0.4L 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두께측정업체가 실시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두께측정의 전 과정에 대하여 통제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전 측정과정의 100분의 50 이상을 입회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않는 나머지 측정부위에 대하여는 최소한 100분의 30을 무작위로 확인하여 100분의 10 이상이 기록치와 다를 경우 전체 측정치에 대하여 확인한다.

3. 쇠모한도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로서 측정두께가 규정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재명칭	쇠모한도
가. 외판, 강력갑판, 강력갑판 및 현측 후판상의 증통부재, 디프탱크의 격벽판, 내저판	원래 두께의 20퍼센트 + 1밀리미터 이내
나. 이중저능판, 거더, 큰 골재의 웹 및 면재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이내
다. 작은 골재의 웹면재 및 브래킷, 수밀격벽판, 유효갑판, 창구덮개, 창구보	원래 두께의 30퍼센트 이내
라. 창내능골의 웹 및 브래킷	원래 두께의 25퍼센트 또는 2.5밀리미터 중 큰 값 이내
<p>비고</p> <p>가. 작은 골재란 다른 보강재를 지지하지 아니하는 골재부재를 말한다.</p> <p>나. 원래두께는 도면상의 두께를 말하며, 도면상의 두께와 본선의 두께가 다를 경우 본선의 두께를 말한다.</p>	

4. 두께측정 결과의 조치 및 기록 등

가. 두께측정 결과가 제3호에 따른 선체 주요부재의 쇠모한도를 초과하거나 과도한 부식이 발견된 부분에 대하여는 신환 등 수리하여 쇠모한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과도한 부식”이란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부위의 측정치와 의심되는 부위가 아닌 구역의 가장 큰 측정치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제3호에 따른 쇠모한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나. 두께측정 업체가 측정한 결과는 측정자 및 담당 선박검사원이 서명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별표 15] <신설 2009.12.14>

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

1. 수중검사준비

- 가. 어선은 가능한 한 경하(輕荷)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검사장소는 조류가 약하고 파고가 낮으며 수면 밑의 시계가 양호한 장소로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다. 선박검사원은 다음의 도면을 준비하여 어선소유자와 수중검사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1) 일반배치도
 - 2) 외관전개도(강선 및 알루미늄선으로 한정한다)

2. 수중검사방법

- 가. 수중검사는 다음 부위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1) 만재흡수선하의 선체외관
 - 2) 시체스트, 개구, 선미재 및 빌지킬
 - 3) 프로펠러축 스트럿, 타 및 부착품
 - 4) 프로펠러 및 로프가드
 - 5) 스톨스터
 - 6) 선미관 베어링 틈새(해수유회) 및 타의 베어링 틈새
- 나. 선박검사원은 수중검사 전에 검사준비 사항, 사용장비의 작동상태, 각종 측정장비의 검정·교정 상태 및 잠수부의 자격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선박검사원은 본선에 대한 상황을 사전에 청취하고 잠수부가 잠수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측정사항 등 필요한 검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잠수부는 선박검사원 입회하에 수중검사를 하여야 하며, 어선소유자는 해당 수중검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마. 잠수부는 수중검사 시 선박검사원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 바. 선박검사원은 수중사진 촬영, 수중비디오 촬영 또는 모니터 등에 따라 검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사. 잠수부는 수중검사가 끝나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중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와 선박검사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선박검사원은 검사결과를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일반사항
 - 가) 어선 요목
 - 나) 검사 일정
 - 2) 어선 상태
 - 3) 해상 상태
 - 4) 수중검사업체 및 수중검사자
 - 5) 수중검사장비 명칭
 - 6) 검사 내용
 - 7) 검사 결과
3.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잠수기능사자격을 받은 자로써 수중검사를 수행하는 보조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최소 10회 이상의 수중검사를 수행한 것을 말한다)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별표 16] <신설 2009.12.14>

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

1. 검사준비사항 중 프로펠러축계의 발출검사준비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가. 제1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회의 탐상시험방법이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제2종 축: 전회의 발출검사 완료일부터 36개월(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탐상시험방법은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다.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와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료의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 라.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1) 타는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각 베어링 마모한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 가) 핀틀지름 50밀리미터 이하: 3밀리미터 이내
 - 나) 핀틀지름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 5밀리미터 이내
 - 다) 핀틀지름 100밀리미터 이상: $0.01D+4$ 밀리미터 이내
 - 라) 백베어링: $0.01D+2$ 밀리미터 이내
 -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베어링 틈새 한도 이내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각 베어링 틈새한도는 다음과 같다.
 - 가) 프로펠러축의 지름 230밀리미터 이하: 6밀리미터 이내
 - 나) 프로펠러축의 지름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 8밀리미터 이내
 - 다) 프로펠러축의 지름 305밀리미터 초과: 9.5밀리미터 초과 이내
2. 검사준비사항 중 기관개방검사와 관련한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검사하여 5년 주기 내에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이하 “기관계속검사”라 한다)의 방법을 어선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및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관계속검사 방법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가. 기관계속검사(CMS: Continuous Machinery Survey) 방법

1) 일반사항

기관계속검사 방법은 어선에 설치된 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반드시 정기적 검사 시에 시행할 필요는 없고 어선소유자가 검사준비한 때에 수시로 임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시기를 초과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차기 정기적검사 시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가) 검사의 신청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

기관계속검사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경우 선박검사원은 어선소유자가 제출한 기관계속검사 수검계획서를 참조하여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기관계속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항목란을 수정하여 어선소유자에게 송부한다. 어선소유자는 최근의 기관계속검사 수검목록을 본선에 보관하고 선박검사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검계획서

(1) 어선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 수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원칙적으로 기관계속검사 대상 전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나) 검사의 개시 시기는 최초 정기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다음 검사로 하고 다음 회의 정기검사 시기에 완료되도록 함

(다) 매년 검사하는 항목 수는 거의 균등하게 할 것

(2) 위 (1)에 정한 수검계획서는 본선의 기관보수정비계획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 수검계획서는 시행과정에서 보수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 및 검사요령

가)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정기적검사 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1) 주기관의 크랭크 개폐량의 측정 및 거치볼트의 점검

(2) 증기관장치

(3) 각종 안전장치의 효력 및 성능시험

(4) 예비품

(5) 기관구역무인화선의 효력시험

검사 항목	세부 사항
(가) 주기 디젤기관	실린더커버, 실린더라이너, 피스톤(피스톤핀 및 피스톤로드를 포함한다), 크로스헤드 (핀, 베어링 및 가이드를 포함한다), 연접봉, 크랭크 축 및 베어링, 캠축 및 구동장치, 과급기, 소기펌프 또는 블로어, 공기냉각기, 부속 중요 펌프(윤활유, 연료유, 냉각수)
(나) 주기 증기터빈	터빈 로터, 블레이드, 베어링, 케이싱, 노즐, 노즐밸브, 조종밸브
(다) 보조기관	발전기(비상용은 제외한다) 및 중요보기(어선의 추진, 인명과 어선의 안전 및 어선의 용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주기에 준하여 검사

나) 기관계속검사 적용대상 기관의 검사방법

- (1) 중요 보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간격으로 교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발전기 구동 내연기관 및 빌지펌프 등은 가능한 한 정기 및 중간검사 시에 시행하도록 한다.
- (2) 각 기관별 검사간격은 5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3) 검사한 개소에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세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한 확인검사

기관의 보수 및 유지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경우 선내 보수작업으로 항해 중에 개방하여 기관장이 점검한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기관계속검사를 위한 개방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입항 중에 개방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항구에서 선박검사원에 의한 검사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자격

기관장은 등록국 또는 선적국의 최상급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같은 형태의 추진기관(주내연기관 또는 주 터빈을 말한다)을 갖는 어선에 적어도 1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확인검사

기관장에 의하여 점검된 기관은 원칙적으로 점검일부 5개월 이내에 선박검사원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작동상태에서 기관을 검사한다.

(나) 기관 Log book의 관련 기재사항 또는 정비기록(인정 가능한 전산

기록 등을 말한다)을 조사하고 점검을 시행한 기관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기관장은 점검시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기관장의 서명 및 면허장번호
- ② 점검 연월일 및 장소
- ③ 점검 항목 및 결과

(라) 선박검사원이 기관장보고서 및 기관의 현상을 조사한 결과 개방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개방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의 대상기관 및 대상제외 기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중 주 내연기관의 각 부품 및 주 발전기 구동용 내연기관에 대하여는 기관계속검사 2순회 중 적어도 1순회 이상은 선박검사원에 따른 개방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기관장 점검 대상기관	기관장 점검 대상 제외 기관
(1) 주 내연기관(다만, 우측란 1항 항목은 제외한다) (2) 보조 내연기관(다만, 비고란에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주 내연기관의 크랭크축 및 베어링, 크랭크핀 볼트 및 캠축 구동장치 (2) 증기터빈(주, 보조)
※ 비고: 보조 내연기관의 기관장 점검은 다음에 따른다. (1) 기관을 개방하고 모든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실린더커버, 부속밸브, 피스톤, 피스톤링, 연접봉과 상하베어링, 피스톤핀, 캠축 구동장치, 과급기, 공기냉각기, 크랭크케이스와 도어, 기관거치 볼트, 크랭크케이스 과압 방지장치에 대하여 검사되어 있을 것 (2) 모든 메인베어링의 상반부를 개방하고 하반부 메탈은 1, 2개를 들어내어 검사되어 있을 것 (3) 크랭크 핀 및 저널의 균열 유무가 검사되어 있을 것. 특히 필릿부와 유공, 오일 그루브의 부근을 주의하고 필요하면 액체침투탐상법에 따른 점검을 시행할 것 (4) 크랭크 암의 개폐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5) 실린더라이너는 마모량을 측정하고 기록되어 있을 것 (6) 부속의 윤활유 냉각기, 기관부착의 윤활유 펌프나 냉각수 펌프 등이 개방점검되어 있을 것 (7) 안전장치의 작동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어 있을 것 (8) 크랭크 핀볼트의 사용시간이 기록되어 있을 것	

라)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

어선소유자가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취급하며, 기관계속검사가 이 방법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관계속검사 방법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이전에 그 검사 간격이 5년을 초과하는 기관계속검사 대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난번 검사일부터 5년째의 시점 또는 그 이전에 그 기관들의 검사를 시행한다.

(2) 다음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정기검사에서 요구되는 모든 항목의 검사를 시행한다.

3) 기관계속검사 시 기관의 일련번호 부여방법

동일 기관이 2대 이상 비치된 경우의 일련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현존선의 경우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명패(Name Plate) 번호 또는 본선에서 사용하는 번호와 통일시킨다.

나) 본선의 기관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신조선에서 아직도 기관의 번호 배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열하도록 어선소유자 또는 조선소에 권유하여 이 부여 방법과 일치하도록 한다.

- (1) 우현에서 좌현으로
- (2) 선수에서 선미로
- (3) 위에서 아래로

나. 최초의 정기검사 시의 기관계속검사 방법 적용

1) 기관계속검사는 원칙적으로 최초 정기검사 완료 후 다음 검사 시부터 시작하여 다음 회의 정기검사에서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나 어선소유자의 요청이 있고 또한 선박검사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정기검사 시부터 기관계속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등에서 실시한 검사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검사 시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시행하고 검사보고서에는 기관계속검사 적용어선임을 반드시 명기한다. 만일 다음 검사 시에 반드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란에 기입한다.

2) 현존선으로서 새로 기관계속검사 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령에 따른다.

가) 정기검사 후 첫번째의 중간검사 또는 그 이전의 임시검사 시기부터 기관계속검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즉시 정규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

나) 정기검사 후 첫 번째의 중간검사와 두 번째 중간검사 사이에 전환하는 경우는 위 가)와 같이 취급한다.

다) 정기검사 후 두 번째의 중간검사 시기부터 제1종 중간검사 시기로 전환하는 경우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까지에 모두 마친 후에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후 제1종 중간검사 또는 그 이후에는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사 준비사항 중 그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최초의 정기검사를 할 때에 차용·도입·검사기관 변경·등록기관 변경한 어선과 재등록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타목·제2호사목·제4호나목·제5호나목·제7호다목·제8호·제9호나목 및 제10호의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 나.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에 제50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과목과 하목의 압력시험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있어서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소유자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자목부터 카목(선체외부로 한정한다)까지,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다목의 검사준비를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 라.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선체 내부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별표 9 중간검사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거목은 제외한다), 나목 1) 및 2), 다목(별표 8 제3호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 마. 전회의 개방검사 시 크랭크축 등을 자분탐상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은 정비 및 작동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가목 또는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의 개방검사의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개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기관을 들어내어 전부 개방하지 아니하고는 크랭크축 등의 검사를 시행하기 곤란한 특수한 구조(고속기관 등)의 주기관(동력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기관에 대하여는 정비 및 작동상태의 검사와 운전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는 별표 8 정기검사준비

사항에 따라 개방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 10년
 - 2) 총톤수 10톤 이상 어선: 8년
- 사. 검사에 불합격 처리된 어선을 6개월 이내에 재검사 신청한 경우 지난 번 검사(불합격 처리된 검사를 말한다) 시 합격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아.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이 형식승인 대상품목으로서 검사신청 이전 최근 2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형식승인시험기관의 환경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어선용품에 대한 환경시험의 준비를 면제한다.
- 자. 어선용품(법 제3조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예비검사를 할 때에 외국정부의 검사 등을 받은 것 또는 ISO9000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은 재료시험 및 그 부품에 대한 검사 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차.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할 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및 선박용품물에 대하여는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1) 다른 어선 또는 선박에 사용되었던 어선용품 및 선박용품
 - 2) 어선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어선용으로 구조변경하여 어선에 설치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용품
 - 가) 주기관을 제외한 것으로서 출력 220킬로와트(300PS) 미만인 내연기관
 - 나)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것
- 카.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중 제2호가목, 별표 9 제1종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1)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인 연안어선(「낚시어선업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기관에 대하여는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
 -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타. 선내외기(신품으로 한정한다) 및 선외기의 예비검사를 할 때에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는 해당 기관의 단일조립 완성품으로 간주하며, 외국정부의 검사를 받은 것 또는 ISO 9000시리즈의 인증 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에 대하여는 효력시험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일부를 조정 또는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어선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어선검사증서는 어선이 항행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 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나. 이미 승인받은 도면(건조 당시의 시설기준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동일업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어선용품(그 부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산업규격(이하 “KS규격”이라 한다)에 따라 어선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이 경우 예비검사신청서 비고란에 승인받은 도면의 내역 또는 KS규격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 다. 어선용품의 수리(기존 설비 중 그 부품을 신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제조사양서 및 별표 6 제4호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17] <신설 2009.12.14>

우수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59조의4 관련)

1. 우수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우수건조사업장의 경우

-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

- 1) 창구복포(覆布)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3) 팽창식 구멍뗏목
- 4) 구멍부환
- 5) 구멍조끼
- 6) 구멍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멍줄을 포함한다)
- 7) 로켓낙하산신호
- 8) 신호홍염
- 9) 발연부신호
- 10) 자기발연신호
- 11) 자기점화등
- 12)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13) 소화펌프
- 14) 소화기
- 15) 소화제
- 16)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17) 탄산가스용기
- 18) 매니폴드
- 19) 제어밸브
- 20)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 21) 음향신호장치(기적·호종 및 동라 등)
- 22) 국제협약 또는 기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다. 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2) 팽창식 구멍뿔목
 - 3) 팽창식 구멍부기
 - 4) 강하식 탑승장치
 - 5) 소화기
- 라. 국제협약 또는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우수건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추는 것

- 1) 어선의 건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건조에 필요한 재료, 부품의 보관시설 및 건조된 어선을 보관하기 위한 건조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건조설비를 갖추는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현도(賢圖) 작업 설비
- (2) 형틀(Mould) 건조설비
-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 (가) 조합대(調合臺)
 - (나) 교반기(攪拌機)
 - (다) 계량(計量)기구
 - (라) 냉장설비 등
- (4) 유리섬유를 채단하기 위한 설비
- (5) 적층(積層) 작업에 필요한 설비
- (6) 강화플라스틱제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절단기
 - (나) 절삭기
 - (다) 샌딩기 등
-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건조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현도작업 설비
- (2) 알루미늄합금의 판재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설비
 - (나) 기계톱 그 밖에 절단기계

수산관련법령집

- (다) 곡면 가공 기계
 - (라) 선반 그 밖에 공작기계
 - (마) 조립 및 진수설비
 - 용접기
 - 용접용 재료의 건조(乾燥)설비
 - 리벳이음 설비
 - 치구(治具)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등
 - 진수대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 (3)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건조설비
-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 1) 소형어선의 선체
 -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유리함유율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설비
 -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선체강도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낙하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변형측정장치
 - (4)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다) 정량분석장치
 -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용접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가) 표면 온도계
 - (나) 용접용 전류계
 - (다) 수분 측정장치
 - (4)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는 것
- 1)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건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건조에 종사하는 인력

- 마. 건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 1) 어선의 건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 2) 건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 3) 건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 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 아. 어선의 설계 및 건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 자. 우수건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어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우수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1)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 나.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출 것
 - 1) 창구복포
 - 가) 제작준비에 필요한 설비
 - (1) 합사기(合絲機)
 - (2) 연사기(撚絲機)

수산관련법령집

- (3) 정경기(整經機) 등
- 나) 직기(織機) 그 밖에 제직(製織) 설비
- 다)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재의 건조설비
 - (2) 목공기계
 - (3) 주물모래 처리장치
 - (4) 조형(造型) 기계
 - (5) 주형(鑄型) 건조로
 - (6)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등
- 나) 가열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용 가열로
 - (2) 열처리로
 - (3) 침탄로(浸炭爐) 또는 질화로(窒化爐)
 - (4) 열박음에 필요한 설비 등
- 다) 소성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단조기계
 - (2) 프레스머신
 - (3) 벤딩머신 등
- 라) 절삭작업 및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가스절단기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 마)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및 밀링머신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旋盤)
 - (4) 드릴링머신
 - (5)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 (6) 호빙머신(Hobbing machine)
 - (7) 연삭반(研削盤) 등
- 바) 세정작업 설비
- 사)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뿔목
 - 가) 고무 콤파운드(compoun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절단기
- (2) 고무혼합설비
- (3) 예열용오븐
- (4) 스트레이너(Strainer) 등
- 나) 고무풀 제조 설비
- 다) 포지에 고무를 입히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 (2) 캘린더롤러(Calendar roller)
- 라) 가황(加黃)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마) 특수부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부품 연마장치
 - (2) 금속부품 세정장치
 - (3) 금속부품 건조장치
 - (4)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 (5) 고온 프레스
- 바) 별표 4 제1호의 시설
- 사)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봉설비
 - 나) 부력재 가공설비
 - 다) 팽창식 구멍조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팽창식 구멍뿔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 등
 - 가) 화약의 배합작업에 필요한 설비
 - 나) 화약의 성형(成型) 작업 또는 충전(充填)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초음파세척기
 - (2) 선반
 - (3) 드릴링머신
 - (4) 연마기(研磨機)
 - (5) 컴프레서

수산관련법령집

나)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7) 소화펌프

가) 구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목공기계
- (2) 주물모래 처리장치
- (3) 주형(鑄型) 건조로
- (4)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平削盤)
- (2) 형삭반(形削盤)
- (3) 선반
- (4) 밀링머신
- (5) 드릴링머신
- (6) 연삭반
- (7) 호빙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8) 소화기

가) 소화기의 몸체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롤러머신
-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나) 소화기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평삭반
- (2) 형삭반
- (3) 밀링머신
- (4) 드릴링머신
- (5) 호빙머신
- (6) 쇠틱기계
- (7) 프레스머신
- (8) 호스프레스머신
- (9) 공기압축기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9) 소화제

가) 표준(標準)제

나) 과쇄기

- 다) 믹싱설비
 - 라) 제조설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0)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소화호스와 연결구의 압착설비 등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1) 탄산가스용기
- 가) 성형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쇠틱기계
 - (2) 고주파가열로
 - (3) 저부 및 두부성형기
 - (4) 네크절단기
 - (5) 저부압착용 프레스
 - 나) 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노멀라이징 설비
 - (2) 퀴칭 설비
 - (3) 템퍼링설비
 - 다) 나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리밍머신
 - (4) 탭핑머신
 - 마) 표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동각인기계 및 레이저각인기계
 - (2) 내부쇼트머신
 - (3) 외부쇼트머신
 - (4) 분체도장설비
 - 바)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2) 매니폴드
- 가) 절단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산소절단기
 - (2) 절단기

수산관련법령집

- (3) 선반
- (4) 드릴링머신
- 나)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동아크용접기
 - (2) 탄산가스용접기
 - (3) 티그(TIG)용접기
 - (4) 용접용롤러
- 다) 조립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체크밸브 조립기계
 - (2) 탭핑머신
- 라) 그 밖에 매니폴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3) 제어밸브
 - 가)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나) 그 밖에 제어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소성가공에 필요한 설비
 - 나) 절단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중, 동라 등)
 - 가) 구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주형건조로
 - (2) 용해로
 - (3) 주물모래처리장치
 -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드릴링머신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가) 세척설비
 - (1) 진공건조기

(2) 초음파세척기

나) 절삭 및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선반
- (2) 탭핑머신
- (3) 밀링머신
- (4) 그라인더
- (5) 드릴링머신
- (6) 공기압축기
- (7) UV코팅기
- (8) 봉재틀
- (9) 에어프레스
- (10) 스웨이징(Swaging) 머신
- (11) 인쇄기

다) 그 밖에 자장식 호흡구 및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2.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창구복포

- 가) 연사의 연수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포지의 외관검사에 필요한 설비
- 다) 포지의 물성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질량측정기
 - (3) 항온항습조

라) 그 밖에 창구복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정량분석장치
 - (4) 주물모래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 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X-선 검사설비
 - (2) 자기탐상장치
 - (3) 초음파탐상장치
 - (4) 침투탐상장치
- 가)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수산관련법령집

- (1) 수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2) 유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 다) 육상시운전을 위한 동력계, 진동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뿔목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점도계, 고무경도계, 인장시험기, 내한성시험기 및 열노화시험기 그 밖에 고무콤파운드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2) 포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3) 박리시험기 그 밖에 고무필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나) 고무포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기밀시험기
 - (2) 내유시험기
 - (3) 수압시험기
 - (4) 열노화시험기
 - (5) 내후성시험기
 - (6) 내한성시험기
 - 다) 부품 및 부속품류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소금물 분무시험기
 - (3) 실린더 봉판의 기밀시험장치
 - 라) 누출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충기장치
 - (2) 압력계
 - (3) 기압계 및 온도계
 - 마) 높이 18미터 이상의 투하팽창시험설비
 - 바)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 4) 구멍부환 및 구멍조끼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수조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내화시험기
 - (2) 낙하시험수조
 - (3) 부력시험수조

- 다) 저울
- 라) 그 밖에 구멍부환 또는 구멍조끼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5)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정량분석장치
 - (2) 정성분석장치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내식시험 설비
 - 마) 그 밖에 구멍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등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안전장치(동판 등)의 작동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검사설비
- 7) 소화기
 - 가) 수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검사설비
- 8) 소화제
 - 가) 질량측정설비
 - 나) 항온수조
 - 다) 온도계, 습도계
 - 라) 내압시험기, 비중계
 - 마) 그 밖에 소화제의 검사 설비
- 9)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 10) 탄산가스용기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두께측정 설비
 - 나) 내압시험 설비

수산관련법령집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1) 매니폴드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효력시험 설비
 - 다) 그 밖에 매니폴드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2) 제어밸브
 - 가) 내압시험 설비
 - 나) 기밀시험 설비
 - 다) 효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제어밸브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3) 소화펌프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금속조직의 검사 설비
 - (2) 정량분석장치
 - (3)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수압시험 설비
 - 다) 성능시험 설비
 -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 가) 재료시험 설비
 - 나) 내식시험 설비
 - 다) 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광도측정장치
 - (2) 배광측정장치
 - (3) 방수시험장치
 - (4) 진동시험장치
 - (5) 절연저항시험장치
 - 라)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동라 등)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만능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 (2) 주물모래 시험 설비
 -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무향실

- (2) 음압레벨측정계
 - (3) 3분의 1 옥타브 필터
 - (4) 튜너 밴드패스 필터
 - (5) 음압레벨기록기
 - (6) 보정계
- 다)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시험 및 검사 설비
-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인장시험기
 - (2) 안면부 충격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나) 수압시험기
- 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공기압시험기
 - (2) 가용합금 파열온도 측정기
 - (3) 안면부 기밀시험기
 - (4) 배기밸브 기밀시험기
 - (5) 배기밸브 저항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6) 소음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7) 나사링게이지
 - (8) 나사플러그게이지
 - (9) 유량측정기
 - (10) 내열시험기
 - (11) 내한시험기
 - (12) 투영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3) 경보(휘슬)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14) By-pass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 라) 그 밖에 시험 및 검사 설비
-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추어 것
-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차.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어선용품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정비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밸브 및 밸브시트의 가공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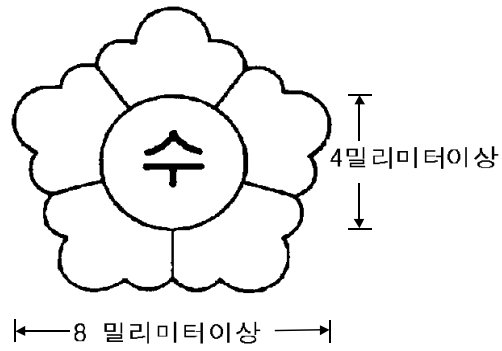
- 나) 열 박음 작업에 필요한 설비
 -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2) 팽창식 구멍뚫목
 - 가) 별표 4 제3호의 기구 및 비품류
 -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뚫목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3) 팽창식 구멍부기, 강하식 탑승장치
 - 가) 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솔 그 밖에 세정기구
 - (2) 실린더 분리용 공구
 - (3) 충격장치 분해용 공구
 - (4) 휴대용등 또는 회중전등
 - 나) 보수 또는 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접시저울, 롤러 그 밖에 접착가공에 필요한 공구
 - (2) 공업용 재봉틀 그 밖에 봉제용구
 - (3) 로프 가공용구 및 납땀가공용구
 - 다) 그 밖에 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4) 소화기
 - 가) 소화기실린더 세정 설비
 - 나) 소화기실린더 압력시험 설비
 - 다) 각종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
 - 라) 봉관 그 밖에 소화기정비에 필요한 부품저장 및 소화시험설비
 - 마)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추는 것
-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가)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자기탐상설비
 - (2) 초음파탐상설비
 - (3) 침투탐상설비
 - 나)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 (1) 수압시험 설비
 - (2) 유압시험 설비
 - 다) 육상시운전 설비
 -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 2) 팽창식 구멍뚫목, 팽창식 구멍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

수산물관련법령집

- 가) 별표 4 제3호다목의 검사를 위한 기구
-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멍뿔목·팽창식 구멍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 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 3) 소화기
 - 가) 충전 또는 잔량 측정 설비
 - 나) 포소화제(기계포에 한정한다) 농도 측정 설비
 -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 시험 및 검사 설비
-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라)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멍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멍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 마. 정비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 바.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 1) 어선용품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유지의 방법, 계량 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별표 18] <신설 2009.12.14>

자체검사 합격표시(제59조의7제4항 관련)



[별표 19] <신설 2009.12.14>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0조제2항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경 등

-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 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안전계수
금속구조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목구조부		8
와이어로프		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감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 \text{ (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폰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_1 \cdot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₁, C₂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 이상
C ₁	1.35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0	1.10
C ₂	125	120	117	115	114	113	112	111	110	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봄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름 (미터)

-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봄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sum C_2 \cdot W) \cdot O'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sum C_2 \cdot W$ 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봄에 대한 $C_2 \cdot W$ 값의 합
O'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 (미터)

C_2 및 W는 각각 (1)에 따른 C_2 및 W와 같다.

- (3) 데릭봄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봄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a)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_1 을 1.0으로 할 것

$$a = \frac{h}{h - h'}$$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는제2호에 따른 h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곱할 수 있다.

$$\beta = 10 \frac{h^3}{d_m} \cdot \sum R \text{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sum R$ 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sum R = (ds^2 \cdot a^2) / (L_0 \cdot Ls^2)$$

이 식에서

d_s 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L_s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L_0 는 L_s 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gamma = 0.045d_s + 0.26 \text{ (미터)}$$

a 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된 수평투영거리(미터)

-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봄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된 것 중 ΣR 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봄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배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 이 0.6 이상인 경우 0.7

r 이 0.6 미만인 경우 $1 - 0.5 r$

이 식에서

r 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2)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 가 0.3 이상인 경우 0.35

r' 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 \cdot r'^2$

이 식에서

r' 는 포틀단면의 깊이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봄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85 \frac{h'}{h - h'} W \cdot O \quad \text{(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 와 같다.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뿔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평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_m + 2.5(\text{밀리미터})$$

이 식에서

d_m 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뿔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r'/C'$$

이 식에서

r'는 3)다) (2)에 따른 r'와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 V 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부표 1 또는 부표 3에 따른 과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18 \frac{d_s^2}{l_o} \frac{a}{l_s} \delta \cdot g \text{ (KN)}$$

이 식에서

d_s , a , L_o 및 L_s 는 각각 3)나)에 따른 d_s , a , L_o 및 L_s 와 같다. 다만, a 는 δ 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 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delta = C_s \frac{h}{h-h'} \cdot \frac{W \cdot O}{\frac{I}{h^2} + 7.32h\Sigma R}$$

이 식에서

I 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공센티미터)

h 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 O 및 ΣR 는 각각 3)에 따른 W , O 및 ΣR 와 같다. 다만, ΣR 값의 계산에 있어서 a 는 데릭룸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_s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 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이하	3	4	5	6	7	8	9	10	15이상
Cs	2.64	2.52	2.46	2.41	2.38	2.35	2.33	2.31	2.29	2.22

-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 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뿔

- 가) 데릭뿔의 지지부는 데릭뿔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 나) 데릭뿔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관제 데릭뿔”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 (1) 데릭뿔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_B P L^2 \text{ (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_B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L은 데릭뿔의 유효길이(미터)

P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P = \left(a_1 \frac{l}{h - h'} + f \right) \cdot W \text{ (톤)}$$

이 식에서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W 및 h'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와 같다.

a₁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	2 이하	3	4	5	6	7	8	9	10	15이상 50이하
a ₁	1.28	1.23	1.20	1.18	1.16	1.15	1.14	1.13	1.13	1.10

f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뿔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f	1.102	0.570	0.392	0.304	0.251	0.216	0.192	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pi/8) \cdot (d_0 - t)^3 \cdot t \text{ (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_0 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 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봄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봄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 (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 (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봄의 상단부쇠붙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봄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_{or} / P \geq 4$$

이 식에서

P_{or} 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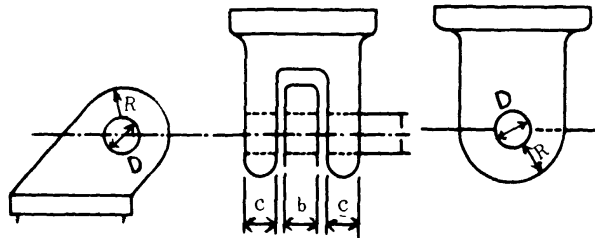
11) 쇠붙이

가) 데릭봄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봄”, KS V 2212 “하역토펅 브래킷” 및 KS V 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뿔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begin{aligned}
 b &\geq e_1 \sqrt{P} \\
 d &\geq e_1 \sqrt{P} \\
 c &\geq 0.55 e_1 \sqrt{P} \\
 2 &\geq D - d \geq 1 \\
 R &\approx D
 \end{aligned}$$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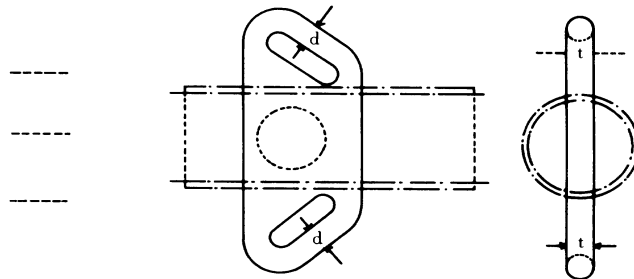
e_1 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2) 데릭뿔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begin{aligned}
 d &\geq e_2 \sqrt{T} \\
 t &\geq e_2 \sqrt{T}
 \end{aligned}$$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 a_1 \cdot a_2 \cdot W$ (토폽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 \lambda \cdot W$ (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_1 는 10)나)(1)에 따른 a_1 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_2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L/(h-h')		2.0	1.9	1.8	1.7	1.6	1.5	1.4	1.3	1.2
a_2	W가 10톤 이하인 경우	1.99	1.90	1.81	1.73	1.65	1.57	1.49	1.42	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	1.73	1.65	1.57	1.49	1.41	1.33	1.26	1.19
비고										
1. L은 데릭붐의 유효길이(미터)										
2.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3.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λ 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붐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	1	2	3	4	5	6	7	8
λ	2.10	1.58	1.40	1.31	1.26	1.23	1.20	1.18

(나) $R \geq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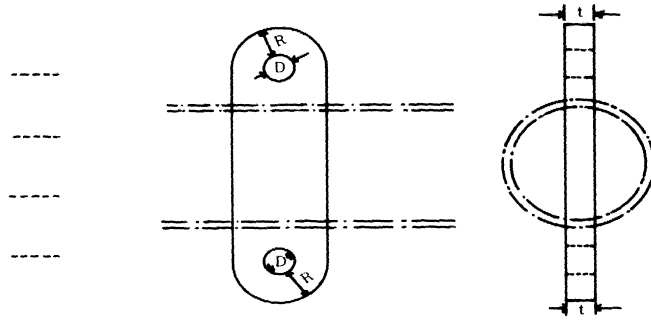
$$t \geq e_1 \sqrt{T}$$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 \cdot (R - D/2) \geq e_2 \cdot 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_2 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_1 은 (1)에 따른 e_1 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뿔,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하중	시험하중
20톤 미만	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바란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뿔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뭇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마. 하중시험 시에는 원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부터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원치의 설비요건 등

가. 원치(토펙리프트원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원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원치로 한정한다) 원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원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원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원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 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원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

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 분		안전계수
체 인		4.5
와이어로프		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		7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	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	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 분		시 험 하 중
단활차		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	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		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원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4>

(앞 쪽)

어 선 [<input type="checkbox"/> 건 조] 허 가 신 청 서 <input type="checkbox"/> 건조발주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건 조 어 선	④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⑤ 선 체 재 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⑥ 총 톤 수	톤	⑦ 추 진 기 관	기관 마력 대
	⑧ 선 적 항		⑨ 어업의 종류	
추 진 계 획	⑩ 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⑪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⑫ 재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자기부담 만원		<input type="checkbox"/> 정부지원 만원
	⑬ 건조장소		⑭ 조 선 소 명	
⑮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허가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 리 부 서	어선 건조허가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 의 사 항	<p>1. 벌칙규정 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어선의 건조·건조발주 허가기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p> <p>3. 기타 가.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나.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14>

(앞 쪽)

어선 [<input type="checkbox"/> 개 조] 허가 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개 조 어 선	④ 어선번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선 적 항	
	구 분	개 조 전	개 조 후	
	⑦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⑧ 총 톤 수	톤	톤	
	⑨ 추 진 기 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⑩ 구조·설비			
	⑪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 계획	⑫ 착공예정일	년 월 일	⑬ 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⑭ 개 조 장 소		⑮ 조 선 소 명	
⑯ 개 조 사 유				
<p>「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구비서류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허가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 리 부 서	어선 개조허가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 의 사 항	<p>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p> <p>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p> <p>3. 기타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p>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14>

(앞 쪽)

어 선 [<input type="checkbox"/> 건 조 <input type="checkbox"/>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개 조 <input type="checkbox"/> 개조발주]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당 초 허 가 사 항		④ 허가번호	제 호	⑤ 허가일자	년 월 일		
변 경 사 항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어선소유자						
	⑦ 선 적 항						
	⑧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⑨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⑩ 총 톤 수	톤		톤			
	⑪ 추 진 기 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⑫ 그 밖의 설비							
⑬ 변경 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변경허가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처 리 부 서	어선 건조·개조허가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 또는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농림수산식품부 : 4일, 시·군·구 : 3일
유 의 사 항	1. 벌칙규정 어선건조 등의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허가사항 변경허가기관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14>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주 소	
건 조 어 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선 체 재 질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건 조 장 소		
허가조건: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인] </div>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2.14>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주 소	
개 조 어 선	어 선 번 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 조 전 개 조 후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기 타 설 비	
어업의 종류	어업	
개 조 장 소		
개 조 사 유		
허가조건: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인] </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2.14>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 호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 소			
당 초 허 가 사 항	허 가 번 호	제 호	일 자	년 월 일
구 분	당 초 허 가		변 경 허 가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p>「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시장·군수·구청장</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7호서식] 삭제<1998.1.24>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 삭제<1999.5.17>

[별지 제19호서식] 삭제<2009.12.14>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어선총톤수 [<input type="checkbox"/> 측정 <input type="checkbox"/> 개측] 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측정(개측)어선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 선 종 류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⑥ 어선명칭	(원명:)
	⑦ 선 적 항		⑧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⑨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⑩ 선 체 재 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⑪ 조 선 지		⑫ 조 선 자	
⑬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일자		년 월 일		
⑭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장소				
⑮ 신 청 사 유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도면(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한정합니다) 가. 일반배치도, 나. 선체선도, 다. 중앙횡단면도, 라. 강제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마. 상부구조도, 바.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사.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총톤수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빙하는 서류(필요시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총톤수의 측정·개측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 리 부 서	지부·출장소
수 수 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 리 기 간	5 일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건조·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한 때 -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 - 외국적 어선을 수입하여 우리나라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 -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 중인 어선은 준공 전에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2.14>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 호					
소유자	성 명 (법인명)	(전화)			
	주 소				
어 선 번 호		총 톤 수	톤		
호출부호 또는 명칭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m ³		
어선의 종류		상갑판아래의 용적	m ³		
어선의 명칭		용 갑 판 위 의 용 적	합 계 용 적	m ³	
선 적 항			선수루의 용적	m ³	
선 체 재 질			선교루의 용적	m ³	
범선의 범장			선미루의 용적	m ³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갑판실의 용적	m ³	
추진기	추진기 대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조선지			제 외 장 소 의 용 적	합 계 용 적	m ³
조선자				선수루의 용적	m ³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교루의 용적	m ³
주요 치수	길이			m	선미루의 용적
	깊이	m		갑판실의 용적	m ³
	너비	m		그 밖의 장소의 용적	m ³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대한민국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인] (한국선급회장) </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국제톤수 [<input type="checkbox"/> 증서] 교부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 선 명 칭	
⑥ 선 적 항		⑦ 진 수 연 월 일	년 월 일
⑧ 총 톤 수	톤	⑨ 국 제 총 톤 수	톤
⑩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일자	년 월 일		
⑪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장소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제16조에 따라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국제톤수증서·확인서의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 수 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 리 기 간	7 일		
유 의 사 항	○ 벌칙규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톤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톤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선내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국제톤수증서(1969)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동협약이 1982년 7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which the Convention came into force on the 18th day of July, 1982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 Date
(주) 길이 거처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similar stage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 요 치 수 MAIN DIMENSIONS			
길이 [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부속서 I 제2규칙(3)] Breadth[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깊이 [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the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 톤 수 NET TONNAGE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de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뒷면)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기타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홀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고 REMARKS: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국제톤수확인서
TONNAGE CERTIFICATE

(official seal)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 적 항 Port of Registry	연월일(주) *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협약 제2조(6)]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협약 제3조(2)(b)]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Article 2(6)],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Article 3(2)(b)], as appropriate.

주 요 치 수
MAIN DIMENSIONS

길이[협약 제2조(8)] Length [Article 2(8)]	너비[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3)] Breadth [Regulation 2(3)]	선박의 중앙에서 상갑판까지의 형 깊이[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2)] Moulded Depth amidships to Upper Deck[Regulation 2(2)]

선 박 의 톤 수
THE TONNAGE OF THE SHIP ARE :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_____
순 톤 수
NET TONNAGE _____

이 증서는 1969년 선박톤수증서에관한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의 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onnages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일자) (증서의 발행장소)
Issude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 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뒤쪽)

톤수에 포함되는 장소 SPACES INCLUDED IN TONNAGE					
국제총톤수 GROSS TONNAGE			순톤수 NET TONNAGE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장소의 명칭 Name of space	위치 Location	길이 Length
			여객의 정원수(협약의 부속서 제4규칙(1)) Number of passengers(Regulation 4(1)) 정원 8인 이하의 여객실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passengers in cabins with not more than 8 berths 기타의 여객정원수 Number of other passengers		
제외장소[협약의 부속서 I 제2규칙(5)] Excluded spaces [Regulation 2(5)] 위 장소중 폐위장소 및 제외장소에 모두 해당되는 곳은 별표(*)로 표시한다. An asterisk(*) should be added to those spaces listed above which comprise both enclosed and excluded spaces.			형홀수[협약의 부속서 I 제4규칙(2)] Moulded draught [Regulation 4(2)]		
최초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original measurement					
전회의 측정일자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last previous remeasurement					
비고 REMARKS: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h3 style="margin: 0;">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h3> <p style="margin: 5px 0;">※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⑤ 어 선 번 호		⑥ 어 선 명 칭	
⑦ 선 적 항		⑧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⑨ 재화중량톤수 또는 계획톤수	톤		
⑩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일자	년 월 일		
⑪ 측정(개측)을받고자하는장소			
<p>「어선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귀하</p>			
구비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 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영사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 수 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 리 기 간	7 일		
유 의 사 항	○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최대적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12.14>

증서번호 제 호 Certificate No.				
재화중량톤수증서 DEADWEIGHT TONNAGE CERTIFICATE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_____ 발행합니다. Issu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y _____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어선번호 또는 호출부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연월일(주) * Date
(주)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단계에 있었던 일자 또는 선박에 중요한 변경 또는 개조를 한 일자 * Date on which the Keel was laid or the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date on which the ship underwent alterations or modifications of a major character, as appropriate.				
주 요 치 수 MAIN DIMENSIONS				
길이 Length	너비 Breadth	선박의 중양에서 상갑판까지의 형 깊이 Moulded Depth amidships to Upper Deck	선박의 중양에서 기준흘수선까지의 형 깊이 Moulded Depth amidships to Summer load Line	
재 화 중 량 톤 수 DEADWEGHT TONNAGE				
이 증서는 대한민국정부의 권한으로 재화중량톤수가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adweight tonnage of this ship have been determin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the _____ day of _____, _____ (Place of issue of certificate) (date of issue)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er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대한민국영사 The Consul of the Republic of Korea				
서명자는 이 증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위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The undersigned declares that he is duly authorized by the said Government to issue this certificate.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한국선급회장 President of Korean Register Of Shipping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어선등록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선명칭(원명)		(전화)	
⑤ 선 적 항		⑥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⑦ 총 톤 수		톤	⑧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⑨ 신 청 사 유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4.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선등록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 리 부 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 수 료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2 일		
유 의 사 항	<p>1. 벌칙규정</p> <p>어선등록 시 교부된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내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p> <p>2. 등록대상 어선</p> <p>가.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나.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3. 기타</p> <p>가. 다음의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1)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3)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p> <p>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p> <p>다. 어선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합니다.</p>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어 선 원 부

조 선 지		조 선 자			
진수연월일		원 명			
어 선 번 호					
호 출 부 호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선 체 재 질					
범선의 범장					
주요 치수 (m)	길 이				
	너 비				
	깊 이				
총 톤 수(톤)					
용적 (m ³)	폐위장소의합계용적				
	상갑판아래의 용적				
	상갑판위의 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제외장소의합계용적				
	선수루의 용적				
	선교루의 용적				
	선미루의 용적				
	갑판실의 용적				
	그 밖의 장소의 용적				
기관 종류·마력 및 대수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기관 대 마력	
추진기의 종류와 수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추진기 기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록 및 변경등록 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변경등록 사유 등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뒤쪽)

공 유 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저당권 설정등록 등				
순 위	구분	사 항	등 록 일 자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삭제<1999.5.17>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변경등록신청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어선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⑦ 추 진 기 관
⑧ 총 톤 수		톤	기관 마력 대
⑨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⑩ 선 적 항			
구 분		당 초	변 경
⑪ 변 경 사 항			
⑫ 변 경 사 유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변경등록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 수 료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즉시(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 2일)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사항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명칭 또는 선적항을 변경하는 경우 -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치수 또는 총톤수가 변경되는 경우 -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경우 - 어선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삭제<1999.5.17>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 선 명 칭
⑥ 어선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⑦ 선 적 항	
⑧ 총 톤 수	톤	⑨ 어업의 종류	어업
구 분	당 초	변 경	
⑩ 정 정 사 항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귀하			
구비서류	선적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선등록사항정정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 어선소유자가 어선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어선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선박국적증서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이 경우 종전증서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어선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동력 <input type="checkbox"/> 무동력	⑦ 선 적 항	
⑧ 총 톤 수	톤	⑨ 어업의 종류	어업
⑩ 등록말소사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등록말소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 리 기 간	즉 시		
유 의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선박국적증서				
제 호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전화)		
	주 소			
어선번호		총톤수	톤	
어선의명칭		폐위장소의합계용적	m ³	
호출부호또는명칭		상갑판아래의용적	m ³	
어선의종류		상갑판위의용적	m ³	
선체재질		선수루의용적	m ³	
선적항		선교루의용적	m ³	
범선의범장		선미루의용적	m ³	
추진기관	기관대	용 적	갑판실의용적	
추진기	추진기기		그밖의장소의용적	
조선지			제외장소의합계용적	
조선자			선수루의용적	
진수연월일	년월일		선교루의용적	
주요 치수	길이		m	선미루의용적
	너비		m	갑판실의용적
	깊이		m	그밖의장소의용적
위의사항은모두정확하며,이선박은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고있음을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쪽)

공 유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12.14>

(앞쪽)

선 적 증 서				
제 호				
소유자	성명 (법인명)			
	주 소	(전화)		
어 선 번 호		주 요 치 수	길 이	m
어선의 명칭			너 비	m
어선의 종류			깊 이	m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추 진 기 관	기 관 대			
조 선 자		진 수 연 월 일	년 월 일	
<p>「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쪽)

공 유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8.7.8>

(앞면)

등 록 필 증				
제 호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 소	(전화)		
어 선 번 호		주 요 치 수	길 이	m
어선의 명칭			너 비	m
어선의 종류			깊 이	m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조 선 자		진 수 연 월 일		년 월 일
<p>「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p> <p>년 월 일</p> <p>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쪽)

공 유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비 고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7.8>

(앞면)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어 선 번 호		⑤ 어선의 명칭	
⑥ 선 적 항		⑦ 총 톤 수	톤
⑧ 원 증 서 명		⑨ 원증서번호	제 호
⑩ 원증서발급관청		⑩ 원증서발급일자	년 월 일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선박국적증서(제시로 같음한다)		

210mm×297mm[일반용지(특급) 65g/m²(재활용품)]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어선등록 담당부서
수 수 료	조례에 따름		
처 리 기 간	1일		
유 의 사 항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 포함)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12.14>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Cert. No.		
Owners	Name(Company): Address:	
Official Number Name of Vessel Signal Letters Kind of Vessel Material of Hull Port of Registry Riggings(If a Sailing Vessel) Type and Number of Engines Type and Number of Propellers Where Built Name of Builders Date of Launch	Total Capacity of Enclosed spac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Under the Upper Deck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Closed-in Spaces above the upper deck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Forecastle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Bridge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Poop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Deck Hous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Other Spac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Total Capacity of Exempted spac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Forecastle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Bridge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Poop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Deck Hous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Other Spaces <div style="text-align: right;">cubic metres</div>	
Main Dimension	Length	metres
	Breadth	metres
	Depth	metres
Gross Tonnage		tons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described particulars are exact in all respect, and that the above-mentioned vessel is of Korean Nationality. The day of . REPUBLIC OF KOREA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 is a true translation of "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 of the above-mentioned Vessel. <div style="text-align: right;"> The day of , . (Signature) (Official Position) </div>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어선검사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의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에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 특별검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 임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p><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 면제대상어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검사는 해당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년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중 간 검 사 시 기 연 기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선소유자	① 성명 (법인명)		
	② 주소		
③ 어선의 명칭		④ 어선번호	
⑤ 선적항		⑥ 선질	
⑦ 총톤수		⑧ 어업의 종류	
⑨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중간검사의 종류			
⑩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⑪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시기를 연기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신 청 인: (인)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어선검사증서 사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중간검사시기 연기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중간검사 연기신청 ○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중간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건조(별도건조)검사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건조기간 + 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 대상 어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동력어선 -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p><input type="checkbox"/>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모든 어선 <p><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흡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자	① 성명 (법인명) _____ ② 법인등록번호 _____ ③ 주소 _____ (전화: _____)
④ 시설의 소재지	_____
⑤ 시설면적 (㎡)	_____
⑥ 인원	정비기술자: _____ 명, 작업원: _____ 명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 구멍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시설명세서 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수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팽창식 구멍설비의 종류 <input type="radio"/> 팽창식 구멍땀목 <input type="radio"/> 팽창식 구멍부기 <input type="radio"/> 팽창식 구멍조끼 <input type="radio"/> 팽창형(복합형) 구조정 <input type="radio"/> 강하식 탑승장치 <input type="checkbox"/> 정비시설 등의 기준 <input type="radio"/>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정비한 구멍땀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한다), 부품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input type="radio"/> 인원: 팽창식 구멍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 타 <input type="radio"/>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6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팽창식 구멍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수리 또는 정비 사업자	① 성명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시설의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5항에 따라 팽창식 구멍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47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별도건조검사증서 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조자 Builder	① 성명 (법인명) Name(Company)			
	② 주소 Address			
③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④ 건조번호 Building No.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⑥ 선질 Ship Material		
⑦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⑧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tons
⑨ 주요 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⑩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킬로와트(kW)] [마력(PS)] Output	대 Nos.
⑪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농림수산식품부장[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48호서식] <신설 2009.12.14>

도면승인(변경) 신청서			
※ <input type="checkbox"/> 는 해당 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① 도면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건조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정기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임시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예비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별도건조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중간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특별검사 관련도면 <input type="checkbox"/> 만재흡수선 관련도면	
신청인	② 성명 (법인명)		
	③ 주소	(전화:) (전송:) (전자우편:)	
어선	④ 어선의 명칭	⑤ 어선번호 또는 건조번호	
	⑥ 어업의 종류	⑦ 총톤수	
	⑧ 배의 길이	⑨ 선질	
어선용품	⑩ 품명	⑪ 규격	
	⑫ 형식		
⑬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 비 서 류	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도면승인(변경)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5일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도면승인 신청 <input type="checkbox"/> 건조(별도)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예비검사 및 만재흡수선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하여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49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형식승인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명 (법인명)	국문		② 전화) -
		영문		③ 팩스) -
	④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⑤ 홈페이지	
	⑥ 주소	국문			
		영문			
제조사(수 입하여 형식승인 받는 경우 에 기재)	⑦ 성명 (법인명)	국문			
		영문			
	⑧ 주소	국문			
		영문			
형식승인 대상물건	⑨ 품명				
	⑩ 규격				
	⑪ 형식				
⑫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형식승인에 필요한 서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형식승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별지 제50호서식] <신설 2009.12.14>

형 식 승 인 증 서 CERTIFICATE OF TYPE APPROVAL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④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⑤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시험인증 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⑨ 시험 기관 Testing Laboratory		
	⑩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⑪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⑫ 비고 Remarks			
<p>「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SOLAS (COLREG, IMO Res., LSA Code)</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검정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제조사	④ 성명 (법인명)					
	⑤ 주소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						
⑥ 형식승인 증 서번호, 형식승 인일자	⑦ 품명	⑧ 규격	⑨ 형식	⑩ 수량	⑪ 제조번호	⑫ 제조일자
⑬ 검정요청일				⑭ 검정장소		
⑮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형식승인대상물건의 검정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형 검사기관의 수수료의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형식승인대상물건에 대하여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형식승인대상물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승인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형식승인증서 번호와 형식승인 일자 ○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별지 제52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 성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전화		⑤ 홈페이지
	④ 팩스		
	⑥ 주소		
형식승인 대상물건	⑦ 품명		
	⑧ 규격		
	⑨ 형식		
변경사항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⑫ 변경하고자하는 사유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5p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귀하</p>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처리부서	담당부서
수 수 료	부령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제조사 Manufacturer	④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⑤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시험인증사항 Test Certificate including Test Report	⑨ 시험기관 Testing Laboratory		
	⑩ 합격증명서번호 Certificate No.	⑪ 증명서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변경사항 Contents Changed	⑫ 변경 전 Before	⑬ 변경 후 After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라 이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59-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년 월 일 Y M D			
농림수산물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우수사업장 지정신청안내

(뒤쪽)

<p>구 비 서 류</p>	<p>5) 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우수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p>		
<p>제출하는 곳</p>	<p>농림수산식품부</p>	<p>처리부서</p>	<p>담당부서</p>
<p>수 수 료</p>	<p>부령에 따름</p>	<p>처리기간</p>	<p>25일</p>
<p>유 의 사 항</p>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2009.12.14>

우수사업장지정서 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 (MAINTENANCE) FACTORY			
발급번호: 제 - 호 Issuing No.:		증서번호: 제 - 호 Certificate No.:	
사업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의 주소 Factory Address			
지정대상물건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Name of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⑨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5제2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actory above has been designated as a recognized manufacturing and maintenance facto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확 인 신 청 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 성명 (법인명)				② 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④ 사업장 주소		지정대상물건의 내용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우수사업장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⑥ 품명	⑦ 규격	⑧ 형식	⑨ 수량	⑩ 건조·제조 (정비)번호	⑪ 건조·제조 (정비)일자
⑫ 확인요청일자	년 월 일			⑬ 확인장소		
⑭ 비고		<p>「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대상물건의 (<input type="checkbox"/> 건조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정비)확인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지정대상물건의 확인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 수 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5일
유 의 사 항	<input type="checkbox"/> 확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제조·정비 확인대상 품목(제59조의7제1항) <input type="checkbox"/> 지정대상물건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크기나 모양을 고려하여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업장의 명칭, 지정번호 및 지정일자 ○ 지정 품명·형식 및 규격(규격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 건조일자·제조일자 또는 정비일자 ○ 건조번호·제조번호 또는 정비번호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						
자체검사 합격증서 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MAINTENANCE) APPROVED USE						
사 업 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Date of Birth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형식승인 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 식 Type	⑨ 수량 Quantity	⑩ 건조·제조 (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의7제4항에 따라 대한 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59-7.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우수사업장의 장[인] President of Designated Factor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제한하중등 확인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종류·위치 및 번호	④ 하중시험을 할 때 붐의 각도(지브크레인의 선회반경)	⑤ 시험하중 (톤)	⑥ 제한하중 (톤)	⑦ 제한각도 (제한반경)	⑧ 비고
「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 급 법 인 의 장)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하역설비검사기록부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선적항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2/3)

(1)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의 검사 기록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 등 지정서 번호	정기검사		중 간 검 사				비고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 의 성명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2) 하역장치(크레인, 윈치 및 호이스트)의 검사 기록

종류 및 그 위치 또는 번호	제한하중등 지정서 번호	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검사 연월일	선박검사원의 성명	비고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1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 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kW] Output	[PS] 대 Number of Units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⑪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Y M D</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뒤쪽)

검사기록 Survey Records					
차기검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사사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검사증서 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Type	[PS] 대 Output Number of Units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⑨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⑪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Y M D</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쪽)

⑫ 만재흡수 선의 위치 Load Line	갑판선의 상면의 위치: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 갑판의 선측 상면의 연장과 외판의 외면과의 교 점으로부터 방향으로 밀리미터 The upper edge of the deck line from which these freeboards are measured is mm from the top of the deck at side				
	만재흡수를 표시하는 수평선[하기만재흡수선(S)·해수만재흡수선 또는 만재흡수선]의 상면의 위치: 갑판선의 상면으로부터 하방으로 밀리미터 Summer Load Line(S) mm below from the upper edge of deck line				
	동기만재흡수선(W)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Load Line(W): 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동기북대서양만재흡수선(WNA)의 위치: S의 하방으로 밀리미터 Winter North Atlantic Load Line(WNA): mm below from Summer Load Line				
	열대만재흡수선(T)의 위치: S의 상방으로 밀리미터 Tropical Load Line(T): mm above from Summer Load Line				
	위의 각 만재흡수에 대응하는 담수만재흡수선의 위치: 각 만재흡수선 상방으로 밀리미터 Allowance for fresh water for all freeboards other than timber: mm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연장된 유효기간 Extended Date of Validity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 . .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록 Survey Records					
차기검사 Next Survey			검사완료일 Date of Survey	선박검사원의 성명 Name of Surveyor	검사기관(인) Survey Organization
검사기준일 Anniversary Date	검사종류 Kind of Survey	검 사 사 항 Survey Items			
비 고 Remarks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어선특별검사증서 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질 Ship's Material		④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⑤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⑥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kW] Type	[PS] Output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무선설비 Radio Equipment	
⑧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⑨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⑩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4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임시항행검사증서 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			
①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② 어선번호 Official Number	
③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④ 선질 Ship's Material	
⑤ 총톤수 Gross Tonnage	톤 Tons	⑥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⑦ 배의 길이 Ship's Length	미터 m		
⑧ 최대승선인원 Max. Number of Allowable Persons on board	명(어선원: 명, 기타의 자: 명) Total p(Crew p, Other Personnel p)		
⑨ 항로 Navigation Route			
⑩ 유효기간 Validity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This certificate is valid from . . . until . . .		
⑪ 항해와 관련한 조건 Conditions for Navigation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div>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5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건조검사증서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			
건조자 Builder	① 성명 (법인명) Name(Company)		
	② 주소 Address		
③ 어선의 명칭 Name of Ship		④ 건조번호 Building No.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⑥ 선질 Ship Material	
⑦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⑧ 계획총톤수 Design Gross Tonnage	톤 tons
⑨ 주요치수 Principal Dimensions	길이: 미터, 너비: 미터, 깊이: 미터 Length: m, Breadth: m, Depth: m		
⑩ 추진기관 Main Engine	기관 Type	[킬로와트(kW)] [마력(PS)] Output	대 Nos.
⑪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d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6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예비검사증서 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전화(Tel.):)		
어선용품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④ 품명 Name of Articles	⑤ 규격 Size	⑥ 형식 Type	⑦ 수 량 Quantity	⑧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⑨ 검사번호 Inspection No.
⑩ 비고 Remarks					
<p>「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This certificat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input type="checkbox"/> IMO Res. <input type="checkbox"/> SOLAS <input type="checkbox"/> LSA Code <input type="checkbox"/>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7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검정증서 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						
신청인 Applicant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형식승인대상물건의 내용(PARTICULAR OF ARTICLES)						
④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⑤ 품명 Name of Articles	⑥ 규격 Size	⑦ 형식 Type	⑧ 수량 Quantity	⑨ 제조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⑩ 제조일자 Date of Manufacturer
⑪ 비고 Remarks						
<p style="text-align: center;">「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rticles have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provisions of (<input type="checkbox"/> IMO Res. <input type="checkbox"/> SOLAS <input type="checkbox"/> LSA Code <input type="checkbox"/> COLREG)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 Y M D </p> <p style="text-align: center;">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p>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8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Certificate No. 건 조 (제 조 · 정 비) 확 인 증 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 MAINTENANCE) VERIFICATION						
사업자	① 성명(법인명) Name(Company)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③ 주소 Address					
④ 사업장 주소 Factory Address						
지정대상물건의 내용 Particular of Articles						
⑤ 형식승인증서 번호 Type Approval Certificate No.	⑥ 품명 Articles	⑦ 규격 Size	⑧ 형식 Type	⑨ 수량 Quantity	⑩ 제조(정비)번호 Manufacturer Serial No.	⑪ 비고 Remarks
「어선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 부의 권한으로 증서를 발급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issued under Article 27.1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Article 63.1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s Act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Y M D </div>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Minister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President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선급법인의 장) (President of Classification Society)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69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명 (법인명)				
	② 주소		(전화:)		
③ 어선의 명칭			④ 어선번호		
⑤ 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⑥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연장사유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신 청 인 년 월 일 </div> (서명 또는 인) <b style="text-align: center;">귀하					
구 비 서 류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연장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선박안전기술공단, 선급법인	처리부서	지부·출장소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2일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input type="checkbox"/>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70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증인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어선번호	
③ 선적항		④ 선질	
⑤ 총톤수	톤	⑥ 어업의 용도	
⑦ 현증서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연장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연장조건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일 후의 기간에 대한 연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p>「어선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증인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급법인의 장)</p>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09.12.14>

어선결함신고기록부

접수				신고					조치		
접수일자	접수시간	접수자	접수방법	어선의명칭	선적항	선장명	어선회사명	결함내용 개요	조치일자	조치내용 개요	조치자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74호서식] <신설 2009.12.14>

어선결합신고자명부

접수 일자	어선			신고자				신고자 확인 여부
	어선의 명칭	선장명	어선 회사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	주 소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75호서식] <신설 2009.12.14>

제 호 출항정지명령서			
① 어선의 명칭		② 선장명	
③ 어선번호		④ 국적	
⑤ 총톤수		⑥ 어업의 종류	
⑦ 입항일자	년 월 일	⑧ 출항예정일자	년 월 일
⑨ 출항정지사유			
⑩ 출항정지기간 및 해제조건			
⑪ 비고	출항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출항할 수 있으니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해당 선박검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인]			

210mm ×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별지 제76호서식] <신설 2009.12.14>

(앞쪽)

증서 등 재발급 신청서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서명				
② 증서번호	제	호	③ 교부일자	년 월 일
신청인	④ 성명(법인명)	⑤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⑥ 주소	(전화)		
어선내역	⑦ 어선번호			
	⑧ 어선의 명칭	⑨ 총톤수	톤	
	⑩ 진수연월일	년 월 일	⑪ 선체재질	<input type="checkbox"/> 강 <input type="checkbox"/> 목 <input type="checkbox"/> FRP <input type="checkbox"/> 기타()
	⑫ 선적항			
⑬ 신청사유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헛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재발급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시·군·구, 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처리부서	어선 등록관련 담당부서
수수료	조례 및 대행 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감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우수사업장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출항정지명령서 ○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해당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헛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낚시어선업법

낙시어선업법

제정	1995. 12. 29	법률제5078호
일부개정	1996. 8. 8	법률제5153호(정부조직법)
	1997. 12. 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 12. 17	법률제5470호(선박안전법)
	1999. 2. 5	법률제5810호
	2002. 5. 13	법률제6702호
	2005. 7. 29	법률제7642호
	2008. 2. 29	법률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시어선의 이용 및 안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낙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낙시어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어가(어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1. “낙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포획)·채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를 낙시어선에 승선시켜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의 낙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2. “낙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낙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3. “낙시어선업자”라 함은 어선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낙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및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개정 2002.5.13>) ①낙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낙시어선 기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낙시어선의 선적항(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2002.5.13, 2008.2.29>

②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낙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선령)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5.13]

제6조 (신고의 유효기간<개정 1999.2.5>)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②삭제<1999.2.5>

제7조 (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8조 (설비기준등)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낚시어선의 검사등) 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7, 2002.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10조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개정 1997.12.17>

제11조 (낙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 ①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5.13>

②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낙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형 낙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③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④낙시어선업자는 당해 낙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낙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제12조 (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하 “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 결과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종, 조종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5.13]

제12조의2 (출입항신고 등) ①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낙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낙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시어선업자는 당해 낙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12조의3 (출항의 제한) ①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낙시어선업자·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낙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7.29,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13조 (안전점검) ①시장·군수는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4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낙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2.5.13>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낙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는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③시장·군수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7.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
2. 제8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4. 하천·호수·늪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

제15조 (사고발생의 보고) ①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군수는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제17조 (보험가입등) 낙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1999.2.5>

제19조 (신고필증의 재교부) 낙시어선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5.13, 2008.2.29>

제20조 (행정처분) ①시장·군수는 낙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8.2.29>

제21조 (청문) 시장·군수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13>

[전문개정 1997.12.13]

제21조의2 (수수료)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 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5.13]

제21조의3 (폐업신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21조의4 (지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5.13]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5.13, 2005.7.29>

1.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조종하게 한 자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승선하게 한 자
6.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하천·호수·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제한 또는 승선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항한 자
9.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10.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낙시어선업을 한 자

제2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5.13>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낙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7.29>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낙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5.1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5.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4조 삭제 <2002.5.13>

부 칙 <제5078호, 1995.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낙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9조, 제20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23>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제5470호, 1997.12.17> (선박안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낙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어선검사”를 “선박검사”로 한다.

제10조중 “어선법에 의한 어선검사증서”를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⑤생략

부 칙 <제5810호, 1999. 2. 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낙시어선업 신고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이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이전에 만료되는 자에 대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6702호, 2002. 5.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낙시어선업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낙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한 신고와 낙시어선업자가 행한 변경신고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낙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명령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낙시어선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7642호, 2005. 7.29>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7> 까지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638> 낚시어선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2항, 제19조,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3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 단서 및 제21조의4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제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88호
일부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 시행령등의개정령)
	1998· 7· 1	대통령령	제15830호(선박안전법시행령)
	1999· 3· 3	대통령령	제16173호
	2002· 11· 14	대통령령	제17783호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6· 1· 27	대통령령	제19305호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낙시어선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2조(낙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등) ①「낙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의 규모 및 선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2006.1.27>

1.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 다만, 「수산업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중 선외기설치어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0.5톤이상 10톤미만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해양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의 어선으로서 선령이 20년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5년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를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3.3, 2002.11.14>

제3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특별

시·광역시 또는 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된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물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⑤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낚시어선이 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중 1개의 지점이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⑦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7, 2008.2.29>

[본조신설 2002.11.14]

제4조(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①낚시어선업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 2002.11.14>

1. 승선정원의 1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이상, 길이 30미터이상인 구명줄 1개이상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이상인 소화기 1개이상
6. 비상용 구급약품 1식
7.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어선승객의 안전 및 낚시어선업 영업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지정·고시하는 장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은 「선박안전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8.7.1, 2006.1.27>

제5조(음주상태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11.14]

제5조의2(소형 낙시어선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낙시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톤 미만의 낙시어선을 말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낙시어선의 형태, 추진기관의 최대속력 및 주된 영업장소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낙시어선을 제외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낙시어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사항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7]

제6조(안전점검세부계획의 수립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해의 낙시어선 안전점검세부계획(정기점검·수시점검의 항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낙시어선업자에게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요령 등에 대하여 지도 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의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낙시어선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등의 준수 여부
3. 삭제 <1999.3.3>
4. 기타 낙시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제7조 삭제 <1999.3.3>

제8조 삭제 <1999.3.3>

제9조(보험가입등) ①낙시어선업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안에서 낙시어선 승객 및 선원의 수를 가입대상으로 하

수산물관련법령집

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가족어선원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8.7.1, 2002.11.14, 2006.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7>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과태료의 부과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4>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4,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총액이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12조 삭제 <2002.11.14>

부 칙 <제15088호, 1996. 6.29>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낙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8>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30호, 1998. 7. 1> (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시어선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어선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어선검사증서”를 “선박검사증서”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 칙 <제16173호, 1999.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783호, 2002.11.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고한 선외기설치어선의 규모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305호, 2006. 1.27>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보험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③(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원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에 한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개정 2006.1.27>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1호	10만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2호	30만원
3.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법 제23조제1항 제3호	30만원
4.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2항 제1호	10만원
5.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3조제2항 제2호	10만

낙시어선업법 시행규칙

제정	1996·7·9	농림수산부령제1239호
일부개정	1997·1·20	해양수산부령제 6호
	1998·8·13	해양수산부령제 63호
	1998·8·21	해양수산부령제 64호(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규칙)
	1999·3·23	해양수산부령제 108호
	2002·11·14	해양수산부령제 239호
	2004·8·7	해양수산부령제 277호
	2006·1·27	해양수산부령제 325호
	2007·12·3	해양수산부령제 329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9·1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면(지면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 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중형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측·표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3조 삭제 <2010.6.11>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낙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6조의2(패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패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8조(낙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낙시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낙시터 입간판(立看板)

[전문개정 2010.6.11]

제9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전문개정 2010.6.11]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6.11]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9조·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내수면어업면허증 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종류·실태 및 규모
2.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8.30]

제16조 삭제 <2005.9.30>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8조(어도 설치가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

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1]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 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 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수산물관련법령집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1]

제22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부 칙 <제175호, 2000. 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면허를 받은 어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307호, 2005. 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5호, 2008. 2. 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부 칙 <제68호, 2009. 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한다.

부 칙 <제79호, 2009. 8.2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 <제129호, 2010. 6.11>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10. 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6.1.27>

낙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제5조 관련)

가. 게시방법

(1)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2) 색상

(가) 글씨 : 흑색

(나) 바탕 : 승선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 (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나. 게시장소

당해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게시방법의 예시)

승선정원 ○○ 명
승객준수사항 ※ 기재내용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1. 2. · ·

[별표 2] <개정 1999.3.23>

행정처분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5차
가. 허위 기타 부정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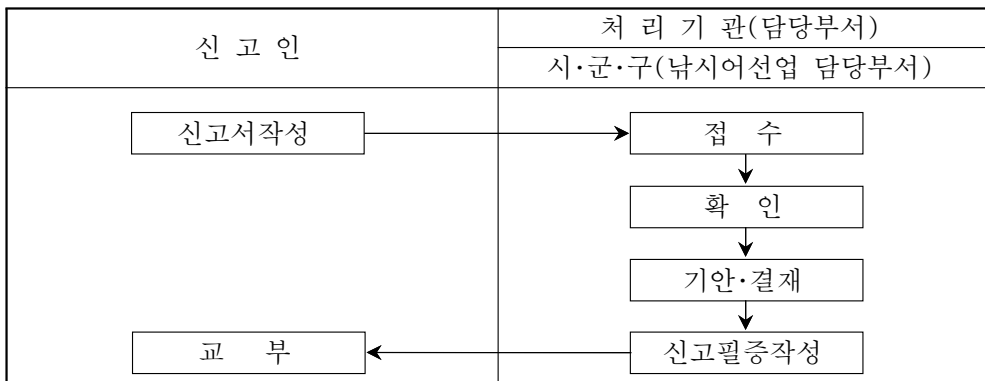
(앞 쪽)

낙시어선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전화)	④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명세	⑤ 어선번호	⑥ 어선의 명칭	⑦ 선적항	
	⑧ 총톤수	톤	⑨ 최대승선인원	명
⑩ 계선장소				
⑪ 영업구역				
「낙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구비서류> 1. 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조례에 의함
작성요령	⑦란의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기재된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⑨란의 최대승선인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낙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과 승객의 인원을 적습니다. ⑪란의 계선장소는 낙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낙시어선의 영업근거지(주영업장소)로서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1>

제 호				
남시어선업신고필증				
남시어선 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	자 격 증
어선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 톤 수	톤	최대승선인원	명
계 선 장 소				
영 업 구 역				
유 효 기 간				
<p>「남시어선업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 이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02.11.14>

기 관 명	
우○○○-○○○/주소/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문서번호 받음 제 목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서	시행일자 받 신 시·도지사 인
①공동영업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요약)	
②공동영업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	행정구역, 각점의 경위도 및 면적표시 (별지 도면과 같음)
③다른 도와의 관계	
남시어선업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1. 공동영업구역 지정요청사유서 2.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이하 “지정예정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3. 지정예정구역의 위치와 구역에 관한 도면 4. 지정예정구역의 남시어선업 실태조사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2.11.14>

(앞 쪽)

낙시어선업 신고필증번호		낙시어선출(입)항신고서						처리기간		
선명								즉시		
신고인인척사항	선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선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선박 제원	등록번호				톤수			승선정원		
	속력				통신기			선적지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신고사항										
출항					입항					
일시	출항지	낙시 장소	입항예정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통제 (신고) 소장	일시	장소	확인 (서명 또는 인)
			일시	장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뒤 쪽)

일시	출항지	낙시 장소	입항예정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통제 (신고) 소장	일시	장소	확인 (서명 또는 인)
			일시	장소						
낙시어선업법 제12조의2 및 낙시어선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항함을 신고합니다. ○○○출입항 ○○소장 귀하										
구비서류 : 승객(선원)명부 1부									수수료	
									없음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02.11.14>

승객(선원)명부

(승선일 : 년 월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 “비고”란에는 승객과 선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선원이 해기사면허나 선원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는 그 번호를 같이 기재함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11.14>

안전점검공무원의 증표

(앞 쪽)

<p>안전점검공무원</p> <p>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p> <p>위의 사람은 낙시어선업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공무원임을 증명함</p> <p>년 월 일</p> <p>시장·군수·구청장 [인]</p>	<p>사 진 (2.5cm×3cm)</p>
---	----------------------------

(뒤 쪽)

<p>주의사항</p>
<p>1. 낙시어선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이 증표를 항상 지녀야 합니다.</p> <p>2. 낙시어선업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p> <p>3. 이 증표는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내보여야 합니다.</p> <p>※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거나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64mm×91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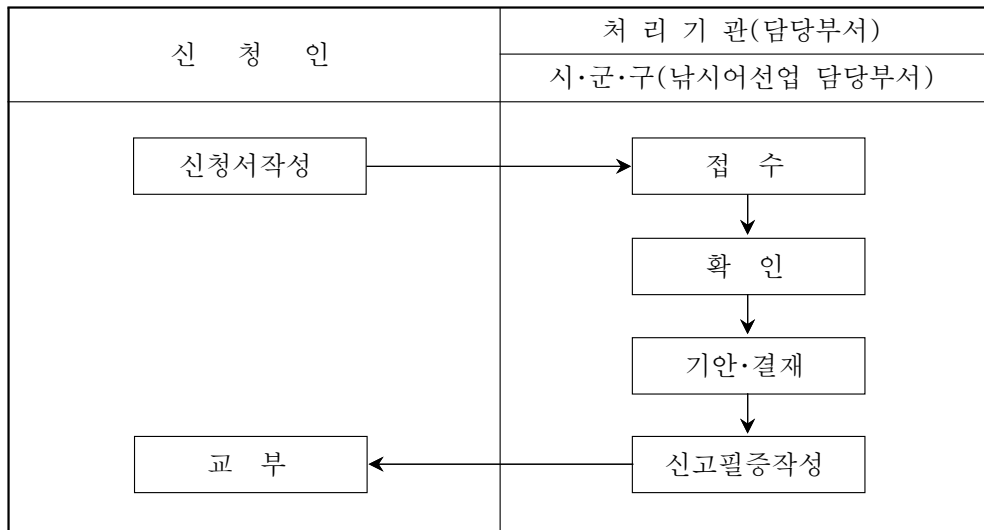
(앞 쪽)

낙시어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신고필증번호		
⑤ 신청사유		
낙시어선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div>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2.11.14>

기 관 명				
우○○○-○○○/주소/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 사무관 ○○○ 담당자 ○○○				
행정처분통지서				
제 호				
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행정처분내용				
귀하는 낙시어선업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시어선업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11.14>

행정 처분 기록대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방송일자	위반연월일	위반사항	신고번호	납시어선업자		처분일자	처분 내용	적 용 법조문	기 록 자 명 (서 명 또는 인)
					주소	성명				

364mm×257mm
(보존용지(1종) 120g/m²)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

제정	2000·1·28	법률 제6257호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398호(수산업법)
	2006·12·28	법률 제8130호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8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09·4·22	법률 제962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이하 “어업면허”라 한다)나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이하 “어업허가”라 한다)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養殖)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면허·허가동시갱신”이란 행정청이 관할하고 있는 어장관리 해역별로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그 어장에 관한 종전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동시에 그 취소된 자에게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어장휴식”이란 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병해(病害)가 자주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을 일정 기간 쉬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어장정화·정비”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 나.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
 - 다.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6. “어장정화·정비업”이란 어장을 정화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2 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조(어장관리 기본계획)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3. 어장의 정화와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4.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본계획의 세부 시행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어장관리 시행계획)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에 관한 사항
2. 어장면적의 조정 등 어장의 적정한 이용에 관한 사항
3. 어장휴식에 관한 사항
4.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간의 양식, 잦은 병해 발생 등 어업 여건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어장의 생산성 회복을 위한 면허·허가동시갱신 등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해역(이하 “어장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어장환경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어장관리해역별로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긴급하게 어장환경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요청한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그 어장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

을 조사한 결과 어장환경이 심하게 오염되어 어장휴식이나 새로운 어업면허의 금지 등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을 어장관리를 위한 특별해역(이하 “어장관리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어장관리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어장관리특별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면허·허가동시갱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어장관리해역별로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어장관리해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자가 어업을 경영하는 어장은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려면 미리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어장관리해역 안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다른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유효기간의 연장 허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이 「수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어업면허가 취소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어장이 어장관리특별해역 안의 어장인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실시한 어장관리해역 안에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허가할 때에는 그 해역 안의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과 일치하도록 어업면허·어업허가 또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어장휴식)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어장관리특별해역에 대하여 어장휴식에 관한 계획(이하 “어장휴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해역 안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미리 그 시기·기간·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어장휴식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와 관계있는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계획에 따라 어장휴식을 실시하는 어장의 휴식기간 중에 어장정화·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유효기간 중에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한 어장에 대하여는 그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동안 어장휴식을 실시한 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의 경우에는 어장의 어장휴식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어업면허를 할 수 있다.

⑥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및 열람과 그 밖에 어장휴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수면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존의 어장면적 및 어장위치를 조정하여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되는 어장관리해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

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①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질과 퇴적물 등에 관한 어장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곳에서 살고 있는 수산동식물

2.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분 규격에 맞지 아니한 수산동식물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기준에 맞지 아니한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이나 금지를 명하려면 미리 그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시기 및 해역 등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12조(어장의 관리의무) ①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거나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청소 주기(週期)나 수산종묘의 종류·살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 사업을 실시한 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으로 본다.

③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어장청소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①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어업인”이라 한다)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업인이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폐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어업인이 그물·밭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에 맞는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어장의 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 받은 집행지침과 지역의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 세부 지침에 따라 매년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이하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①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과 기술인력,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가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영업의 승계) ①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그营业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에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보 칙

제2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동식물의 소지·운반 금지, 처리·가공 금지 및 판매 금지와 방류명령(放流命令)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제6조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어장에 출입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③어장환경의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조사시료의 채취
2. 시설물의 사용
3. 시설물의 제거

④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손실보상)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벌 칙

제2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
2. 제13조제2항의 본문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한 자

②과실로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소지·운반한 자, 처리·가공한 자 또는 판매한 자나 방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장정화·정비업을 경영한 자

제30조(벌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묘를 살포하지 아니하거나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몰수) ①제28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은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수산동식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제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제8378호, 2007. 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호, 제3조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규제규정과 관련된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7조제2호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실효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률 제6257호 어장관리법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29일 당시의 「수산업법」 제72조의 2에 따라 연안수역정화를 실시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권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어장관리해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한 면허등동시갱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 면허·허가동시갱신으로 본다.

③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금지하거나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8130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도록 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2조제1항 전단 중 “제13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5항”을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장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0> 까지 생략

<671>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6호, 2009. 4.22>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제3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각각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15조제7항”을 “「수산업법」 제1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제37조(같은 법 제48조”를 “「수산업법」 제35조(같은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 및 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 및 제66조”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9627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 중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로 한다.

제21조 중 “「수산업법」 제73조와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제28조 중 “「수산업법」 제73조 및 제74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와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10조 생략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정	2001· 1· 29	대통령령제17120호
일부개정	2002· 3· 2	대통령령제17528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 3· 17	대통령령제18312호
전부개정	2007· 6· 26	대통령령제20107호
일부개정	2007· 10· 31	대통령령제20351호
	2008· 1· 11	대통령령제20544호
	2009· 6· 16	대통령령제21536호
	2010· 4· 20	대통령령제221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어장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립수산물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어장을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나친 어장개발로 인하여 해당 어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2. 지나친 어장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어장에서의 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3. 해당 어장에서의 장기간의 양식(養殖)으로 인하여 병해 발생이 잦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어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어장

제5조(어장환경조사의내용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현황
2. 어장의 환경오염과 오염물질의 발생·유입 현황
3. 그 밖에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어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요청기관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으로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1.11, 2008.2.29>

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어장환경을 보전·개선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면허·허가동시갱신의 절차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면허·허가동시갱신에 따라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면허기간이나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 및 어장에서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고시와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허가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허가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면허·어업허가의 내용
4. 면허·허가동시갱신의 개시시기
5.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한 해역의 어장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의 어장에서 가능하면 어장들이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고시 내용을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어업면허 번호, 어업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 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
-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 하였거나 해양 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어장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어장면적의 조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어장면적 및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어장환경조사의 결과 어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 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에 해당하는 경우
- ②법 제10조제2항에서 "어장환경의 조사 결과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었다고 인정 되는 어장관리해역"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어장환경기준 등 수산동식물의 포획·채 취 또는 양식을 금지하는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어장관리해역을 말한다.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어장의 면적 및 위치를 조 정하거나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어장 면적 및 위치를 조정하려는 경우 어업종류별 조정비율
 2.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의 환경 실태
 3.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어장 위치의 변동 전후를 나타내 는 어장구역도
 4.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금지하려는 수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어장정화·정비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어장환경기준의 설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설정· 고시하는 어장환경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 등의 세부항목별 어장환경기준
 2.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금지하는 시기와 기간에 관한 기준
 3. 그 밖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해당 어장에 대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수산종묘의 살포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 중 종묘의 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水産種苗)를 살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②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 주기를 포함한 살포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의 살포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살포하는 수산종묘의 세부 종류, 수산종묘의 살포 절차 및 살포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어장청소 등) 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육상종묘생산어업은 제외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어장정화·정비를 하였거나, 관할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관련법령집

에는 어장청소의 주기 3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0.31, 2009.6.16, 2010.4.20>

②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장청소의 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계획을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의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6.16]

부 칙 <제20107호, 2007. 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청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 37조제2호"로 한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0544호, 2008. 1.1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립수산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전단·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8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46>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1536호, 2009. 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어장정화·정비를 끝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6>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1]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등 록 기 준
1. 선박	어장에 침적(沈積)된 폐어구·어망·오물 등을 수거·인양 및 운반 할 수 있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 및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
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직무분야의 해양·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또는 해양조사 종목 중 1개 이상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자본금	2억원 이상
4. 시설·장비	○ 인양장비 : 선박일체형 1톤 이상의 크레인 및 5톤 이상의 윈치 ○ 기타 : 잠수장비, 수중촬영장비 각 1개 이상

비고

1.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는 경우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선박 외의 선박을 사용하려면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 선박등기부상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1호의 등록기준에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4호의 등록기준에 정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고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제2호의 등록기준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를 제외한다.
5. 제3호의 등록기준에서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으로 본다. 다만,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9.6.16>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 규정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물품을 사용한 자	법 제33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장예의 출입, 조사시료의 채취 또는 시설물의 사용·제거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법 제33조 제1항제4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1·2·7 해양수산부령제183호
일부개정 2002·3·9 해양수산부령제220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2004·8·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2004·12·27 해양수산부령제284호
전부개정 2007·6·29 해양수산부령제374호
일부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타법개정 2010·4·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어장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방법과 절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소속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해역의 오염 현황, 어장의 생산성 및 어장관리를 위한 적당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2.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3.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종류별 어장의 건수·면적 및 어장구역도
4. 어장관리해역의 어업 생산실적
5. 그 밖에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실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좌표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어장관리해역에 있는 어장의 현황(면허어업·허가어업의 종류와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별 면적 등을 말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

고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보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조 (수산종묘살포 등) ①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장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묘를 살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묘 살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종묘의 구입증명서 등으로 수산종묘 살포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어장청소 등) ①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어장청소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실시계획서를 제출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또는 해당 어업인이 어장청소사진과 폐기물처리증명서 등으로 어장청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장관리대장에 적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어장부표의 규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구 등을 어장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부표(이하 “어장부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 발포 부표(폴리스타일렌 부표)의 경우 파손을 줄일 수 있는 고밀도(0.020g/cm³ 이상) 제품
 2. 비발포 부표의 경우 경제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를 재료로 성형(成形)하거나 피복(被服)된 제품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어업인에게 보급되는 친환경 개량 부표
- ② 제1항에 따른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격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목표 및 방향
2. 정화·정비가 필요한 대상 어장의 기준
3.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4.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행위 방지 및 적정관리 방안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에 관한 집행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매년 12월말까지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을 같은 해 3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정화·정비의 대상 어장 및 기간
2. 어장정화·정비의 추진방법 및 절차
3. 어장의 시설물 재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장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장정화·정비업을 주로 수행하려는 분사무소 한 곳을 정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술인력 현황 서류 사본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장비명세서 1부

6. 자본금(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회사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의 보유 현황 증빙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등록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자격 증명서 및 선박원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별표 1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제9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등)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에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어장정화·정비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등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그 밖에 경매, 환가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시설 또는 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승계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

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① 법제20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분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내어줌으로써 행하고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과 별지 제6호서식의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에 각각 적어야 한다.

제13조 (어장에의 출입통지)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장에의 출입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제12호서식과 같다.

제1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374호, 2007. 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장부표의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9일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어장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63> 까지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사항란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46조·제58조”를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로 한다.

⑨ 생략

[별 표] <개정 2010.4.28>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취소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가.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
나. 기술인력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다. 자본금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등록취소
라. 시설·장비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90일	영업정지 180일
3. 법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4.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제47조·제6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사용한 경우	법 제20조	등록취소	-	-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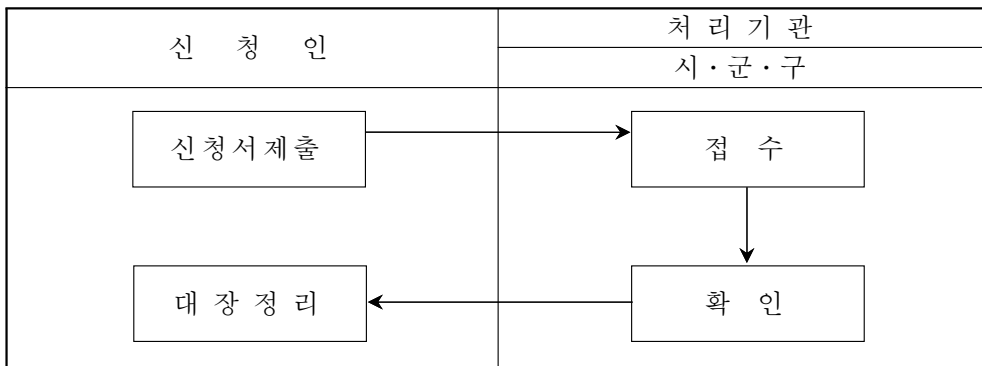
(앞 쪽)

수산종묘살포계획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어업			양식물
면허기간			면허면적
수산종묘살포	일시		
	장소		
	종류		
	수량		
기타사항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묘살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어 장 관 리 대 장

면허번호		제 호	면허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어업의 종류 및 어장 현황	어업종류		어구명칭	
	어장면적	(장 ^{ha} ×폭 ^m)	어장의 시설규모	
	어장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 권자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어업권자통보내용			확인내용	
어장 청소 상황	회	○기간 : 부터 ~ 까지(일간) ○방법 : ○수거예정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방법 : ○수거·처리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회	○기간 : 부터 ~ 까지(일간) ○방법 : ○수거예정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방법 : ○수거·처리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회	○기간 : 부터 ~ 까지(일간) ○방법 : ○수거예정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방법 : ○수거·처리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수산 종묘 살포 상황	회	○기간 : 부터 ~ 까지 ○장소 : ○종류 : ○수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장소 : ○종류 : ○수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회	○기간 : 부터 ~ 까지 ○장소 : ○종류 : ○수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장소 : ○종류 : ○수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회	○기간 : 부터 ~ 까지 ○장소 : ○종류 : ○수량 :	○기간 : 부터~ 까지(일간) ○장소 : ○종류 : ○수량 : ○확인일시 :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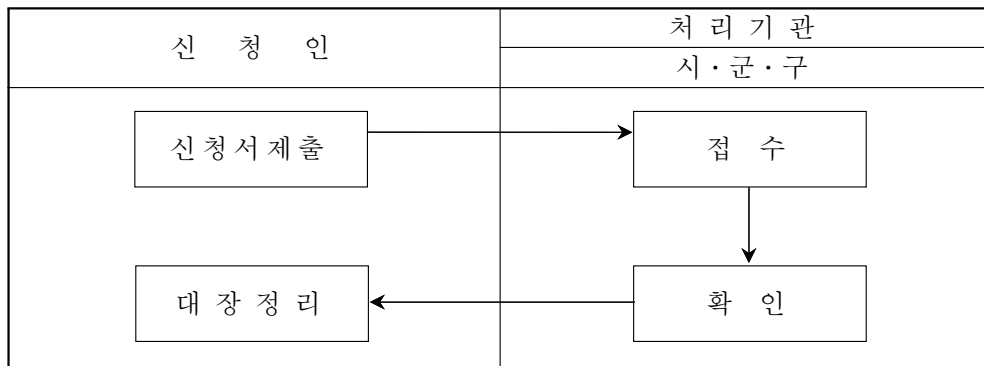
(앞 쪽)

어장청소실시계획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허어업			양식물
면허기간			면허면적
어장청소	일시		
	장소		
	방법		
	수거예정량(톤)		
기타사항			
「어장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장청소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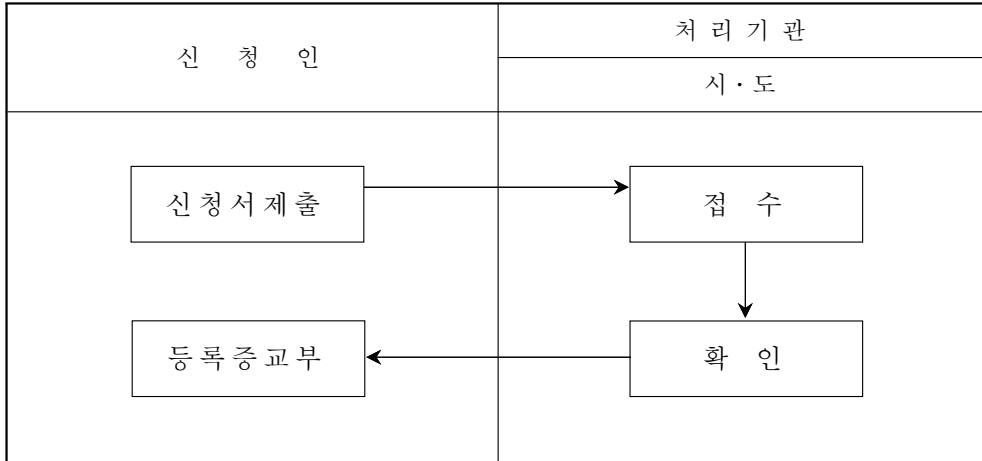
(뒤 쪽)



수산관련법령집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등록 제 호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박의 선명, 마 력 등	선명(선박번호)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진수연월일
주 요 장 비	장 비 명	수 량		규 격 및 성 능		
기 술 인 력	분 야	성 명		자 격 증 번 호 등		
변 경 등 록 사 항 기 제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장 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시·도지사 [인]</div>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6호서식]

어장정화·정비업등록대장

등록을 받은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선박의 선명, 마력 등	선명(선박번호)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진수연월일
주요장비	장비명	수 량	규 격 및 성 능			
기술인력	분 야	성 명	자 격 증 번 호			
사무실 소재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사항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연월일						
비 고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7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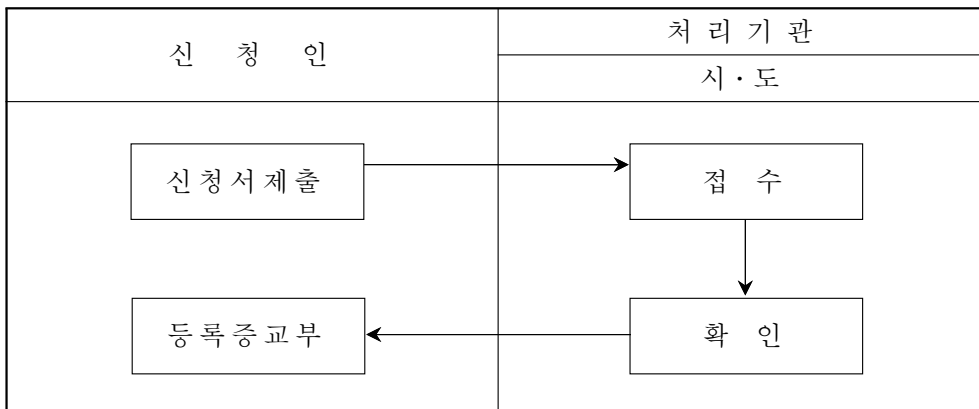
(앞 쪽)

어장정화·정비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 칭)		
⑤ 주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⑥ 등 록 번 호		⑦ 등록연월일 . . .
⑧ 업 종		
⑨ 변 경 등 록 내 용		
<p>「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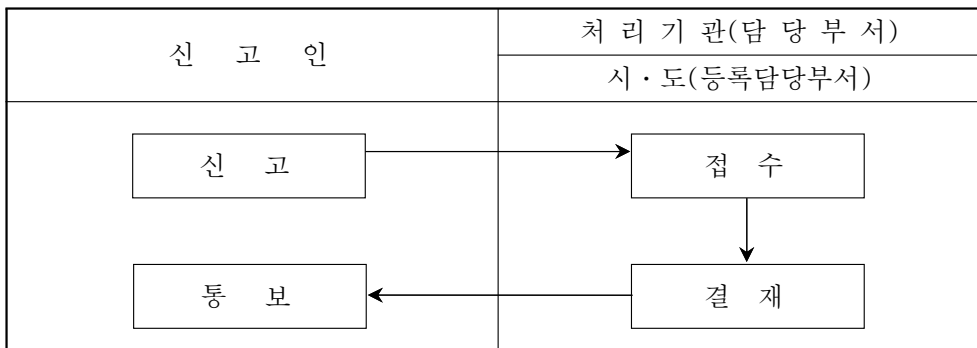
(앞 쪽)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input type="checkbox"/>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③ 영업소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법인(주민)등록번호		⑥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⑦ 업종 및 등록번호		업종명	등록번호	
⑧ (휴업, 재개업, 폐업) 사유		1. 당사사정 2. 업종전환 3. 기타사유		
⑨ 비고				
「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휴업, 재개업, 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처 분 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처분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경고 <input type="checkbox"/> 영업정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input type="checkbox"/> 등록취소		
등 록 번 호			
법 조 문 (위 반 내 용)			
「어장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기 관 명			
우 -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사무관(또는 서기관)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기 관 명 [인]	
제 목 어장출입통지			
1. 「어장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아래 어장에 출입하고자 통지합니다. 2. 어장출입통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 입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출입일시 및 어장	일 시(기간)	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어 장 위 치 (면·허가번호)	시·도 군·구 읍·면·동 번지	
출입의 목적과 사유			
조사시료의 채취		종 류	수 량
시설물의 사용 또는 제거		종 류	
출입할 어장의 소유자 (관 리 자)		성 명	
		주 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어장환경조사공무원 증표

(앞 쪽)

어장환경조사공무원증	
사진 (3cm×4cm)	성 명
	기 관 명

55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No
소 속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의 사람은 「어장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어장환경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전문개정	2000· 1· 28	법률 제6255호
일부개정	2005· 3· 31	법률 제7477호
	2007· 4· 6	법률 제8338호
	2007· 4· 11	법률 제8351호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8· 3	법률 제8619호
	2009· 5· 8	법률 제9662호
	2009· 5· 27	법률 제9724호
	2010· 5· 17	법률 제10293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공공용 수면(공공용 수면)"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한다.
3. "사유수면(私有水面)"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5.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① 이 법은 공공용 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수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하나가 된 사유수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① 공공용 수면과 잇닿아 나타나 된 사유수면의 점유자 또는 부지의 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그 사유수면에서의 타인의 내수면어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만 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5조(시책 마련) ① 정부는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 유어기반(遊漁基盤)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6조(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養殖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지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7조(어업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수산업법」 제17조제1

항에 따른 어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내수면어업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이나 홍수 등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말미암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본래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⑤ 제4항의 경우 어업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집행을 하거나 수면관리자에게 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8조(처분 시 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의하여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의무는 어업권과 함께 이전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의무도 같다.

[전문개정 2010.5.17]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항망) 또는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낚시업: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

는 업(業)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허가할 때에는 내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어업의 규모와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0조(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內水面漁業契), 법인과 그 밖의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서울특별시가 관할하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어업의 어장 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 중인 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1조(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유수면에서 제6조제1항 각 호,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1항에 따른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구역의 사유수면에서의 어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면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수면의 시설유지 및 보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17]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受理)할 기관을 정한다.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해산·조직·운영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식물을 내수면에서 양식하거나 방류하였을 때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라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6조의2(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17조(보조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①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위치에서 하천 전체 물

흐름의 평균수심 이상인 장소를 선택하여 하천 전체 물흐름 폭의 5분의 1 이상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역(水域)과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39조에 해당하는 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을 설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류산란장·번식시설의 설치, 치어 방류 등 어족자원의 번식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댐의 특성이나 주변의 지형 및 여건이 어도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수산에 관한 국공립 시험·연구기관에 어류의 서식상태 조사를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회유성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어업 제한의 기준·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 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승인 또는 협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8.3, 2009.6.9>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

제21조(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한 제한·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1호(「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어업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어류(遡河性魚類)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1조의2(포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17]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7]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19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금지를 위반한 자
5.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아니한 자
6.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
7.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지 아니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21조의2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를 위반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9.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10.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공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대상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0.5.17]

제26조(몰수 등) ① 제25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어획물·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하거나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제27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2.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부 칙 <제6255호, 2000. 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그 면허어업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수면에서 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어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지개량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7호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한다.

③호소수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7477호, 2005. 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산업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8338호, 2007. 4. 6>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⑥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 <제8351호, 2007. 4.11> (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제8377호, 2007. 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산업법」 제18조제2항과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35조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1"을 "「수산업법」

수산관련법령집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⑥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8619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8> 까지 생략

<639>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9조제4항, 제17조 및 제2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6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8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37조"를 "「수산업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36조"를 "「수산업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 내지 제4항을"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9627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

수산관련법령집

을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수산업법」 등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 <제9662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24호, 2009. 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758호, 2009. 6. 9> (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 <제10293호, 2010. 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로 본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0. 7. 29	대통령령	제16930호
일부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9. 30	대통령령	제19087호
	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4호
	2010. 6. 8	대통령령	제22187호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6.8]

제3조(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3.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4.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5.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6.8]

제4조(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내수면어업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조(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낚시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

[전문개정 2010.6.8]

제8조(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9조(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種苗)를 생산하는 어업
6. 관상어양식어업: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제1항제5호·제6호 및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6.8]

제11조(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산자원의 산란·성육(成育) 등 번식의 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3조(보조대상 사업)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가공·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6.8]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6조(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허가·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검토한 후 그에 관

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7조(포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제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6.8]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6.8]

부 칙 <제16930호, 2000. 7.29>

-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미 접수된 면허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승인 등을 신청한 것과 어업의 신고를 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신청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③(어업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어전어업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어살어업으로 본다.
-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78호, 2005. 9.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 칙 <제19463호, 2006. 4.2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1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제5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2조제5항 및 제15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1565호, 2009. 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⑪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21804호, 2009.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22187호, 2010. 6. 8>

이 영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333호, 2010. 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수면어업 허가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설 2010.6.8>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i>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i>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i>Oncorhynchus keta</i>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i>Hypomesus nippon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i>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i>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계 동남참계	<i>Eriocheirsinensis</i> <i>Eriocheirjaponicus</i>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i>Semisulcospira spp.</i>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2.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i>Oncorhynchus masou masou</i>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i>Siniperca scherzeri</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i>Takifugu obscurus</i>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i>Eriocheir sinensis</i> <i>Eriocheir japonicus</i>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i>Corbicula japonica</i>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곶채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좁주름다슬기	<i>Semisulcospira coreana</i> <i>Semisulcospira gottschei</i> <i>Semisulcospira libertina</i> <i>Semisulcospira forticosta</i> <i>Semisulcospira tegulata</i>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i>Unio douglasiae</i>	각장 9센티미터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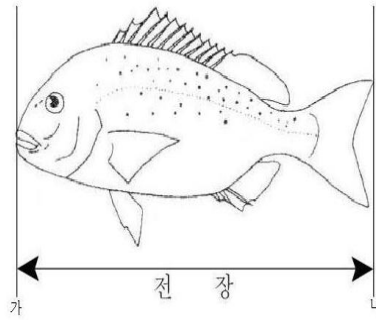
※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각장, 각고를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썬 값으로 한다.
2. 낚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그물코의 규격(그물코를 잡아 당겨서 썬 안쪽 지름의 길이를 말한다)이 24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빙어를 포획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이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빙어, 뱀장어를 포획할 목적으로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천으로 된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물코의 규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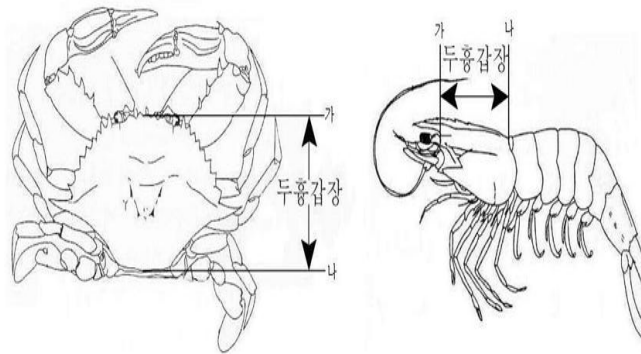
[부도]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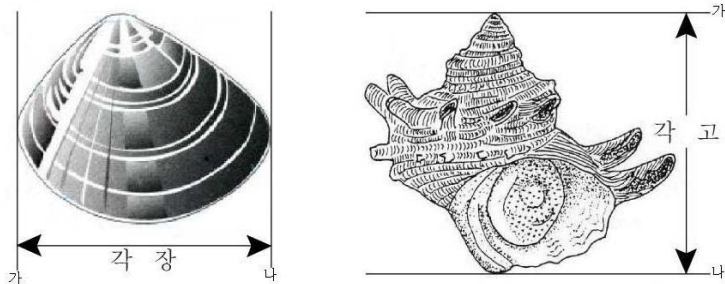
[어 류]



[갑 각 류]



[패 류]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	500만원
2. 법 제18조에 따른 유어질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1호	100만원
3.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제2호	100만원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2000. 8. 26	해양수산부령제175호
일부개정	2005. 9. 30	해양수산부령제307호
	2007. 10. 18	해양수산부령제386호
	2008. 2. 4	해양수산부령제405호
	2009. 8. 27	농림수산식품부령 제79호
	2010. 6.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9호
	2010. 8. 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내수면어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조(어업면허신청서)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점의 선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삼각점을 기점으로 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각점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내수면 주위의 특정기점을 정하여 사용하되, 그 기점이 위치한 장소의 지번(지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적고, 인접지역의 고유명칭을 같이 적는다.
2. 보조기점 및 각점의 표시: 삼각점 및 보조기점으로부터의 방위각·거리(미터) 및 엑스·와이좌표(평면직각중형선수치)로 표시한다.
3. 특정기점 및 각점의 표시: 특정기점으로부터 방위각 및 거리(미터)로 표시한다.
4. 방위각은 진북(眞北) 0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계바늘의 회전방향으로 계속·표시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3조 삭제 <2010.6.11>

제4조(면허어업의 명칭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5조(어업시설물의 제거신청서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6조(어업허가신청서) ① 영 제7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낙시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 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6조의2(폐류 채취용 어구)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폐류 채취용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1. 손틀방류
2. 잠수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및 폐류 채취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7조(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6.11]

제8조(낙시터의 시설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낙시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선(수상 낙시대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간이화장실
3.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
4. 낙시터 입간판(立看板)

[전문개정 2010.6.11]

제9조(어업의 신고)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각 1부

[전문개정 2010.6.11]

제9조의2(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 파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의 어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고어업권 현황: 별지 제6호의2서식
2.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3서식
3. 무신고어업 현황: 별지 제6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어업면허 등의 번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0조의2(수면 이용 협의의 처리기한) 수면관리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면 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1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전문개정 2010.6.11]

제12조(어업면허증 등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9조·제11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 또는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연장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1. 내수면어업면허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2. 내수면어업허가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3.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4.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별지 제13호서식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내수면어업면허증 등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3조(어업면허증 등의 재발급)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4조(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내수면어업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계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그 밖의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 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등 내수면어업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내수면어업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업권의 취득과 어업 경영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3.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알선
 4. 어업과 관련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6. 그 밖에 내수면어업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내수면어업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 수가 5명 미만이 된 경우
- ④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거나 해산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0.6.11]

제15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의 결정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어업의 종류·실태 및 규모
2.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조건
3. 해당 처분으로 인한 어업 피해의 정도

[전문개정 2010.8.30]

제16조 삭제 <2005.9.30>

제17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① 영 제15조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어법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8조(어도 설치 면제되는 댐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댐"이란 기초지반부터 댐의 마루까지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3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해당 조사 시점부터 과거 10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19조(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의 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업 제한을 하려면 미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20조(어도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魚道)를 설

치하여야 하는 하천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국가하천·지방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댐 외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가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2. 하천의 수질이 어류의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의 개선이 어려운 경우
3. 평수기(平水期)에도 하천의 유량(流量)이 극히 적어 건천(乾川) 구간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6.11]

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어도에 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협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에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도 설계 기준에 맞게 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어도시설 설치계획서(대상 지점의 수질과 수생생태계의 현황, 수산생물의 이동 상황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어도의 설계도
3. 환경영향평가서 사본(「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산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어도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의견을 협의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어도의 형식이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이용하기에 적합한지에 관한 사항
2. 갈수기(渴水期)에도 어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설계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이견에 관한 사항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11]

제22조(어도설치의 사후관리) ① 어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어도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완료한 날부터

수산관련법령집

15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도시설 설치결과서에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도설치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을 붙여 갖춰 두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산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어도설치 결과를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1]

부 칙 <제175호, 2000. 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어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어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307호, 2005. 9.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5호, 2008. 2. 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의2제2호,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

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⑧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16> 까지 생략

부 칙 <제68호, 2009. 4.30>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해수산연구소, 내수면생태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소"를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냉수성어류연구센터"로 한다.

부 칙 <제79호, 2009. 8.27>

이 규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29조"를 "「수산업법」 제27조"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129호, 2010.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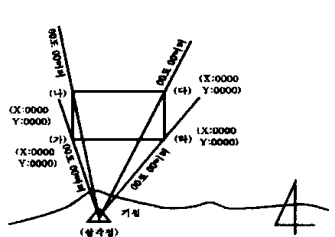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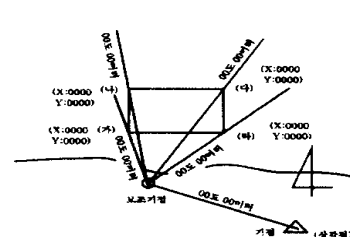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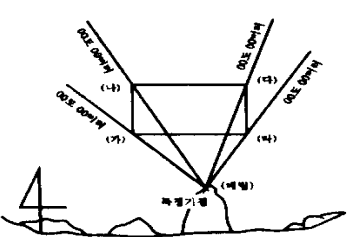
이 규칙은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3호, 2010. 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6.1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작성례(제2조제3항관련)

<p>1. 어업의 종류 :</p> <p>2. 양식방법 :</p> <p>3. 수면의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인접</p> <p>4. 기점 및 각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기점 및 특정기점 :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지번 : ○번, 수량갑 백암정단) •각점 : 기점(삼각점)·보조기점 또는 특정기점으로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나)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다)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라) : ○○도 ○○미터의 점 및 X·Y 좌표 <p>5. 수면의 구역 : 아래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차례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면</p>	
<p>•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p>  <p>○○도 ○○군 ○○면 ○○리 ○○번지</p>	<p>•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p>  <p>○○도 ○○군 ○○면 ○○리 ○○번지</p>
<p>•특정기점을 사용한 경우</p>  <p>○○도 ○○군 ○○면 ○○리 ○○번지</p>	

[별표 2] <개정 2010.6.11>

내수면 면허어업의 명칭·방법 및 규모(제4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명칭	어업의 방법 및 규모
양식어업	조방(粗放)양식	수면적 10헥타르 이하의 댐·호수·늪·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방류하여 양식하는 어업
	가두리양식	수중에 뜬·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수하식양식	수중에 대·지주·뜸·밭줄 등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바닥식양식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여 조류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축제식양식	수면에 제방을 쌓아서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어업
정치망어업	정치망어업	수면적 500헥타르 이상의 댐·호수·늪·저수지 및 하천에 각망이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치성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공동어업	공동어업	손 또는 어구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수산동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어업

[별표 3] <개정 2010.6.11>

내수면 허가어업의 규모 및 방법(제7조 관련)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자 망 어 업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150미터) 이하일 것
연 승 어 업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이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인 경우에는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어업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를 사용할 것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를 사용할 것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이 조업할 것
낭장망어업· 각 망 어 업	낭장망, 각망어구 각각 다섯 통 이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 이하일 것. 다만, 낭장망 및 각망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함.

※ 비고: 패류채취어업의 경우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표 4] <개정 2010.6.11>

어업면허 등의 번호 부여 방법(제10조 관련)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적는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 행정관청의 약칭, 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적는다.
(예시) 2000년 가평 통발신고 제1호
-

[별표 5] <개정 2005.9.30>

어업면허 등의 번호부여 방법(제10조관련)

1. 면허어업
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춘천 공동어업 면허 제1호
2. 허가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종류별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2000년 충주 자망어업 허가 제1호
3. 신고어업
연도·행정관청의 약칭·어업의 종류 및 일련번호의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2000년 가평 통발신고 제1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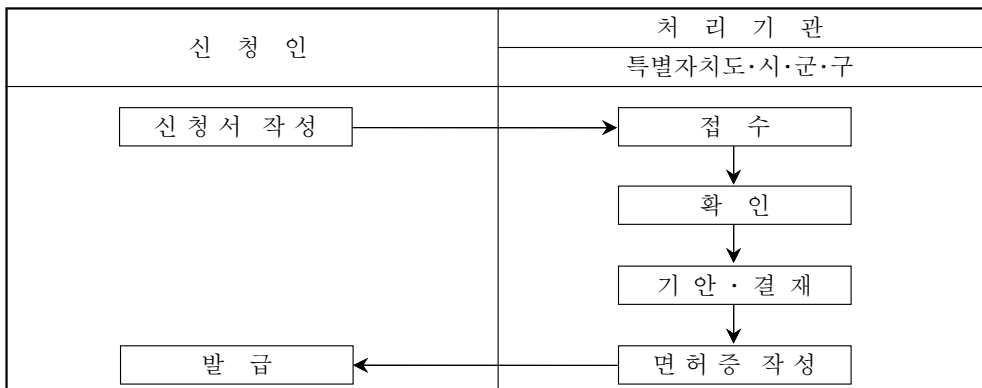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양식어업·정치망어업용)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m ²
⑤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⑥ 어업의 방법 및 사용어선		
⑦ 양식물 또는 포획·채취 물 의 종 류		
⑧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⑨ 지분과 대표자의 주소·성명(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p>「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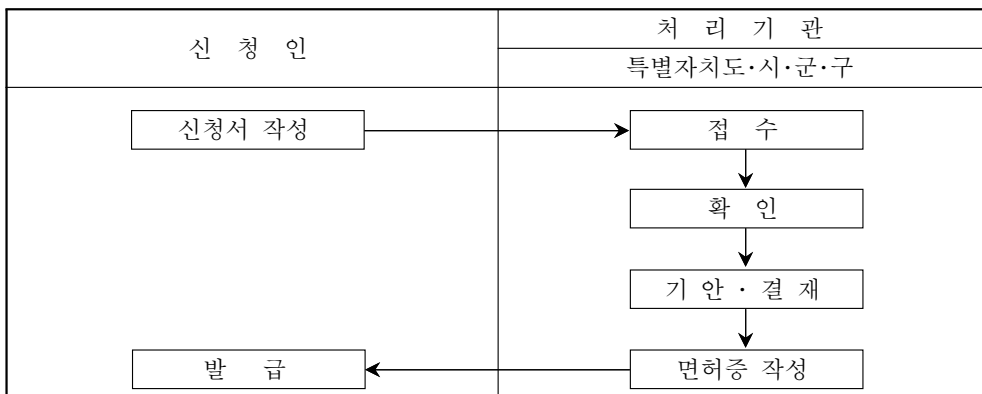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 (공동어업용)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규모	공동어업		규모	m ²
⑤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⑥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⑦ 포획·채취물의 종류	⑧ 사용어구 및 어선 수	⑨ 종사자의 수	
⑩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년간)	
<p>「내수면어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p> <p>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p> <p>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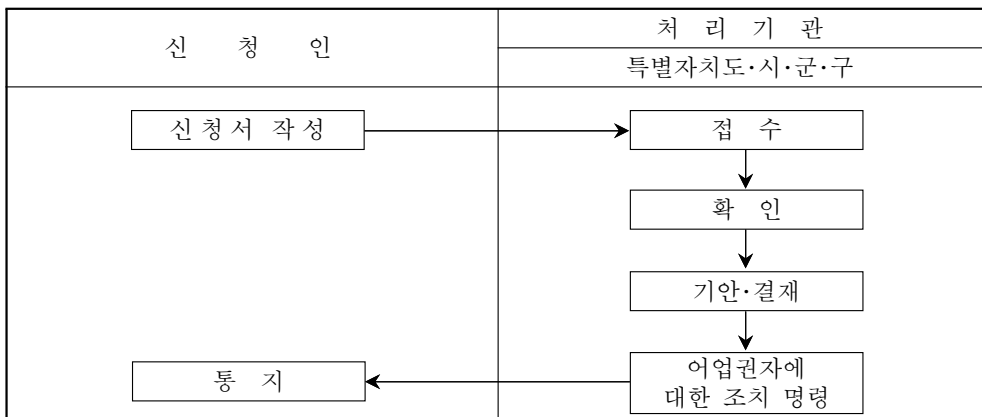
(앞 쪽)

어업시설 제거 등 조치 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시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⑤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도 군 면 리
⑥ 어업권의 표시		양식어업 면허 제 호
⑦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⑧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⑨ 조치의 시기		. . .부터 . . .까지(월간)
⑩ 조치의 방법		
「내수면어업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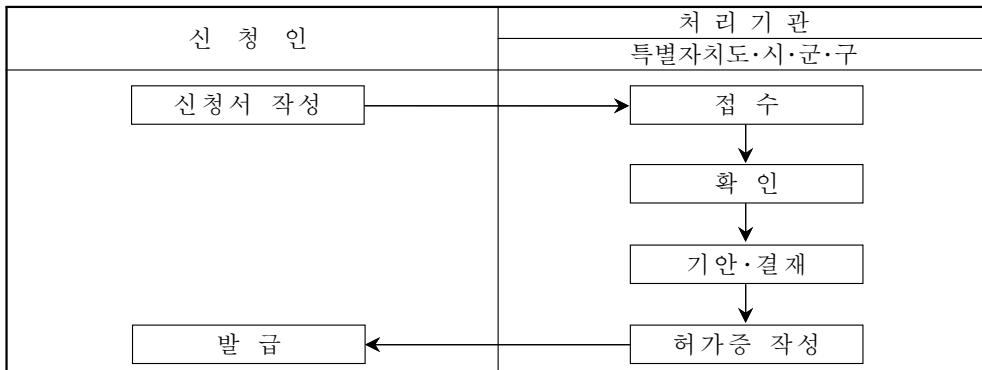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중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종류							
⑤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⑥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⑦ 조업구역 일원							
⑧ 사 용 어 선							
⑨ 포획·채취물의 종류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부터까지(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중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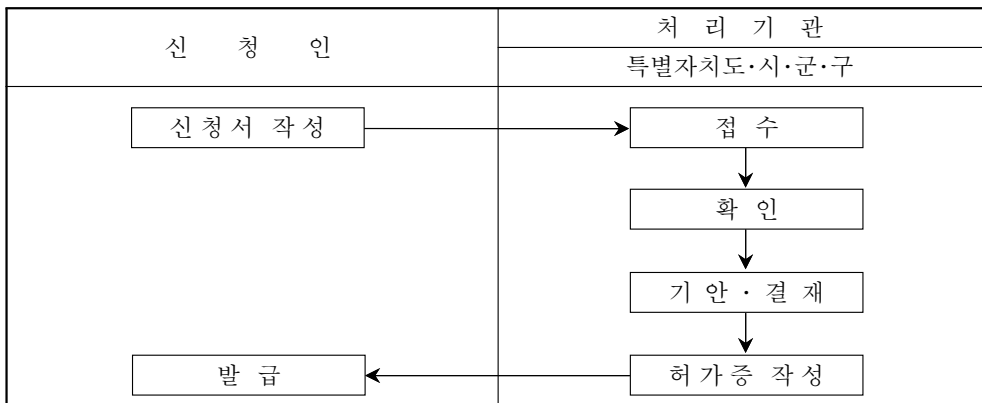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낙시업용)		처리기간 5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낙시터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지선
⑤ 낙시터의 명칭과 수면적		낙시터 수면적
⑥ 자 원 조 성 실 적		실적 잠재자원량
⑦ 낙 시 터 부 대 시 설		
⑧ 포 획 물 의 종 류		
⑨ 낙 시 기 간		. . .부터 . . .까지(월간)
⑩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p>「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수면의 위치도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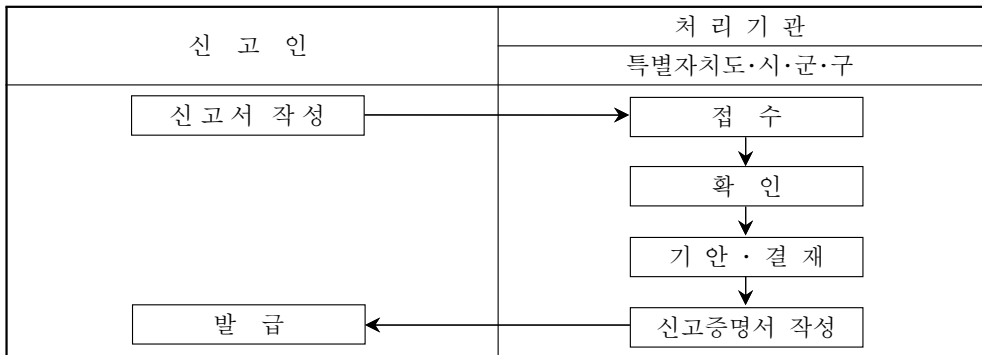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신고서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⑤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⑥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⑦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 구역						
⑧ 사 용 어 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⑨ 포획·채취물의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⑩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육상양식어업 및 관상어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수 수 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10.6.11>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권 현황

1. 신고어업권 현황 총괄표

어업별		시·군명	
신고어업	합계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출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낚시업 기타		

2. 신고어업 처분현황(1)

어업별	구분	전년도 말 유효 건수		해당 연도 말 유효 건수			
		계 (건수)	어선 사용 척수		계 (건수)	어선 사용 척수	
			동력선	무동력선		동력선	무동력선
합계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출낚시어업							
기타							

3. 신고어업 처분현황(2)

어업별	구분	전년도 말 유효 어업권		해당 연도 말 유효 어업권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육상양식어업					
관상어양식어업					
낚시업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10.6.11>

사유수면에서의 어종별·양식방법별 신고어업 현황

1. 주요 어종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m²)

구분	계		뱀장어		송어류		미꾸라지		메기류		향어		잉어		가물치		자라		재첩		다슬기		관상어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 양식방법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m²)

구분	계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조방식		축제식		가두리식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0.6.11>

사유수면에서의 무신고어업 현황

1. 총괄표

(단위: 건, m²)

구분		합계		육상양식		관상어양식		낙시업		기타	
시·도	시·군·구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합계											

2. 주요 어종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m²)

구분	계		뱀장어		송어류		미꾸라지		메기류		향어		잉어		가물치		자라		재첩		다슬기		관상어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3. 양식방법별 양식장 현황

(단위: 건, m²)

구분	계		지수식		유수식		순환여과식		조방식		축제식		가두리식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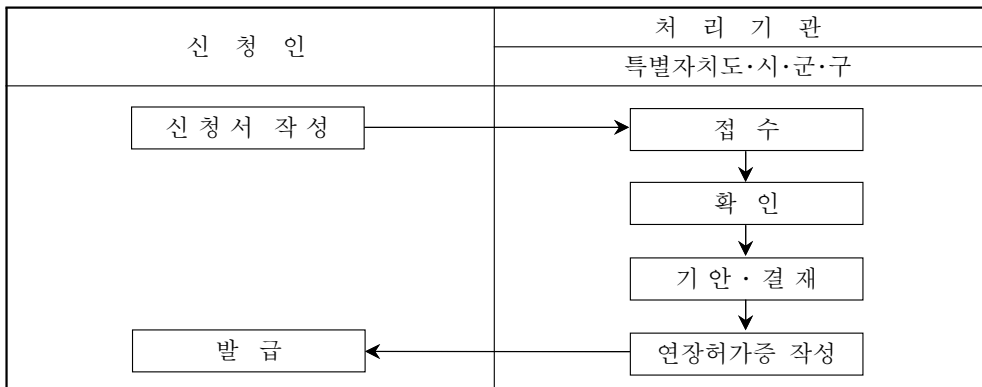
(앞 쪽)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어업면허 제 년도 - 호
⑥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⑦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⑧ 신청 사유		
<p>「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면허 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첨부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어업면허증	수수료 조례에 따름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면허증 (양식어업·정치망어업)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면 허 번 호	년도 도 어업면허 제 호
⑤ 어업의 종류 및 규모	어업 규모 m ²
⑥ 수면의 위치 및 구역	도 군 면 리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⑦ 어업의 방법 및 사 용 어 선	
⑧ 양 식 물 또는 포획·채취물의 종류	
⑨ 면허의 유효기간	부터 까지 (년간)
⑩ 제한 또는 조건	
⑪ 등 록 일	
<p>「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 g/m²]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면허증 (공동어업용)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면 허 번 호	년도 도 공동어업면허 제 호	
⑤ 어 업 의 규 모		
⑥ 수면의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별지 도면과 같습니다)	
⑦ 면 허 사 항		
⑧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⑨ 포획·채취물의 종류	⑩ 종사자의 수
⑪ 면허의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⑫ 제한 또는 조건		
⑬ 등 록 일		
<p>「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면허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p>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 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허가증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허가번호	년도	어업허가	제 호
⑤ 어업의 종류	어업		
⑥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⑦ 사용어선	호	톤	기관 마력 척
⑧ 조업구역	일원		
⑨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⑩ 포획·채취물의 종류			
⑪ 허가의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⑫ 제한 또는 조건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 g/m²]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허가증			
(낙시업용)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허가번호	년도	낙시터허가	제 호
⑤ 낙시터의 위치와 구역	도	군	면 리
⑥ 낙시터의 명칭과 수 면 적	낙시터	헥타르	
⑦ 낙시터 부대시설			
⑧ 포획물의 종류			
⑨ 허가의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⑩ 제한 또는 조건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 g/m²]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신고번호	년 신 고 제 호
⑤ 어업의 종류	
⑥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규모)
⑦ 어업의 방법	
⑧ 조업 구역 또는 시설의 위치	
⑨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⑩ 어업의 시기	
⑪ 유효기간	
⑫ 제한 또는 기간	
<p>「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수리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p>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 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6.11>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증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번호		
⑥ 면허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⑦ 연장허가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⑧ 허가조건	⑨ 연장허가번호		
<p>「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기간의 연장을 허가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 g/m²]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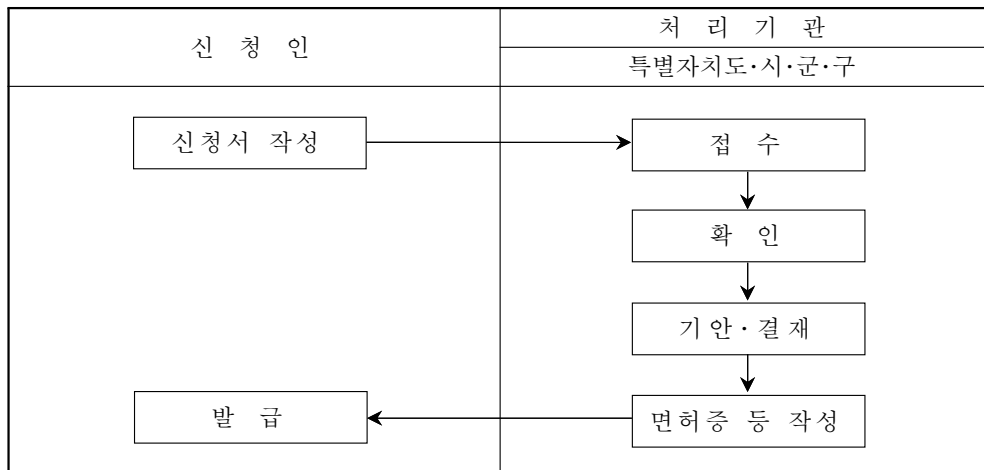
(앞 쪽)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어업의 종류		⑤ 면허·허가· 신고 번호
⑥ 분실(훼손) 연월일		
⑦ 분실(훼손)사유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어업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50px;">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 첨부서류 : 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어업면허증·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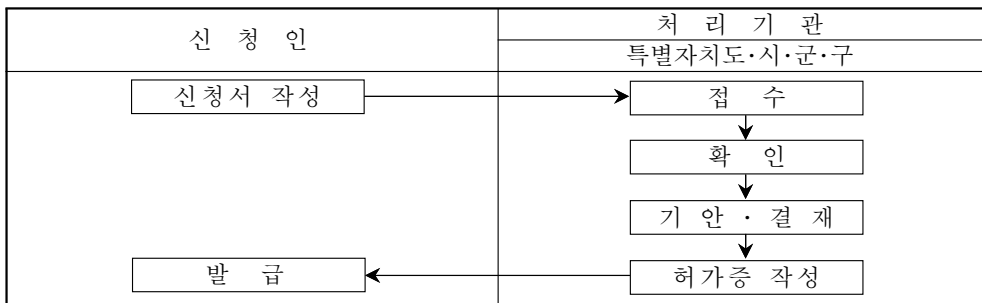
(앞 쪽)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사용하려는 유해어법		
⑤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		
⑥ 허가 신청 사유		
⑦ 포획·채취물의 종류		
⑧ 유해어법 사용시기		
⑨ 허가받으려는 기간		
⑩ 허가받으려는 수면의 어업 실행태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른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 1부(「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별 손실액의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시설계획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6.11>

제 호				
유해어법 사용허가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유해어법의 내용 :				
2. 수면의 위치 및 구역 :				
3. 유해어법 사용시기 :				
4. 허가기간 :				
5. 사용어선				
선 명	톤 수	기 관	마 력	선 질
6. 포획·채취물의 종류:				
7. 제한 또는 조건: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어법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10.6.11>

어도시설 설치결과서						
하천명			기점			
			종점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현황	위치	주소				
		좌표	N ° ' " , S ° ' "			
명칭	관리자	폭	길이	언체 높이	용도	준공일
<input type="checkbox"/> 어도 현황						
형식		폭	길이	기울기	준공일	
※ 첨부서류: 시공 후의 수리시설물과 어도의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6.11>

어도시설 사후관리부						
하천명			기점			
			종점			
<input type="checkbox"/> 시설물 현황	위치	주소				
		좌표	N ° ' " , S ° ' "			
명칭	관리자	폭	길이	언체높이	용도	준공일
<input type="checkbox"/> 어도 현황			시설비			
형식		폭	길이	기울기	준공일	
<input type="checkbox"/> 관리 현황						
연도별	년	년	년	년	년	
관리 내용						
문제점						
개선 사항						
담당자의 직급 및 성명						
※ 뒷면에 붙임 : 시설물의 전경 사진과 어도의 전경 사진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m²]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2001·1·29	법률 제6399호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58호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2·12·30	법률 제6842호
	2004·9·23	법률 제7219호
	2004·12·31	법률 7311호
	2004·12·31	법률 7313호
	2005·5·31	법률 7570호
	2005·8·4	법률 7678호
	2006·9·27	법률 제7988호
	2006·9·27	법률 제8010호
	2007·1·19	법률 제8260호
	2007·1·26	법률 제8299호
	2007·4·11	법률 제8352호
	2007·4·11	법률 제8365호
	2007·4·11	법률 제8370호
	2007·4·11	법률 제8377호
	2007·8·3	법률 제8624호
	2007·12·21	법률 제8789호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3·28	법률 제9009호
	2010·2·4	법률 제10023호
	2010·5·25	법률 제10310호
	2010·5·31	법률 제103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이란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가지도록 한 수산물과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물특산물"이란 수산가공품 중 특정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물전통식품"이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생태계(水棲生態係)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9.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표준규격"이란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12. "지리적표시"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명칭,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것인 경우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삭제 <2010.2.4>
14. "위해물"이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방사능·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5. "병해충"이란 수산동식물이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바이러스 또는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6. "생산자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식품위생법」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11의2.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9.23, 2008.2.29, 2010.1.18>

1.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수산식품부소속 공무원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

한 한국식품연구원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심의회외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5조(표준규격화)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력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표준규격의 제정 절차와 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수산물 생산자 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나 수산물가공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경우
 7.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 ⑤ 품질인증기관의 시설·인력 등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도·감독,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 ①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수산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수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력추적관리품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수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의3(친환경수산물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친환경수산물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이하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친환경수산물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기준, 절차, 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 품목 및 지역,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와 등록신청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 삭제 <2010.2.4>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7.8.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의2(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1조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표시의 이행·변경 또는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

2. 표시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업체명, 업주명, 주소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 내용, 해당 업체, 해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10.2.4]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② 제1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4>

1.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삭제 <2010.2.4>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8.3.28]

제 3 장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개정 2008.3.28>

제15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융자에 관한 사항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자금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수산물가공품 생산 공장의 설치 등) ① 제16조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5.31>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 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제25조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고, 그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2.4>

⑤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 ①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하거나 신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고 사항과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 가.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제4항, 제58조, 제58조의2, 제67조제2항,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
 - 나.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8호에 따른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 다.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
 - 라.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허가의 허가기간 등,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출항·입항의 제한
 -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구역·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수산동식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포획·채취되거나 양식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 나.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1조(우선구매)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 4 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22조(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과정에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거나 남아 있는 것 또는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그 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의2(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정해역위생관리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방향
2.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대책
3.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
2. 지정해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장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종합대책이 수립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4조의3(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지정해역 및 지정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어업(이하 "양식어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어장의 시설(이하 "양식시설"이라 한다)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양식어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식시설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개와 고양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육(가축을 방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의 어업권자(「수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어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 안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 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조제5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지정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5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생산·가공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생산·가공 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이나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맞는다는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 생산·가공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 등록방법, 변경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6조(조사·점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점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2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경우
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이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 5 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 ④ 삭제 <2004.12.31>
- ⑤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목개정 2008.3.28]

제30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검사기관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0조의2(검사관의 자격)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 업무나 재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하 "검사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수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적격한 검사나 재검사를 하여 정부나 검사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린 경우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검사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검사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검사관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1조(검사 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나 제34조에 따라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 결과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검사에 불합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2조(검사증서의 발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33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

34조에 따른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식품위생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6 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야 한다.

②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

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검역을 신청하면 검역 인력이나 검역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이식용수산물을 검역하여야 한다.

④ 검역의 종류와 그 대상, 검역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6조의2(검역관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검역은 수산·수산연구 및 환경 분야에 종사하는 농림수산물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검역
2.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3.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역관의 자격요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7조(파견검역)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경우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나 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출국가에서의 검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8조(검역증명서)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라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맞으면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검역신청인과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발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검역신청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에 따른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제4항에 따른 검역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하거나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스스로 해당 이식용수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물부장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0조(재검역) ① 제36조에 따라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나 검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연구기관(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검역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

출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41조(검역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 7 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개정 2008.3.28>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을 넘는지를,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인 수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용수(用水)·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와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 지역, 대상 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 남아 있는 중금속, 패류독소, 식중독균, 항생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생산단계에서만 할 수 있다.

1. 허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의 초과 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명령, 용도전환명령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 방법의 지정
-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조치 내용에 따라 용수·어장·자재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나 출하자가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에 대하여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검정)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해충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 인력이나 검정 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검정의 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4조의2(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수산물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④수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제 8 장 보 칙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구매하는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2.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6.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제1항·제3항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검역
9.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정

[전문개정 2008.3.28]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항공기, 선박, 해양시설, 양식시설이나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 삭제 <2010.2.4>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및 점검
 5. 제24조의3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여부 확인·조사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해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7. 제29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8. 제36조에 따른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
 9.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산가공품, 자재, 시설, 오염물질 및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자, 가공자, 소유자, 점유자, 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7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친환경수산물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제11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 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시장과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3. 자원봉사자
-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방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8조 삭제 <2010.2.4>

-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에게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과 검사·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0조(청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2. 제12조에 따른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5. 제28조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이나 생산·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 업무의 정지
7. 제35조에 따른 검사 관정의 취소
8. 제41조에 따른 검역 관정의 취소

[전문개정 2008.3.28]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출연기관
4.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

[전문개정 2008.3.28]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 관련 법인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8.3.28]

제 9 장 벌 칙

제53조(벌칙)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의2(벌칙)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등을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4조의3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

사를 받은 자

7.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8.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에 따른 검역, 제37조에 따른 파견 검역 또는 제40조에 따른 재검역을 받은 자
10. 제39조제1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7.1.26, 2007.8.3>

1. 제8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의3.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시정·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

제54조의2(과실범) 과실로 제53조의2의 죄를 지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6, 2007.8.3, 2010.2.4>

1.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제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10.2.4>

1의3.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에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1.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6399호, 2001. 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은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정지 등의 처분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해역과 등록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1조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는 각각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 (그 밖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이식용 수산물등에 대하여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1호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者"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을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生産·採取 또는 捕獲된 國家·地域 또는 海域"을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遺傳子變形農水産物"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로 한다.

제3조제1항중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패류毒素·食中毒菌"을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土壤·用水·漁場·資材"를 각각 "土壤·用水·資材"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表示對象農水産物"을 각각 "表示對象農産物"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農水産物名譽監視員"을 각각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2장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을 각각 "農産物加工産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제1항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 및 畜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3장의 제목 및 제16조중 "農水産物加工品"을 각각 "農産物加工品"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동조제1항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21조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을 "漁獲物運搬業"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第47條第1項第3號 또는 第50條第1項第2號"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第47條 또는 第50條"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第46條第1項 또는 第49條第1項"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第46條第1項 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를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第47條第1項第2號 또는 第50條第1項第2號"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漁業을 경영한 자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각각 "農産物品質管理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업법이나 그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6458호, 2001. 3.28>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41호,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6842호, 2002.12.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수산물관련법령집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16>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7219호, 2004. 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생략

부 칙 <제7311호, 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를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7313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제54조의2, 제55조(제53조제2호, 제54조제1호의2 및 제

5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5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570호, 2005. 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78호, 2005. 8.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4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7988호, 2006. 9.27> (소비자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수산물관련법령집

부 칙 <제8010호, 2006. 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가축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8260호, 2007. 1.19>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⑧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 <제8299호, 2007. 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8352호, 2007. 4.1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8365호, 2007. 4.11> (약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약사법 제72조의6의 규정"을 "「약사법」 제85조"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 <제8370호, 2007. 4.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 <제8377호, 2007. 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를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제18조"를 "「수산업법」 제21조"로 한다.

제29조제5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52조 중 "수산업법 제9조의2"를 각각 "「수산업법」 제10조"로 한다.

⑮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8624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89호, 2007.12.21>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7> 까지 생략

<65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9조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및 제4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제3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4항 진단,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진단, 제24조의3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로 한다. 제4조제5항제1호 및 제36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65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단서 및 제2항·제3항·제6항,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7항,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6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009호, 2008. 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 제20조,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농림수산식품부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3조제5항과 제26조제3항·제4항(대통령령만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제9401호, 2009. 1.30> (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5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제9932호, 2010. 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6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002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
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
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
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

수산물관련법령집

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 <제10023호, 2010. 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310호,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부터 <2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46>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정	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
일부개정	2002. 3. 2	대통령령	17528호
	2004. 3. 17	대통령령	18312호
	2004. 12. 3	대통령령	18594호
	2005. 7. 27	대통령령	18968호
	2006. 6. 30	대통령령	제19605호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7호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9호
	2008. 1. 25	대통령령	제20566호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7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8. 4	대통령령	제20950호
	2010. 8. 11	대통령령	제2233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7>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05.7.27>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제3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심의회는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회의 부위원장은 심의회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심의회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심의회회의 위원장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심의회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회의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13>

③분과위원장·분과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회의 위원장이 심의회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회의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회의 회의) ①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과위원회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분과위원회회의가 제9조의 운영세칙에 의하여 심의회회의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회의 및 분과위원회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회의 및 분과위원회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 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10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산물·수산물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품목 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고시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1.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수산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4. 삭제 <2008.8.4>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4>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7>

1. 당해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당해 수산물의 품질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당해 수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중 이상품(異狀品)에 대한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료의 조사 및 그 시안의 작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7.27,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 소속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식품관련 전문연구기관
3. 대학 또는 대학의 연구소

제12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수산물·수산물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및 대상품목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08.8.4>

1. 당해 품목의 명칭,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것
2.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진 것일 것
3. 그 밖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08.8.4>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8.4>

1. 해역은 서식지, 어획·채취의 환경이 동일한 해역을 위도와 경도로 할 것
2. 생산·가공하는 장소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장소를 행정구역 또는 강을 기준으로 할 것

제14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및 등록신청자의 자격)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8.4>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할 수 있다. 다만, 생산하

거나 가공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8.4>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8.4>
[전문개정 2007.12.13]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08.8.4>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리적표시등록이의신청서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8.4>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증교부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6조 삭제 <2008.8.4>

제17조 삭제 <2010.8.11>

제18조 삭제 <2010.8.11>

제19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1. 기존의 수산물과 구성성분·영양가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 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2. 그 밖에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한 유해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품목 외의 유전자변형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대상 품목중 유전자변형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7.27]

제20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7>

1. 유전자변형수산물 :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수산물 :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 "유전자변형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개정 2005.7.27>

1.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잘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수산물인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표시정지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의2(공표명령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의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판매가격의 환산은 적발 당일에 인근 법정도매시장이 공시한 해당 품목의 중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도매가격이 없으면 그 위반자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업체명·업주명 및 주소
2. 시정명령을 받은 원인사실과 처분내용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8.4>

1.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업체명 및 주소
4. 위반내용(위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포함한다)
5. 처분내용(처분권자 및 처분일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8.1.25]

제 3 장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22조(자금의 지원) 법 제1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4>

수산물관련법령집

1. 수산가공품의 포장디자인의 개발
2. 전시회·품평회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3. 가공업자상호간의 협동사업의 육성
4. 수산가공품의 품목전환 지원
5. 가공시설의 개선 또는 새로운 가공기술의 도입
6. 판매망의 확충
7.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의2(국유지의 수의계약 매각 용도) 국가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대부한 국유지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세척 및 포장을 말한다)를 하는 작업장을 축조·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 생산·가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8.4]

제23조(명인의 지정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조상전래의 특별한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수산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1. 당해 수산전통식품의 조리·가공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할 것
2. 당해 명인으로부터 그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를 받은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할 것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8.4>

1. 당해 식품의 전통성
2.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3. 기능보유자의 경력
4. 조리·가공방법
5. 보호가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한다. <개정 2008.2.29>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명인지정 추천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인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⑥명인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등 명인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명인지정서의 반납)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등록 및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수산물가공업(제3호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등록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1. 어유(간유)가공업 :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2. 냉동·냉장업 :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燻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선상수산물가공업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1. 수산피혁가공업 :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2. 해조류가공업 :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호료·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제27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7.27>

제28조(청문) 시·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의 제한, 영업의 정지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29조(수산물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8.4>

1. 법 제22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생산·가공시설등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3. 생산·가공품의 종류

제29조의2(조사·점검의 주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위생관리기준 또는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조사·점검 주기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4]

제29조의3(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생산·가공업자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

수산물품질관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조사·점검을 요청받은 농림수산물품질관리부 장관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조사·점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0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8.4>

1. 선박의 좌초·충돌·침몰 그밖에 인근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2.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강우량의 변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역의 오염이 우려되어 농림수산물품질관리부 장관이 수산물의 생산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에 대한 생산제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품질관리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지정해역의 지정해제) 농림수산물품질관리부 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역에 대한 최근 2년 6월간의 조사·점검결과를 평가한 후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중지·개선·보수명령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이하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이라 한다) 및 등록취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품질관리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5 장 수산물 등의 검사 및 안전성조사 등

제32조의2(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3(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2조의5(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33조(검사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관은 품질검사원에서 수산직·수산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병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수질

환경산업기사 또는 식품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수산가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미생물학·생명공학·환경공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원의 검사관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2. 검사기관의 검사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

나. 해당 검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품질검사원장이 시행하는 지정검사기관 검사관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관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합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제33조의2(검사관의 교육) ①품질검사원장은 검사관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1.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에의 위탁 또는 파견 교육

2. 자체교육

3. 지정검사기관이 요청하는 검사원 교육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5.7.27]

제34조(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제35조(검역관의 자격기준) ①법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품질검사원에서 6월 이상 근무할 것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병기사의 자격을 소지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농림수산식품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어병학·수산생물학·양식학·생명공학·수산생물질병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

2. 품질검사원에서 6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품질검사원장이 행하는 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가.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품질검사원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국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기관에서 검역에 관한 교육을 4주 이상 이수한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검역관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합격자의 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제35조의2(검역관의 자격취소 등) 법 제3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관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파견검역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2. 품종별 검역대상 질병을 잘못 적용하거나 검역을 생략한 경우

[본조신설 2005.7.27]

제36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물부장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3.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4. 안전성조사의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성조사의 대상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조사는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 것
- ③안전성조사방법은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별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한다.
-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연기 조치를 한 수산물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출하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의 안전성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조치 및 처리방법)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1.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해물질이 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수산물에 한한다)
2. 수산물에 잔류된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당해 수산물을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수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폐기

제 6 장 보 칙

제39조 삭제 <2010.8.11>

제40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3.2, 2008.2.29, 2008.8.4>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
2. 삭제 <2010.8.4>

3. 삭제 <2010.8.4>
4.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중 해역에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
5.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6. 삭제 <2010.8.4>
7. 삭제 <2010.8.4>
8. 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②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27, 2008.1.25, 2008.2.29, 2008.8.4, 2010.8.11>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표준규격의 제·개정 및 폐지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수산물전통식품의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심사에 한한다)
 3.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 3의3. 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이력추적관리품·친환경수산물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6.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 6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 및 공표명령
7.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
8.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9.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합여부 조사·점검중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

- 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
11.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12.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3.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1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판정의 통지 및 수산물·수산가공품의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요청
 1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16.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1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18.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19. 법 제38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의 발급 및 검역기준에의 부적합 사실의 통지
 20.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명령 및 폐기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2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판정의 취소
 2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해역에서 서식하는 패류에 대한 패류독소 조사를 제외한다)
 2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
 25.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정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인증기준,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6. 삭제 <2010.8.11>
 27.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28.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7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29.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제외한다)

30.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3호·제5호·제10호·제12호·제16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31. 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6호,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③ 삭제 <2008.2.29>
- ④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27, 2008.1.25, 2008.2.29, 2008.8.4, 2010.8.11>
1. 삭제 <2008.1.25>
 2. 법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지원
 - 2의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
 5.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6. 삭제 <2005.7.27>
 7. 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
 8. 삭제 <2010.8.11>
 - 8의2.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 및 점검
 9.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3호·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등에 한한다)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 해당한다)

11.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12.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7.27, 2008.2.29, 2008.8.4>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 등록(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수산물가공업중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등록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 2의2.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조사
3.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청문에 한하고, 부산광역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⑥과학원장 및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3.2, 2008.2.29, 2008.8.4>

제41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삭제 <2010.8.11>
- ③ 삭제 <2010.8.11>
- ④ 삭제 <2010.8.11>

제4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8.8.4]

부 칙 <제17351호, 2001. 9.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물 품질인증대상품목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수산특산물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대상품목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수산물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으로 본다.

제5조 (원산지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된 것은 2002년 8월 31일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표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25조제1항제2호·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4항·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2조 본문·제1호·제2호, 제23조 본문,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본문·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이하 "농산물심의회"라 한다)"를 "(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농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2항중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13조 및 제16조제1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각각"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제5호·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5호,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 본문, 제21조제3항, 제22조 본문,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제3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농산물심의회, 수산물심의회"를 "심의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4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4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용수·어장"을 "용수"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수입농수산물"을 각각 "수입농산물"로 한다.

제23조 단서, 제24조제1항제2호·제3항, 제25조제2항 단서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수입농수산물등"을 각각 "수입농산물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산수산물"을 "국산농산물등"으로 한다.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및 별표 3 제3호 가목의 제목중 "국산농수산물"을 각각 "국산농산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의 제목, 제27조제1항 본문,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2호 위반행위란의 바목·사목, 별표 3 제3호 가목(1)의 제목 및 별표 3 제3호 가목(2)의 제목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산림청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부과권자"를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중 "농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43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제2항·제7조·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중 "해당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제7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3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정부수매농수산물"을 "정부수매농산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7항 및 제8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2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1항 본문중 "과징금의 금액·부과기준 및 수산물가공업의 과징금 산정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를 "과징금의 금액·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7 위반행위란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영한 자

④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농수산물가공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수산업법 제49조"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로 한다.

⑤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등록을 받아 당해 영업을 하는 경우

⑥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처분대상자란 제5호 단서 및 제6호 단서중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각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시행령·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시행령 또는 수산업법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7528호, 2002. 3. 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수산물관련법령집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진흥원장"을 "과학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 칙 <제18312호, 2004. 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594호, 2004.12. 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2>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18968호, 2005. 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9605호, 2006. 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7호, 2007. 9.10>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를 "제56조"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⑫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0449호, 2007.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66호, 2008. 1.25>

이 영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587호, 2008. 1.3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물부"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제6항 중 "과학원장·품질검사원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과학원장 및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조사·확인하거나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품질검사원장·지방해양수산청장"을 "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본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0조제3항·제4항, 제22조제7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5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제3호, 제31조, 제33조제1항제1호나목,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1항·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6조 본문,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제4항·제6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호 및 제4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0950호, 2008.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03호, 2010. 1.27>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2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22075호, 2010. 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5> 까지 생략

<106>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 <제22327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의2·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2332호, 2010. 8.11>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을 "제23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1호 중 "제9호 및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호·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제8호, 제8호의2"를 "제8호의2"로 한다.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56조제1항 제1호의3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

별표 6 제3호의 제목 중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제2호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목 (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8.8.4>

표시정지등의 처분기준(제21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표준규격품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3)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당해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6월	-	-

나. 품질인증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 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2조	인증취소	-	-
(5)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2조	인증취소	-	-

다. 이력추적관리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
4)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 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5)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3)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
4)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 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5)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 가 발생하게 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마. 지리적표시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수산물관련법령집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3)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월	등록취소	-
(4)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5)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게 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별표 2] <개정 2005.7.27>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제27조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가공업 및 냉동·냉장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냉동·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냉장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복개되어야 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기구류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용기·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위생시설	<p>(나) 취수관·배수관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p> <p>(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하여야 한다.</p> <p>(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당해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아니하여야 한다.</p> <p>(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p> <p>(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창문 등에는 쥐 및 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 그 밖의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하고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센티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p>
----------	---

나. 선상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p>(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p> <p>(다)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악취·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라) 기계·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 <p>(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p> <p>(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용기·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p>

(2) 위생시설	<p>(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하여야 한다.</p> <p>(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센티미터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p>
----------	--

2. 업종별 시설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p>(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솥의 수는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p> <p>(4) 그 밖의 제유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p>
나. 냉동·냉장업	<p>(1) 냉동·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을 제외한다.</p> <p>(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p> <p>(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실마다 비치하여야 한다.</p> <p>(4) 동결실은 제품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횡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섭씨 영하 4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p> <p>(5) 압축기에는 안전판·유압계이지 및 고저압계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p> <p>(6) 응축기·팽창관·수액기·증발기 및 유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구비한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p> <p>(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p>

<p>다. 선상수산물 가공업</p> <p>(1) 선상냉동· 냉장업(연육 으로 처리 하여 냉동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2) 선상어유(간 유)가공업</p>	<p>(8) 고저압배관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하여야 하고 정압팽창관· 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p> <p>(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p> <p>(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p> <p>이 표의 2. 업종별 시설기준의 나. 냉동·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횡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섭씨 영하 45 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 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섭씨 영하 1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p> <p>이 표의 2. 업종별 시설기준의 가. 어유(간유)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p>
--	--

[별표 3]

중지·개선·보수명령등 및 등록취소의 기준(제32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개선·보수명령인 경우에는 처분을 가중하여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라.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등록시설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기 전에 위반사유 및 동기등을 참작하여 지도·계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처분전에 원인규명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처분을 한다.
- 바.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반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조사·점검 등을 통하여 그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등록취소	-
가. 위생관리기준에 중대하게 미달되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나. 위생관리기준에 경미하게 미달되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	등록취소

수산물관련법령집

<p>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p> <p>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p> <p>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p>	<p>법 제28조</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p> <p>시정명령</p>	<p>등록취소</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p>	<p>-</p> <p>등록취소</p>
<p>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p>	<p>법 제28조</p>	<p>등록취소</p>	<p>-</p>	<p>-</p>
<p>4.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p>	<p>법 제28조</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p>	<p>등록취소</p>	<p>-</p>
<p>5.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때</p> <p>가. 시정이 가능한 위해물이 발견된 때</p> <p>나. 시정이 불가능한 위해물이 발견된 때</p>	<p>법 제28조</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명령</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p>	<p>생산·가공·출하·운반의 제한·중지명령</p> <p>등록취소</p>	<p>등록취소</p> <p>-</p>
<p>6. 중지명령 또는 개선·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p>	<p>법 제28조</p>	<p>등록취소</p>	<p>-</p>	<p>-</p>

[별표 4] <신설 2008.8.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1. 조직 및 인력
 -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5] <신설 2008.8.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30조제3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다. 검사를 거짓으로 한 때	법 제30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라. 검사를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때	법 제30조제3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별표 6] <개정 2010.8.11>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 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300만원
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나목	300만원
다.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법 제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다목	300만원
라. 삭제 <2010.8.11>		
마.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3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3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아.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4호	800만원

수산물관련법령집

자.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5호	500만원
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 을 영위하는 자	법 제56조제2항	100만원
카.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3항제1호	30만원
타. 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 한 자	법 제56조제3항제2호	30만원
파.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 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자로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56조제3항제3호	30만원

3. 제2호마목 및 바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국산수산물, 수입수산물 등

(1)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와 헛집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천원 단위로 부과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나) (가)의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천원 단위로 부과한다.

나. 삭제 <2010.8.11>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2001. 9. 1	해양수산부령 제202호	
일부개정	2002. 3. 9	해양수산부령 제220호	
	2004. 2. 2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5. 7. 28	해양수산부령 제300호	
	2006. 6. 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7. 10. 18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2007. 12. 20	해양수산부령 제396호	
	2008. 1. 25	해양수산부령 제403호	
	2008. 2. 4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8. 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호	
	타법개정	2010. 8.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7.28, 2008.3.3, 2008.8.4, 2010.8.4>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외국인을 포함한다)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 2 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3조(표준규격의 제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

장"이라 한다)은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2010.8.4>

1. 거래단위
 2. 포장의 크기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4. 포장방법
 5. 포장설계
 6. 표시사항
 7. 품질검사원장이 품목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크기·형태·색깔·신선도·건조도·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에 따라 정한다.
- ④품질검사원장은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4조(표준규격의 고시) 품질검사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
 2. 산지
 3. 등급
 4. 무게 또는 갯수(마리수)
 5.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08.8.4>

- ③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품질·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 ④생산자단체는 그 소속 생산자에게 표준규격을 보급하고 선별 및 포장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품질인증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 또는 법 제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8.4>

-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 2. 삭제 <2008.8.4>
-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8.4>

- 1. 최근 6월간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 2. 삭제 <2008.8.4>
-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제7조(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심사절차)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신청인의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2.2, 2008.3.3, 2008.8.4, 2010.8.4>

③생산자단체가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생산자단체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표시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 : 별표 1

2.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 : 별표 2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의 표시 항목과 그 인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8, 2008.8.4>

1. 산지 : 당해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명칭으로 인증하되, 인증신청자가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2. 품명 : 표준명칭으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다.

3.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4. 삭제 <2005.7.28>

5. 생산조건 :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한다.

6. 삭제 <2008.8.4>

③ 삭제 <2005.7.28>

④ 삭제 <2005.7.2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제9조(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절차)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품질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6월 이내에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③품질검사원장은 품질인증심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 제11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에 따른 경비는 품질인증신청자가 부담한다.
- ④품질검사원장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통식품품질인증의 심사결과보고) ①품질검사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 및 품질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국산수산물사용확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공장심사평가서
 4. 품질시험성적서

제11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서를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번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3. 인증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 수산특산물 또는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재교부신청서에 품질인증서를 첨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2008.3.3>

제12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③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제1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7.28>

제1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5.7.28, 2006.6.26>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2010.8.4>

③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④품질검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제15조(품질인증기관의 지도·감독)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원장은 품질인증기관이 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5.7.28>

제1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5.7.28>

②품질검사원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16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3(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4(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품질검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③ 품질검사원장은 생산자단체·조직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④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 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⑥ 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5(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 4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6(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7(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8(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9(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 가. 품목명
- 나. 생산자 성명
- 다. 생산자 주소
- 라. 생산자 전화번호
- 마.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통단계

- 가. 유통업자 성명
- 나. 유통시설 명칭
- 다. 유통시설 소재지
- 라. 유통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 가. 판매업자 성명
- 나. 판매처 명칭
- 다. 판매처 소재지
- 라. 판매처 전화번호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10(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 품목) ①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장의 수질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라 농림수산물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3. 종묘도입에서 출하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은 농림수산물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물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11(친환경수산물의 인증신청)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및 제9호의7서식의 친환경수산물가공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양식장(가공공장) 주변도
3.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을 첨부하고, 수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생산(가공),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12(친환경수산물의 인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13(친환경수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 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8.4]

제16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8.4]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생산계획서(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전문개정 2007.12.20]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품질검사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1. 지리적표시의 명칭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8.4>

③품질검사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제20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③품질검사원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주소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제21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지리적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풋말로써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8.8.4]

제22조 삭제 <2010.8.11>

제23조 삭제 <2010.8.11>

제24조 삭제 <2010.8.11>

제25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절차)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
2. 위반사항

3. 시정사항
4. 시정기한
5. 명령 불이행시 처분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세부절차·방법, 시정기한의 설정 및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등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 3 장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및 관리

제26조(전통식품가공자금등의 지원신청) ①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전통식품가공업계획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기능전수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기능전수자금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산가공품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유래·전승계보, 전승경위, 사용용기·기구, 조리·가공방법 및 제품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사진(4cm × 5cm) 2매

제29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추천) 시·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

산식품부장관에게 명인지정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8.4>

1. 유래·전승계보
2. 계승경위
3. 사용용기·기구
4. 조리·가공방법
5. 제품의 특성
6. 분포실태
7. 유사기능보유자의 현황
8. 보호가치

제30조(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서의 교부) ①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훼손하였거나 동 지정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1조(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의 공고)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인을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주소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조리·가공방법
5. 지정의 취소사유(지정을 취소한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08.3.3, 2010.8.4>

1. 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유(간유)가공업 또는 냉동·냉장업 :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

수산물관련법령집

산광역시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다만, 부산광역시의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상수산물가공업 :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산광역시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②농림수산물부 장관, 부산광역시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08.3.3>

제3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1.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제33조의2(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

경한 때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주소(지번)
 4.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냉동·냉장실[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 자숙(煮熟)술·압착기·분해조·정유조·저유조를, 냉동·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를 포함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등록 또는 신고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34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증 및 신고필증의 재교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증(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현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제35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대장의 관리) ①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대장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사항, 등록사항의 변경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사항 보고)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 및 처분상황 보고서를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7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 4 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38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정해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3>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해역 지정을 위한 위생조사·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
역에 대하여 조사·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의 위생
관리기준(이하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요청한 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2008.3.3>

1. 지정받고자 하는 해역 및 그 부근의 도면
 2. 지정받고자 하는 해역의 위생조사결과서 및 지정해역 지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
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의 의견서
 3. 지정받고자 하는 해역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존을 위한 지정해역 위생관리계획서
- ③시·도지사는 과학원장에게 제2항제2호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해역의 수산자원·폐기물처리시설·분뇨시설·축산폐수·농업폐수·생활폐기물 그 밖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해역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1. 잠정지정해역 : 1년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2. 일반지정해역 : 2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39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①과학원장은 지정된 지정해역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위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②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조사를 한 결과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
생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품질검사원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3.9, 2008.3.3>

제40조(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시설의 경우에는 제7호의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5.7.28, 2009.6.30>

1. 생산·가공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3. 생산·가공시설의 용수배관 배치도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계획서(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 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생산·가공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생산·가공시설 중 선박 또는 보관시설을 제외한다)
 - 가. 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시설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 나. 그 밖의 생산·가공시설 :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이 포함된 수질검사성적서
6. 선박의 시설배치도(유럽연합에 등록하게 되는 생산·가공시설중 선박에 한한다)
7.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다만, 면허·허가·등록·신고의 대상이 아닌 생산·가공시설은 제외한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계획서

4.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신고, 공판장·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08.8.4>

1. 생산·가공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패류양식시설은 제3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정해역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④품질검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점검을 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2서식의 생산·가공시설등록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26호의 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1. 생산·가공시설등록증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품질검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8.4>

제41조(등록시설의 조사·점검) 품질검사원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조사·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생산·가공시설등을 조사·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품질검사원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품질검사원장 또는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점검하게 할 것 [전문개정 2010.8.4]

제41조의2(공동조사신청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점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4>
[본조신설 2008.8.4]

제4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해역이 영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생산이 제한된 지정해역이 지정해역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생산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3조(생산·가공의 중지·보수·개선명령등) ①조사·점검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이하 "중지·보수·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그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중지·보수·개선명령등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교부받은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증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산물등의 검사

제44조(검사대상)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한국산패류의위생적처리에관한협정 및 동 양해각서
2.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한국산생식용굴취급에관한구상서
3.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활이매패류(活二枚貝類)·극피류(棘皮類)·피낭류(被囊類)·해양복족동물(海洋腹足動物)의수입을위한특별조건
4. 유럽연합이 결정한 한국산수산물및수산양식제품의수입을관리하는특정수입조건

5. 대한민국해양수산부와중화인민공화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간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관한약정
6. 그 밖에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되는 협약, 국제기구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위생조건

제45조(검사신청) ①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 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이하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규격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그 기준·규격이 명시된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
2. 법 제2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일지
3. 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의 확인서
4. 재검사인 경우 : 재검사 사유서

②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은 검사를 받고자 하는 일자의 5일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검사장소·검사희망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검사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검사희망일을 연기하여 그 지연된 기간은 검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검사기준)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활어패류·건제품·냉동품·염장품 등의 제품별·품목별로 검사항목, 관능검사의 기준 및 정밀검사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검사시료 채취)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사시료"라 한다)의 채취량 및 채취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검사(검역)시료채취증을 당해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제48조(검사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7.28>

②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과정에서 당해 수산물의 재선별·재처리 등을 하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선별·재처리 등을 하게 한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49조(검사대장의 작성·보관) 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 두거나 전산으로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접수대장
2.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집행상황부
3. 별지 제31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

[전문개정 2010.8.4]

제50조(검사의 일부생략) ①품질검사원장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검사중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생산·가공일지
 - 가. 품명
 - 나. 생산(가공)기간
 - 다. 생산량 및 재고량
 - 라. 품질관리자 및 포장재
2. 법 제2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선장의 확인서
 - 가. 어선명
 - 나. 어획기간
 - 다. 어장위치
 - 라. 어획물의 생산·가공 및 보관방법

②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수입자를 포함한다)에서 일정 항목만의 검사를 요청하는 서류 또는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의한 검사중 요청한 검사항목에 대

하여만 검사할 수 있다.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8.4]

제52조 삭제 <2008.8.4>

제53조 삭제 <2008.8.4>

제54조 삭제 <2008.8.4>

제55조(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① 품질검사원장이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관의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검사기관명)을 발급한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관의 위촉을 취소하고 검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8.4]

제56조(검사관 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8.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수산가공학·식품위생학·분석이론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선도판정방법·분석기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5.7.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제56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자격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5.7.28]

제57조(검사결과의 표시)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결과의 표시는 별표 10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검사증서의 교부 등)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이하 "검사합격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증서를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37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38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를 제3자의 명의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④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⑤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교부받기 위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서추가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추가로 교부할 수 있다.

⑥품질검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하여는 그 검사증서에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의 교부) 품질검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8.4>

제 6 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제60조(이식용수산물의 검역신청) ①법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의 재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재)검역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2.3.9, 2005.7.28, 2010.5.31>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이 발행한 이식승인서 사본
2.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국가 및 품종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에 갈음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3. 선하증권사본 등 수입관련서류
4. 보세구역외장치허가서 사본(보세구역 외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
5.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재검역사유서(재검역인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입수산물의 검역신청은 수입되는 이식용수산물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 기산일은 검역 희망일부터 산정하며, 미리 신청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1조(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기준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나 어류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식용수출수산물에 대한 검역기준의 적용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검역기준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질병
2. 국내 수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품질검사원장이 인정하여 정한 질병

3. 낚시터 방류용 어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검역관의 임명)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검역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검역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3조(검역관 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의 자격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05.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수산생물학·어병학·질병진단이론 및 수산물품질관리법령 등에 관하여 진위형과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질병진단기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전형시험의 응시절차 및 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5.7.28>

제63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64조(검역시료 채취) ①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을 위한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이하 "검역시료"라 한다)는 별표 12의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시료 채취방법 및 채취량에 의한다.

②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검사(검역)시료채취증을 당해 검역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검역의 종류 및 방법)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5.7.28>

제66조(과건검역절차 및 방법)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수출국가과건검역(이하 "과건검역"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출국가과건검역신청서에 과건검역을 받고자 하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9, 2005.7.28, 2010.5.31>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원장이 발행한

이식승인서 사본

2. 수출국가파견검역관(이하 "파견검역관"이라 한다)이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사장비 등의 시설을 제공한다는 확인서(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검역물량을 수용·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위치도

4. 파견검역관이 검역에 필요하여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 및 검역 등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확인서

②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검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파견검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견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국정부가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사장비 등의 시설을 제공받아 파견검역 실시

2. 파견검역관이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송부하고, 국내검역기관에서 정밀검역 실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결과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검역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파견검역을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7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적합한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역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수입수산물 : 별지 제46호서식의 이식용수입수산물검역증명서(검역신청인의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수출수산물 :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생동식물검역증명서

②품질검사원장은 검역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이식용수산물검역증명서제고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식용수출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생동식물 검역증명서에 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검역필증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68조(폐기·반송의 명령 등) ①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용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식용수출수산물의 경우에 과학원장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9>

②품질검사원장은 수입한 이식용수산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을 명령한 때에는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검역신청내역 및 부적합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 장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제69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8.4>

1. 항생물질
2. 중금속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물질

제70조(수산물등의 검정절차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산물등"이라 한다)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수산물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등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수산물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등의 검정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검정신청인이 검정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검정할 수 있다.

④수산물등의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0조의2(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항생물질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3.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08.1.25]

제70조의3(수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이하 "수산물정보"라 한다)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수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산물정보를 생성하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산물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수산물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1. 품질인증정보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정보
3.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정보
4. 수산물 검사정보
5. 수산물 안전성조사·분석 정보
6. 수산생물검역정보
7. 그 밖에 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정보의 제공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8.1.25]

제 8 장 보 칙

제71조(수수료)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다만, 법 제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제3항, 제37조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 재검사, 검역, 과견검역 또는 재검역의 신청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았거나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5.7.28, 2010.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④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와 당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73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산물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08.3.3>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이나 임·직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품질검사원장이 해당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 수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8.4, 2010.8.11>

1.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지리적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에 관한 지도·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신고

2. 그 밖에 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부여하는 임무
③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제74조(위생관리 실적 등의 보고) ①과학원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
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02.3.9, 2008.3.3>

②조사·점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의 대표자
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하여 생산·원
료입하·제조 및 가공 등에 관한 사항
2.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의 중지·개선·보수명령등의 이행에 관
한 사항

제75조 삭제 <2008.8.4>

부 칙 <제202호, 2001. 9.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해양수산물법은 이를 폐지한다.

1.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2.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조 (수산물표준출하 규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원장이 고시한 것은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31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수산특산물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여 품질인증심사 등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농수산물

가공업육성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은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물특산물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물특산물 또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수산물 및 국내 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은 이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본다.

제6조 (자금지원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가공자금 등의 지원신청, 전통식품가공자금 등의 지원, 전통외식산업의 지원 및 가공기술개발 등에 관한 자금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수산전통식품 명인지정 신청 및 지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시행규칙 제12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신청·추천·공고 및 명인지정서는 이 규칙 제28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명인지정의 신청·추천·공고 및 명인지정서로 본다.

제8조 (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물가공업의등록등에관한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신청·신고하거나 등록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신청·신고하거나 등록증·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패류 및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 시설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검사신청한 수산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한 수산물의 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수산물의 검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산물검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 검사기준은 이 규칙 제46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원장이 고시한 검사기준 및 검역기준으로 본다.

제12조 (검사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원증은 이 규칙 제55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원증 또는 검역관증으로 본다.

제13조 (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조사공무원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로 본다.

제15조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수산물명예감시원은 이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시행규칙·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수산물가공업등록등에관한규칙이나 그 규정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20호, 2002.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41조제2항제2호, 제60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제1호,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4조제1항중 "진흥원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중 "진흥원장"을 "과학원장"하며, 별지 제51호서식중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 칙 <제267호, 2004. 2. 2>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부 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00호, 2005. 7.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역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이식용수산물부터 적용한다.

③(품질인증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수산전통식품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수산물관련법령집

부 칙 <제340호, 2006. 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86호, 2007.10.18>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6호, 200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3호, 2008. 1.25>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08호, 2008. 2.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물부령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물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6항, 제25조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 제36조 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3항제1호·제2호·제6항, 제69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호, 제70조의3제1항·제3항, 제71조제4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3항, 제74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별지 제14호서식 뒷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0조제6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품질검사원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품질검사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뒷면, 별지 제20호서식 뒷면,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29>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26호, 2008.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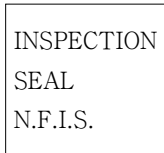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수산물관련법령집

⑧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N.F.P.Q.I.S"를 "N.F.I.S"로 하고, 제2호 봉합지 모형란 중 INSPECTION SEAL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4 중 "N.F.P.Q.I.S"를 각각 "N.F.I.S"로 하고, "MOMAF"를 각각 "MIFAFF"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 중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⑨ 부터 <16> 까지 생략

부 칙 <제75호, 2009. 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축산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부화실에 넣은 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제125호, 2010. 5.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수산동식물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구비서류란 제1호 중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34호, 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았거나 대행하는 단체를 포함한다)가 신청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검사 또는 재검사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41호, 2010. 8.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05.7.28>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 표시(제8조제1항제1호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 (1) 도형의 가로 길이(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10/100 \times W$ 로 한다.
-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 \times W$ 로 한다.
-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08.12.31>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시(제8조제1항제2호관련)

1. 표시도표



2. 작도방법

- 가. 크기 : 표시하고자 하는 포장·용기의 크기·형태·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한다.
- 나. 문자 :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의 양쪽끝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다. 색도
 - (1) 물레방아·산 및 4개의 곡선 : 어두운 회노랑색(DIC No.243)으로 한다.
 - (2) 12개의 원점 : 윗줄의 첫째·셋째·넷째점, 중간줄의 둘째·넷째점, 밑줄의 첫째·둘째·셋째점은 어두운 회노랑색(DIC No.243)으로, 윗줄의 둘째점, 중간줄의 첫째·셋째점, 밑줄의 넷째점은 주홍색(DIC No.159)으로 한다.
 - (3) 한글 및 영문표기 : 어두운 회연두색(DIC No.352)으로 한다.
 - (4) 위의 기본색이 제품·포장·용기 등과 조화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5.7.2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조건,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심사인증을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나. 인력

-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포함한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
- (2) 심사원은 다음 (가) 내지 (다)중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일 것
 -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 또는 식품가공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다) 수산물·수산가공품 또는 식품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단체에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시·도 단위로 10㎡ 이상의 검정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품질검사원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의 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품질인증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원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 비 명	최소비치 기준 (대·개)	조 건
○ 저울 -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이상	자체보유
○ 증류수제조기	”	”
○ 분쇄기	”	”

○ 건조기(Dry Oven)	”	”
○ 데시케이터(Desiccator)	”	”
○ 가열기(Hot Plat)	”	”
○ 교반기	”	”
○ 전개조	”	”
○ 회화로	”	”
○ 후드	”	”
○ 적외선 수분측정기	”	”
○ 이산화황 분석용 장비	”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가능
○ 그 밖에 품질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장비		

4. 품질인증업무규정

품질인증업무규정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방법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감독 요령

마. 그 밖에 품질검사원장이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4] <개정 2005.7.2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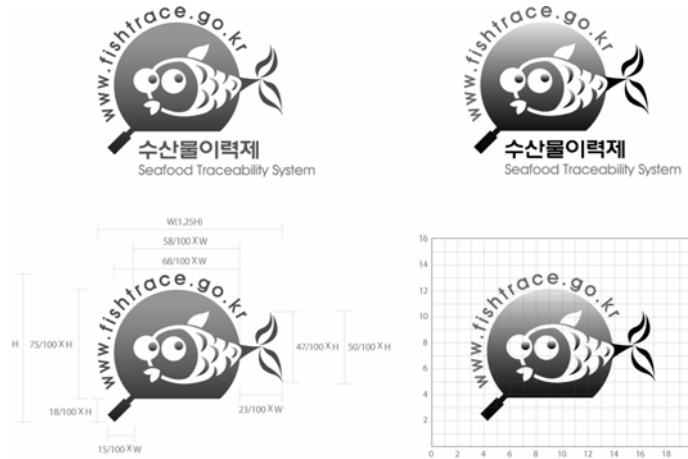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한 때	법 제8조 제4항 제5호	경 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대여한 때	법 제8조 제4항 제6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품질인증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결과를 조작할 때	법 제8조 제4항 제7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표 4의2] <신설 2008.8.4>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6조의6 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 1) 도형의 세로(위쪽 끝과 아래쪽 끝)를 H로 했을 때 가로(왼쪽 끝과 오른쪽 끝) W는 1.25H이다.
- 2) 안쪽 원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68/100 \times W$ 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85/100 \times H$ 원형으로 원의 아래쪽 끝부분의 $10/100 \times H$ 를 수평으로 자르면 $75/100 \times H$ 가 된다.
- 3) 원형 속의 물고기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58/100 \times W$ 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50/100 \times H$ 로 한다.
- 4) 원형 왼쪽 끝 도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15/100 \times W$ 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18/100 \times H$ 로 한다.
- 5) 홈페이지 주소는 원형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전체도형의 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 6) 꼬리 부분은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23/100 \times W$ 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47/100 \times H$ 로 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는 수산물이력제 국문과 Seafood Traceability System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국문 글자색상은 빨강색이며 영문 글자색상은 회색이고, 전체 도형의 색상은 파랑색이다.

마. 배색 비율

	파랑색 - PANTONE 306 U / C75 Y5 / R65 G183 B204
	PANTONE 2747 U / C100 M85 K15 / R14 G21 B115
	PANTONE 300 U / C100 M45 / R10 G88 B165
	빨강색 - PANTONE 485 U / M95 Y100 / R255 G17
	회 색 - PANTONE Gray 9 U / K50 / R127 G127 B127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시



나. 표시사항: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4의3] <신설 2008.8.4>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제16조의12제4항 관련)

1. 심사일반

- 가.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양식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양식장의 여건 및 생산물 등이 제16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수질·잔류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 가. 인증심사원은 양식어장 또는 가공시설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인증신청인이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한 수질성적서로 대신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시 생산물(양식 중인 생산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유해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생산물)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라.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마.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3. 인증심사의 일부 면제

- 가. 품질검사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품질검사원장은 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보고

-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결과 보고서를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인증심사원은 제3호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결

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판정

- 가. 품질검사원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질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 나.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별표 4의4] <신설 2008.8.4>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방법(제16조의13제2항 관련)

1. 표지 및 표시사항

	<p>친환경수산물표시품: (등록명칭) Eco-SF: (영문등록명칭) (친환경표시등록기관 명칭)친환경표시등록 제000호 생산자: 주 소: (전화)</p>
<p>이 상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p>	

(예 1) 등록명칭(넙치의 경우)

- 친환경수산물표시품: 넙치
- Eco-SF: Bastard

(예 2) 등록명칭(마른김·조미김)의 경우

- 친환경수산가공식품표시품: 마른김(조미김)
- Eco-SF: Dried *Gim*(Seasoned *Gim*)


2. 표시방법

- 가. 크기: 15kg들이(510×360×24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문자(Eco-SF는 Eco-friendly SeaFood의 약자임):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라. 색상: 도형 상단의 문양은 청색, 하단의 문양은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 마. 도안의 크기: 가로 8cm×세로 8cm(15kg들이 기준)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맞추어 크기를 같은 비율로 가감할 수 있다.
-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 1) 등록명칭(한글, 영문): 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cm(23point)×세로 1.0cm(28point)

[별표 5] <개정 2005.7.28>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21조관련)

1. 표시 및 표시사항

	지리적표시품 : (등록명칭) KPGI : (영문등록명칭) (지리적표시등록기관 명칭)지리적표시등록 제○○○호 생산자 : 주 소 : (전화)
이 상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	

2. 표시방법

- 가. 크기 : 15kg들이(510×360×24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한다.
-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문자(KPGI) :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라. 색상 : 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 마. 도안의 크기 : 가로 8cm×세로 8cm(15kg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 (1) 등록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57point)×세로 2.5cm(71poin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 (3) 그밖의 문자 : 가로 0.8cm(23point)×세로 1.0(28point)

[별표 6] <개정 2010.5.31>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제37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 (2)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4회
가.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
나.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하거나 가공하고자 한 때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다. 등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등록취소
라.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등록취소	-	-	-

[별표 7] <개정 2008.8.4>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제48조제1항관련)

1. 서류검사

가. “서류검사”라 함은 검사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2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나. 서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검사신청서류의 완비여부의 확인
- (2)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한다)
- (3) 생산·가공시설 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지의 여부 등
- (4) 생산·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확인여부(등록시설에 한한다)
- (5)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여부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여부의 확인(법 제2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한다)
- (6) 외국에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의 적정성여부

2. 관능검사

가. “관능검사”라 함은 오관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외국요구기준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품질·포장재·표시사항 또는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수산가공품
- (2)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3) 정부에서 구매·비축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 (4) 국내에서 소비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

나. 관능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품질검사원장이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외에는 다음의 표본추출방법에 의한다.

- (1) 무포장제품(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신청 로트(Lot)의 크기		관능검사 채점지점(마리)
	1톤미만	2
1톤이상	3톤미만	3

3톤이상	5톤미만	4
5톤이상	10톤미만	5
10톤이상	20톤미만	6
20톤이상		7

(2) 포장제품(단위중량이 일정한 블록형의 무포장제품을 포함한다)

신청개수		추출개수	채집개수
	4개이하	1	1
5개이상	50개이하	3	1
51개이상	100개이하	5	2
101개이상	200개이하	7	2
201개이상	300개이하	9	3
301개이상	400개이하	11	3
401개이상	500개이하	13	4
501개이상	700개이하	15	5
701개이상	1,000개이하	17	5
1,001개이상		20	6

3.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검사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2)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3) 외국요구기준에 의하여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가공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외국요구기준에서 정한 검사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고, 그 방법이 없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의한다.
비고

- 1. 법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수산가공품 또는 수출용으로서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건강)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인이 채취한 검사시료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신청인은 채취한 검사시료와 수출하는 수산물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품질검사원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수산가공품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별지 8] 삭제<2008.8.4>


[별지 9] 삭제<2008.9.4>

[별표 10] <개정 2008.12.31>






검사결과표시(제57조제1항관련)

1. 검사표시(수출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봉인	제1호인		바깥 원의 지름 : 40mm 바깥 원 안의 원 간격 : 8mm 글자의 굵기 : 0.5mm (바깥 원 : 1.5mm) SEAL : 1mm SEAL란의 간격 : 10mm	○포장 봉인용
합격증인 및 등급증인	제2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1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특등, Special Grade)
	제3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1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1등)
	제4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1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2등)
	제5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1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3등)
	제6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1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등외, Off Grade)
	제7호인		지름 바깥 원 : 30mm 안의 원 : 18mm 글자의 등급 : 0.3mm 굵기 바깥 원 : 1mm	○포장용(합격)

소인	제8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0\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 0.3mm (바깥 원 : 1mm) 안의 원안에 있는 X자의 각도 : 90°	○포장용(소인)
----	------	---	--	----------

2. 검사표시(정부비축용 및 국내소비용)


구분	호수	모형	규격	용도
등급증인	제1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1\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1.5\text{mm} \\ \text{안의 원} : 1.0\text{mm} \\ \text{등급} : 1.5\text{mm} \end{array} \right.$ 기타글자 : 0.6mm	○포장용(특등)
	제2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1\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1.5\text{mm} \\ \text{안의 원} : 1.0\text{mm} \\ \text{등급} : 1.5\text{mm} \end{array} \right.$ 기타글자 : 0.6mm	○포장용(1등)
	제3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1\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1.5\text{mm} \\ \text{안의 원} : 1.0\text{mm} \\ \text{등급} : 1.5\text{mm} \end{array} \right.$ 기타글자 : 0.6mm	○포장용(2등)
	제4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1\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1.5\text{mm} \\ \text{안의 원} : 1.0\text{mm} \\ \text{등급} : 1.5\text{mm} \end{array} \right.$ 기타글자 : 0.6mm	○포장용(3등)
	제5호인		지름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31\text{mm} \\ \text{안의 원} : 18\text{mm} \end{array} \right.$ 글자의 굵기 $\left\{ \begin{array}{l} \text{바깥 원} : 1.5\text{mm} \\ \text{안의 원} : 1.0\text{mm} \\ \text{등급} : 1.5\text{mm} \end{array} \right.$ 기타글자 : 0.6mm	○포장용(등외)

수산물관련법령집

합격증인	제6호인		<p>지름 {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p> <p>글자의 굵기 {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p> <p>기타글자 : 0.6mm</p>	○포장용(합격)
불합격증인	제7호인		<p>지름 {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p> <p>글자의 굵기 {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p> <p>기타글자 : 0.6mm</p>	○포장용(불합격)
검 인	제8호인		<p>지름 { 바깥 원 : 31mm 안의 원 : 18mm</p> <p>글자의 굵기 { 바깥 원 : 1.5mm 안의 원 : 1.0mm 등급 : 1.5mm</p> <p>{ 가운데 글자 : 1.5mm 기타글자 : 1.0mm</p>	○포장용(봉인 및 결속대지용)
봉합지		INSPECTION SEAL N.F.I.S.	<p>가로: 40mm 세로: 270mm</p>	○포장용(봉합용)

[별표 11]

검사필증인(제58조제5항관련)

모형	규격	용도	비고
	지름 { 바깥 원 : 40mm 안의 원 : 25mm	○수출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용	“○○”표시란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약호를 삽입
	글자의 굵기 { 안의 원 : 1mm 바깥 원 : 1mm		

[별표 12] <개정 2005.7.28>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시료 채취방법 및 채취량(제64조제1항관련)

1. 검역시료채취는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역관으로 임명된 자가 검역대상수산물을 수용·보관한 장소(양식장 등 포함)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역시료채취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개체와 임상적으로 정상적인 개체를 채취하여야 한다.
3. 검역시료의 채취량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검역대상 수산물의 시료채취수량이 신청량과 동일한 경우, 값이 비싼 경우, 개체의 크기, 기타 생리·생태적 특성이 있는 경우 등은 그 채취량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청량(마리, 럩)	채취수량		
	2% 발병이 의심	5% 발병이 의심	10% 발병이 의심
50 이하	50	35	20
51~100	75	45	23
101~200	110	50	25
201~500	130	55	26
501~1,000	140	55	27
1,001~1,500	140	55	27
1,501~2,000	145	60	27
2,001~40,000	145	60	27
40,001~100,000	145	60	27
100,000 이상	150	60	30

4. 검역시료의 채취는 검역신청인 또는 당해 검역대상 수산물의 관리자가 참여하면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05.7.28>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의 종류 및 방법(제65조관련)

1. 임상검사

임상검사라 함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한 이식용수산물질병진단지침에 의한 병·충해 감염여부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역으로서 다음의 이식용수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식용수산물
- (2) 이식용수입수산물중 동일한 국가에서 연간 10회 이상 수입한 이식용수산물로서 정밀검사 결과 2년 이상 병·충해가 검출되지 아니하여 품질검사원장이 국가와 품종을 고시한 이식용수산물
- (3)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가과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이식용수산물

2.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라 함은 생화학적·병리학적·미생물학적 및 혈청학적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역으로서 임상검사를 포함하여, 다음의 이식용수산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이 정하여진 이식용수산물
- (2) 임상검사결과 검역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식용수산물
- (3)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로부터 병·충해에 대한 정밀검사결과를 요구하는 이식용수출수산물
- (4)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수역사무국·국제식물보호협약사무국 또는 수출국 등에서 병·충해가 발생되었다고 통보되거나 공표된 이식용수입수산물

나. 정밀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수생동물질병진단지침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사무국의 식물질병진단지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한 이식용수산물질병진단지침에 의한다.

3.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 (1)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제1호(2)의 이식용수입수산물에 대하여 품질검사원장이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말한다.
- (2) (1)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이 발생하는 경우 품질검사원장은 해당 국가와 품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이미 고시된 당해 국가와 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4. 국외 검역기관 검역증명서 인정절차 등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에 의하여 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국외 검역기관이 다음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해당 신청국가(기관)에 검역관을 파견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검역책임자와 검역담당자를 합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수산물질병관련 자격증 또는 검역관증을 소지하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나. 시설

검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실험기자재


장 비 명	수 량(대)	비 고
유전자증폭기(Thermocyclers) 및 확인장치	1	
유전자분리장치(DNA/RNA extractor)	1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	
조직절편기(Microtome) 등	1	향온수조, 용기포함
광학현미경(Light microscope)	1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	1	
도립현미경(Inverted microscope)	1	
효소면역항체판독장치(ELISA reader)	1	
원심분리기(Centrifuge)	3	초고속/냉장/마이크로튜브용
배양기(Incubator)	3	일반 1/저온 2
고압증기멸균기(Autoclave)	1	
가열교반기(Hot stirrer)	1	
건조기(Dry oven)	1	
가열판(Hot plate)	1	
액체질소탱크(Liquid nitrogen tank)	1	
초저온냉동고(Deep freezer)	1	
냉동고(Freezer)	1	
냉장고(Refrigerator)	1	
무균대(Clean bench)	1	
전기식지시저울(Electronic balance)	1	
흡후드(Fume hood)	1	
그 밖의 실험실 기본장비		

라. 실험실 물품

시약 및 초자(硝子)기구 등은 검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4]

검역필증인(제67조제4항관련)

모 형	규 격	용 도	비 고
	지름 { 바깥 원 : 40mm 안의 원 : 25mm	○이식용 수출 수산물용	“○○”표시란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약호를 삽입
	글자의 굵기 { 안의 원 : 1mm 바깥 원 : 1mm		

[별표 15]

수산물의 검정항목(제70조제3항관련)

구 분		검정항목
분석	일반성분등	수분, 회분, 지방, 조섬유,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토사, 휘발성염기질소,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제리강도(한천), 수소이온농도(pH),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아미노질소, 전질소, 비타민 A, 이산화황(SO ₂), 붕산, 일산화탄소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중금속	수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
	방사능	방사능
	세균	대장균군, 생균수, 분변계대장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
	독소	복어독소, 패류독소
	바이러스	노위크바이러스
	이식용수산물 어류질병	세균성질병, 기생충성질병, 바이러스성질병

[별표 16] <개정 2008.8.4>

수수료(제71조제1항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 -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1	30,000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1	5,000

3. 친환경수산물인증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1	30,000

4. 지리적표시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5. 수산물가공업등록 수수료

구분	건수	수수료(원)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등록신청	1	매 1건 3,200

6. 이식용수산물검역 수수료

구분	건수	수수료(원)
법 제36조제1항·제3항,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파견검역 또는 재검역	1	20,000

7.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구분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1) 일반성분	수분, 회분	1항목	8,000
	지방, 조섬유	1항목	26,000
	단백질, 염분, 산가, 전분	1항목	6,000
	토사, 휘발성염기질소	1항목	8,600
	엑스분, 열탕불용해잔사물	1항목	8,600
	제리강도(한천), 수소이온농도(pH)	1항목	8,600
	당도, 히스타민, 트리메틸아민	1항목	8,600
	아미노질소, 전질소	1항목	26,000
	비타민A	1항목	74,900
	이산화황(SO ₂)	1항목	43,000

수산물관련법령집

	붕산	1항목	20,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2) 식품첨가물	인공감미료	1점	22,000
(3) 중금속	수은	1점	33,000
	카드뮴, 구리, 납	1점	76,700
	아연	1점	46,000
(4) 방사능	방사능	1점	50,000
(5) 세균	생균수, 대장균군, 분변계대장균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1항목	15,000
(6)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소린산(정성)	1항목	20,000
	" (정량)		40,000
(7) 독성	복어독소, 패류독소	1항목	53,100
(8) 바이러스	노위크바이러스	1항목	100,000
(9) 이식용수산물 어류질병	세균성 질병	1항목	15,000
	기생충성 질병	1항목	10,000
	바이러스성 질병	1항목	100,000
(10) 기타(교부)	검정증명서 사본	1부	5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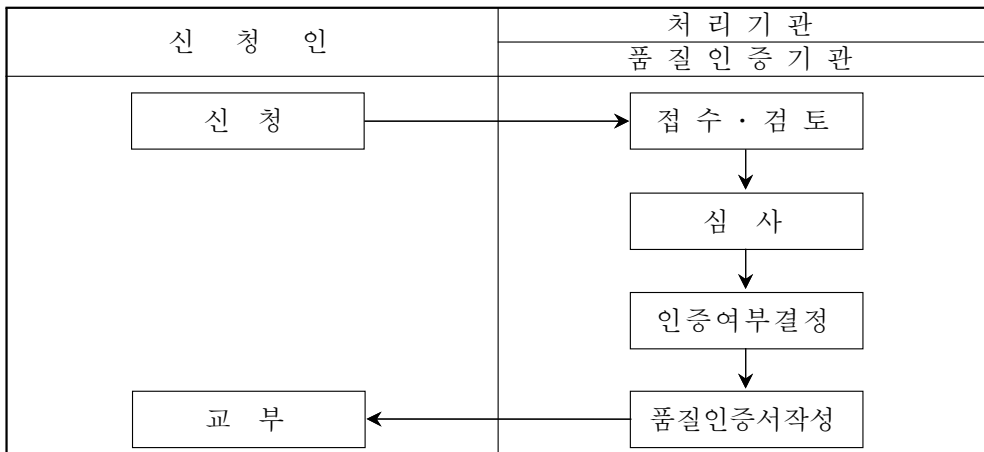
수산물·수산물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양식기간)	출하기간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톤
	포장(공장·양식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input type="checkbox"/> 수산물특산물)의 품질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2. 삭제 <2008.8.4>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연장신청서 수수료면제)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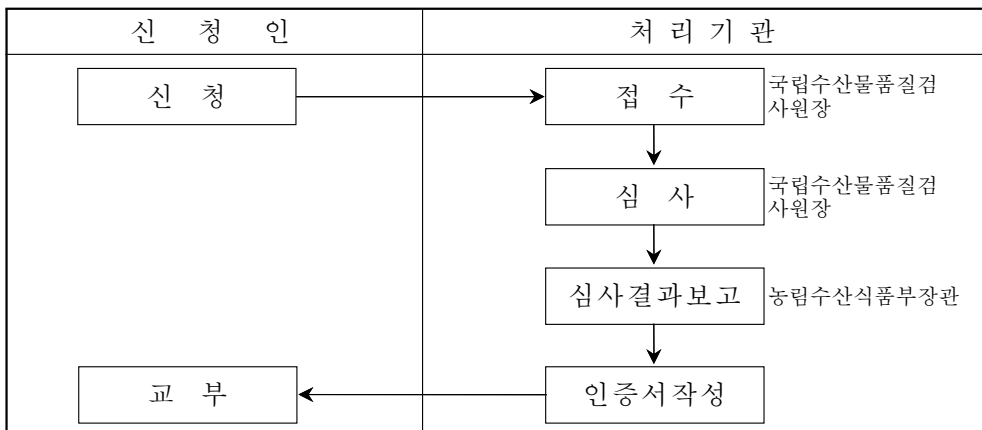
수산물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35 일	
신청인	공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신청 품 목			종 류	제품단량		
제품생산개시연도			생산계획량		톤	
원 료 사 용						
제 품 특 성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 2 항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최근 6월간 제품의 생산·판매실적 2. 삭제 <2008.8.4>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통식품품질인증심사종합평가서

1. 업체현황

신청자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능 보유 내용	시설장비	대지	건물		(보관창고)	운반차량	
	주요생산 품목						
신청품목	품목	생산 개시일	연간 생산능력	연간 생산실적	연간 판매실적	가동률	

2. 공장심사결과

심사일차	심사항목수	평가결과			판정
		수	우	미	

3. 품질시험결과

구분	내용
시험기간	
시험기관	
시험항목	
시험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5.7.28>

국산수산물사용확인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생산제품명 :

사용원료 : 주원료

부원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수산전통식품을 생산함에 있어 국산수산물만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5.7.28>

수산전통식품공장심사평가서

○업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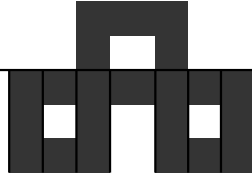
항 목	평 가	평 가 의 견
1. 원료확보		
2. 생산시설 및 자재		
3. 작업장환경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4. 생산자 자질 및 품질관리 상태		
5. 자체품질 관리수준		
6. 품질관리 열의도		
7.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8. 대외신용도		
합 계		수 : 개, 우 : 개, 미 : 개

년 월 일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5.7.28>



수산물(수산특산물)품질인증서

1. 인증번호 :
2. 생산자 :
3. 주민등록번호 :
4. 주소 :
5. 품목(품종) :
6. 인증항목 :
7. 유효기간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수산특산물)의 품질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3>

수산물전통식품품질인증서

1. 인증번호 :
2. 제조업체명 :
3. 대표자명 :
4. 공장소재지 :
5. 품목명 및 인증내용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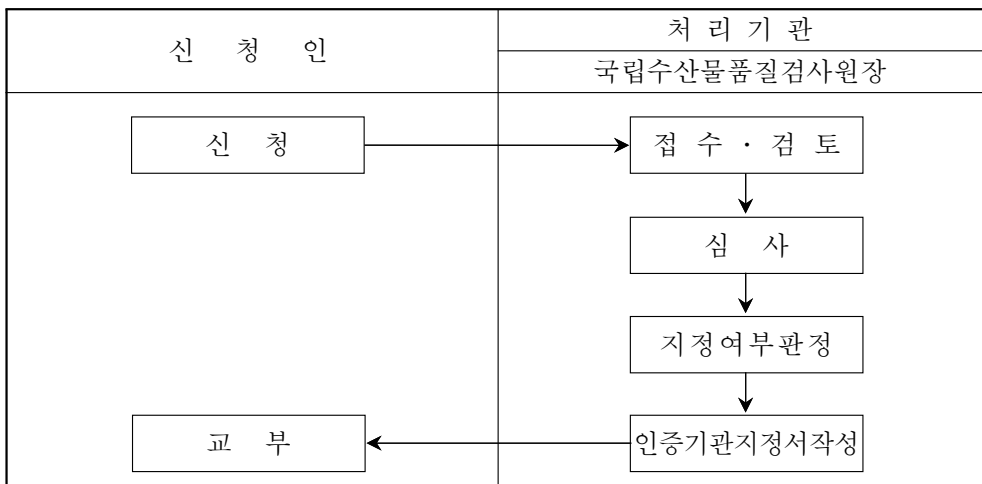
(앞 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8.4>

제 호	
품질인증기관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
3. 소재지 :	
4. 지정일자 :	
5. 인증업무범위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에 따라 [<input type="checkbox"/> 수산물, <input type="checkbox"/>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input type="text"/>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3서식] <신설 2008.8.4>



제 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1. 성 명(단체 또는 조직명): (구성원수: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 목 명:
5. 유효기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의8서식] <신설 2008.8.4>



제 호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

1. 생 산 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목(품종):
5. 유효기간:
6. 양식장(가공공장) 소재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수산가공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9호의10서식] <신설 2008.8.4>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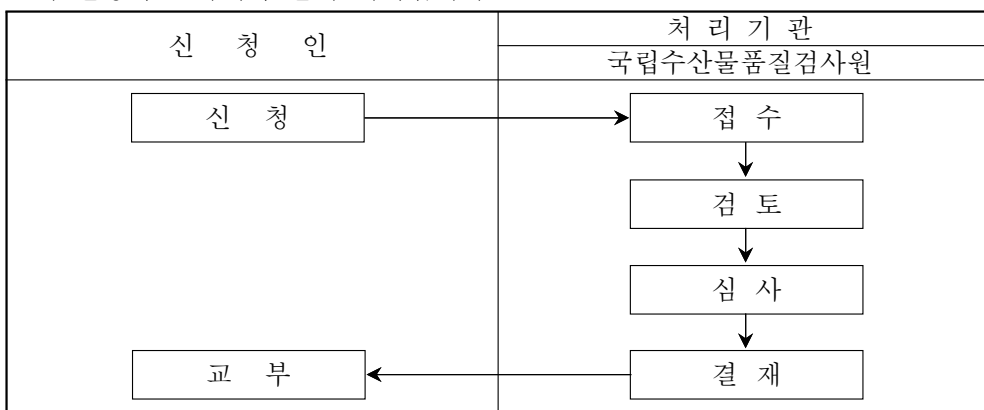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양식기간)	출하기간	톤
	양식면적 및 공장면적(m ²)	생산계획량		
	양식장 소재지			
인증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의6서식 및 제9호의7서식 중 해당 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수입인지 붙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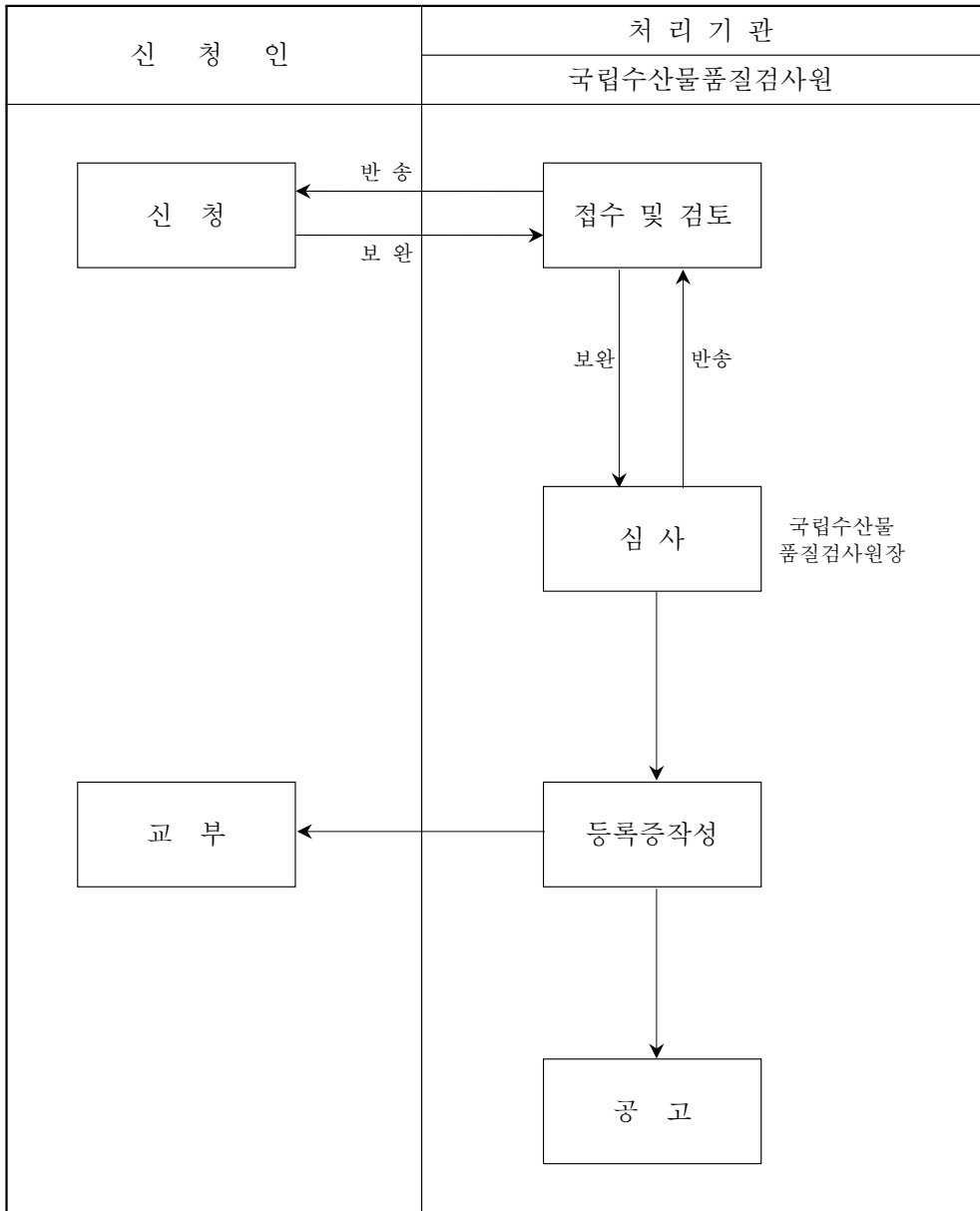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5.7.28>



K P G I

K P G I
지리적표시등록증

1. 등록번호 :
2. 등록품목 :
3. 등록명칭 :
4. 대상지역 :
5. 등 록 자 :
6. 주 소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5.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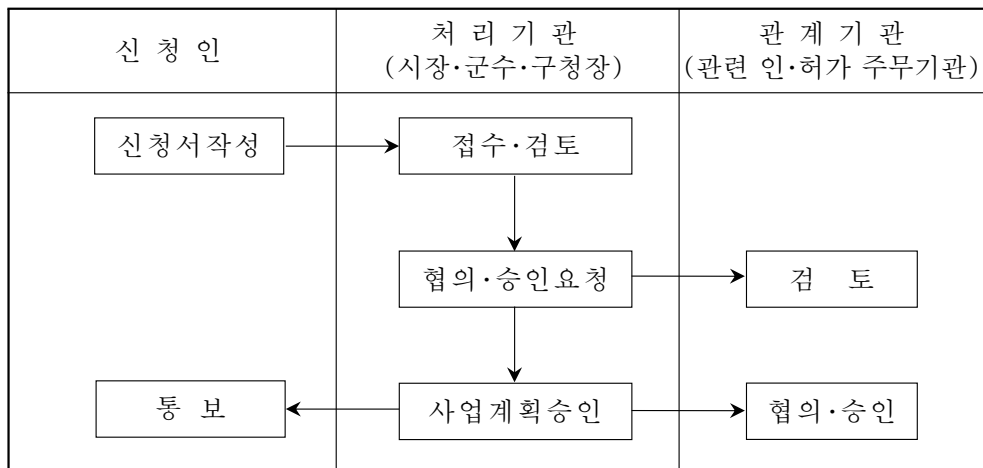
(앞 쪽)

수산가공품생산공장설치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자	사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화	
사업계획	사업체명		가공품목			주원료		
	공장예정지							
	시설규모	부지	㎡		건물	㎡	설비	㎡
	재원조달 (백만원)	계	정부보조	정부융자	금융기관차입	자부담		
	사업형태			구성원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가공품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없음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3>

제 호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서	
성명 :	사진 (4×5cm)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보유기능 :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을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p>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8.4>

(앞 쪽)

※ ⑨, ⑩의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전화번호:)			
④가공업의 종류			⑤가공공장의명칭			
⑥가공공장의위치(주소)						
⑦가공공장의부지면적(m ²)			⑧건물의연면적의합계(m ²)			
⑨가공하려는제품의종류			⑩생산능력			
⑪용수의성질및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	⑫가공업의종류		⑬제품의종류			
	⑭어업의종류		⑮선명			
	⑯주요기기및시설					
	처리능력	동결	T/D	온도	℃	
냉장		M/T	온도	℃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없음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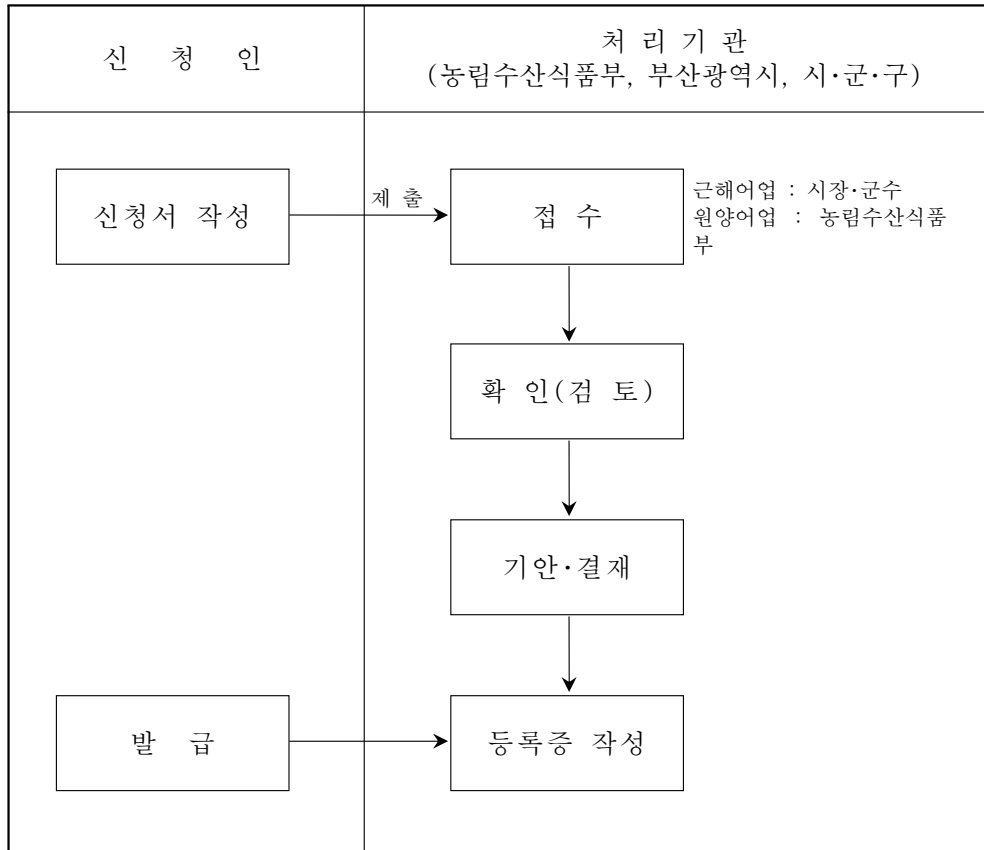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 “⑨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하고, “⑩생산능력”란은 전체 생산능력과 해당 업종별로 1일 생산능력 및 수용능력을 적어야 합니다.

업 종 별	제품명 표시방법
어유(간유)가공업	• 유·간유
냉동·냉장업	• 수산물원형동결() • 수산물처리동결()
선상수산물가공업 • 어유(간유)가공업 • 냉동·냉장업	• 어유(간유)가공업 • 냉동·냉장업 • 수산물처리동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1.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종류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또는 능력		

2. 행정처분

처 분 일 자	처 분 사 유	확 인인①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5.7.28>

제 호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			
신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수산물가공업의종류			가공공장의명칭
가공공장의 위치			
생산제품의 종류			
생 산 능 력			
행 정 처 분			
기 타 사 항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가공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행정관청에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1호서식]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대장					
①등록(신고)번호				②등록(신고)일자	
③가공공장의 명칭(선상수산물의 경우에는 선명)					
④가공공장의 위치(선상수산물의 경우에는 양륙항)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신청인의 주소					
⑧가공업의 종류			⑨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종류		
⑩제품생산능력					M/T
⑪처리능력	동결	1일생산능력			T/D
	냉장	저장능력			M/T
⑫시설연도					
⑬가공공장의 부지면적 및 건물면적과 규모			⑭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능력		
건물	면적(m ²)	규모	기계또는기구의명칭	대수	최대능력
⑮제한또는조건					
⑯변경허가사항					
⑰신고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8.3.3>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주사, 사무관, 서기관 ○○○ 담당자 ○○○					

문서번호 :

수신 : 농림수산물부 장관 발신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

참조 :

제목 : 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 및 처분상황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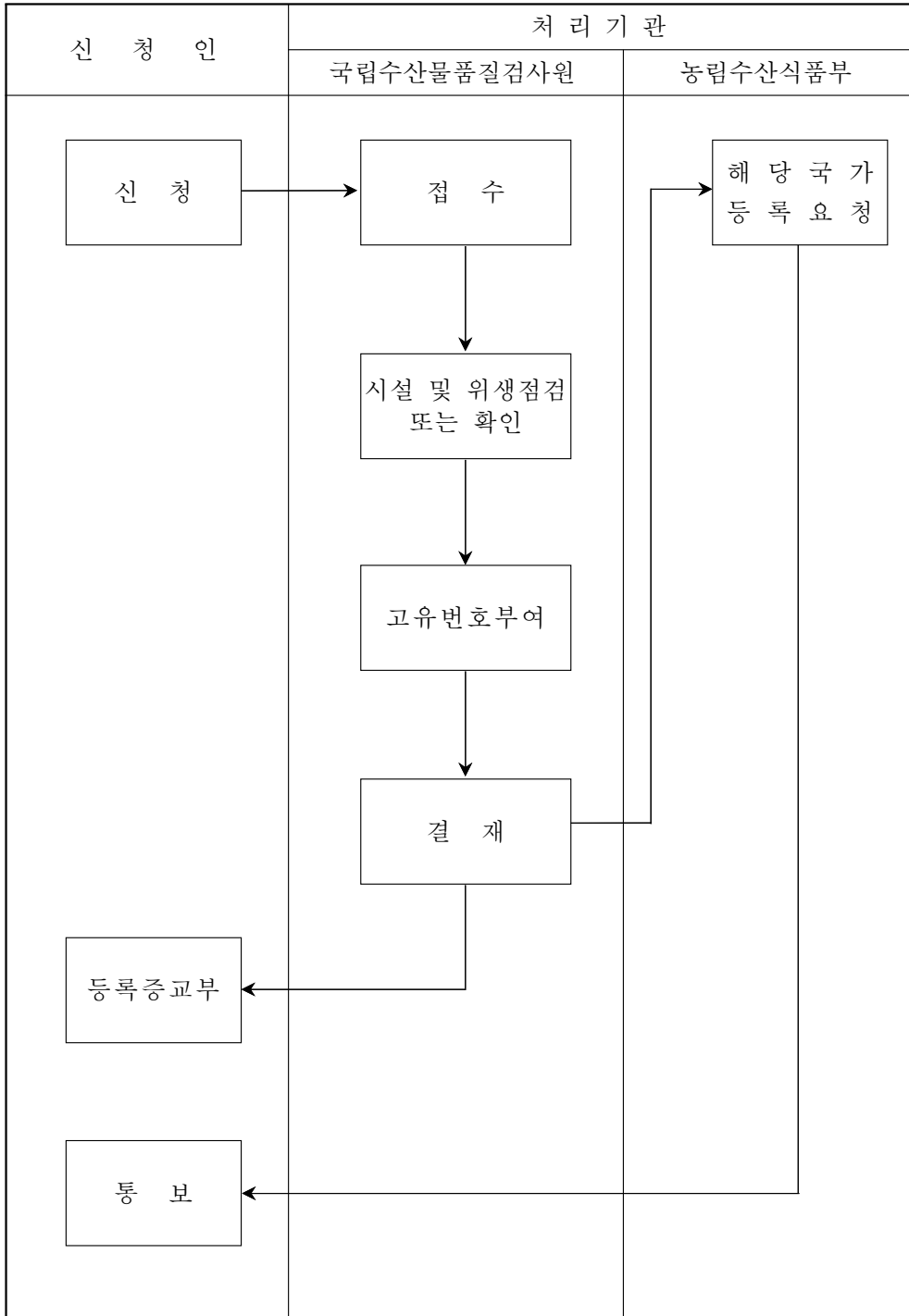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상황)

구분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전반기말 유효건수	기간중처분건수 (반기간)	기간중소멸건수 (반기간)	기 간 말 유효건수
등록					
신고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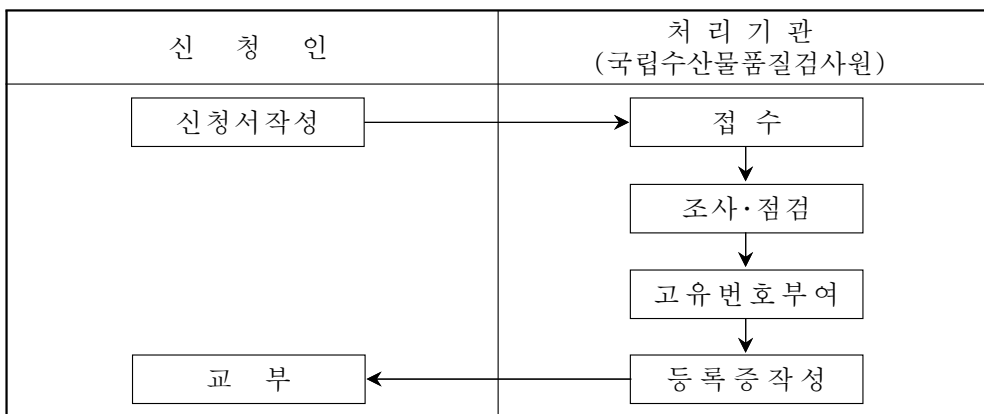
(앞 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업체명 (양식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된사무소)	(전화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생산·가공시설의 명칭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처리장 또는 양식장 면적(m ²)		건물의 종류 및 연면적 의 합계(m ²)		
생산·가공품의 종류				
1일 또는 연간 생산능력		용수의 종류		
어업 면허·허가 등 번호		주요기기 및 시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서 생산·가공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 산·가공 공정도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계획서 4. 어업의 면허·허가 및 신고, 수산물가공업 등록신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의 허가 또는 신고,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 등의 개설허가 등에 관한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8.4>

(앞 쪽)

제 호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등록증

- 업체명(선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1. 생산·가공시설의 종류 및 명칭 :
2. 생산·가공시설의 소재지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생산·가공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수산관련법령집

(뒤 쪽)

연 월 일	변 경 구 분	변 경 내 용	확 인 자	비 고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8.4>

(앞 쪽)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종류 및 명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의 소재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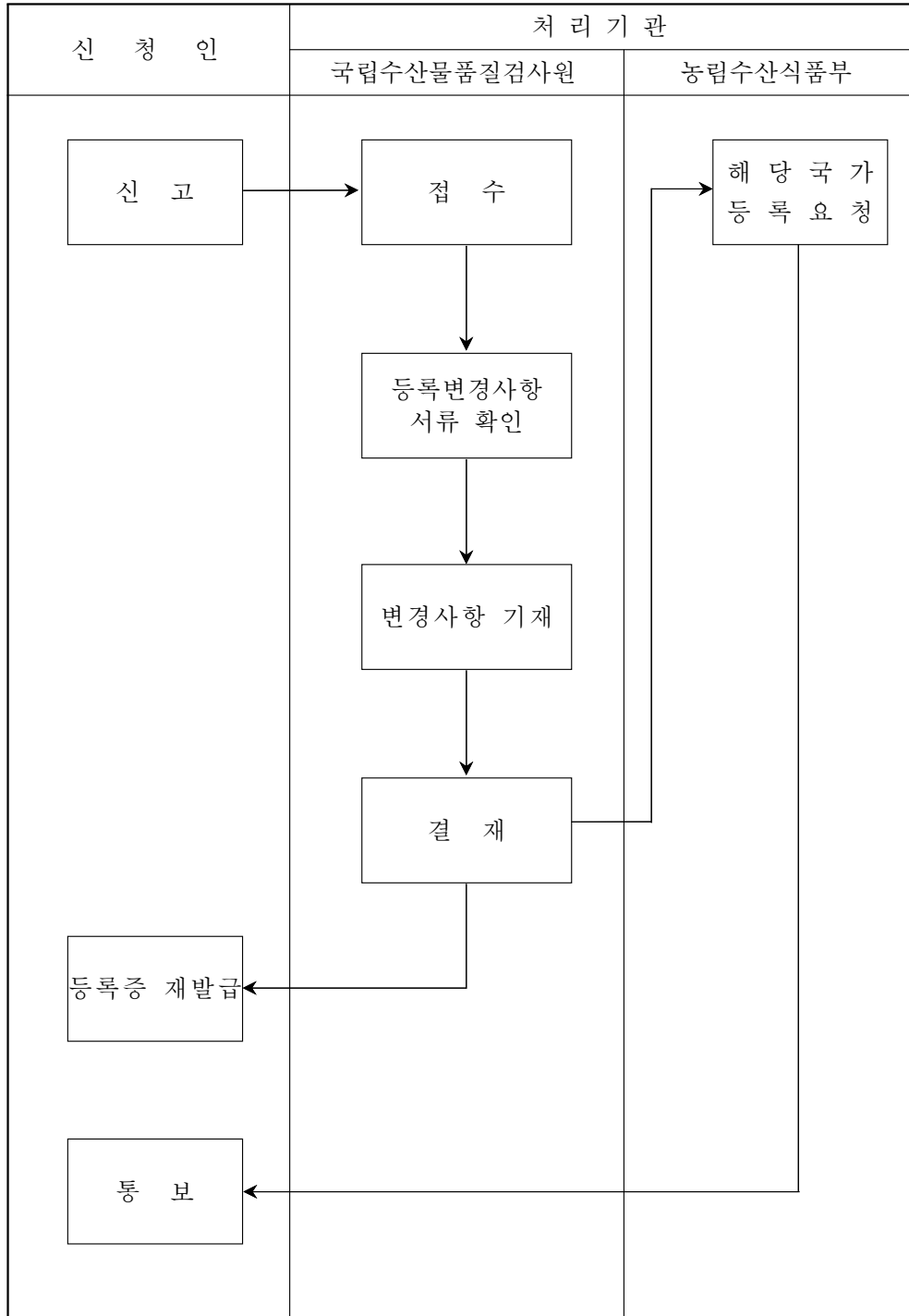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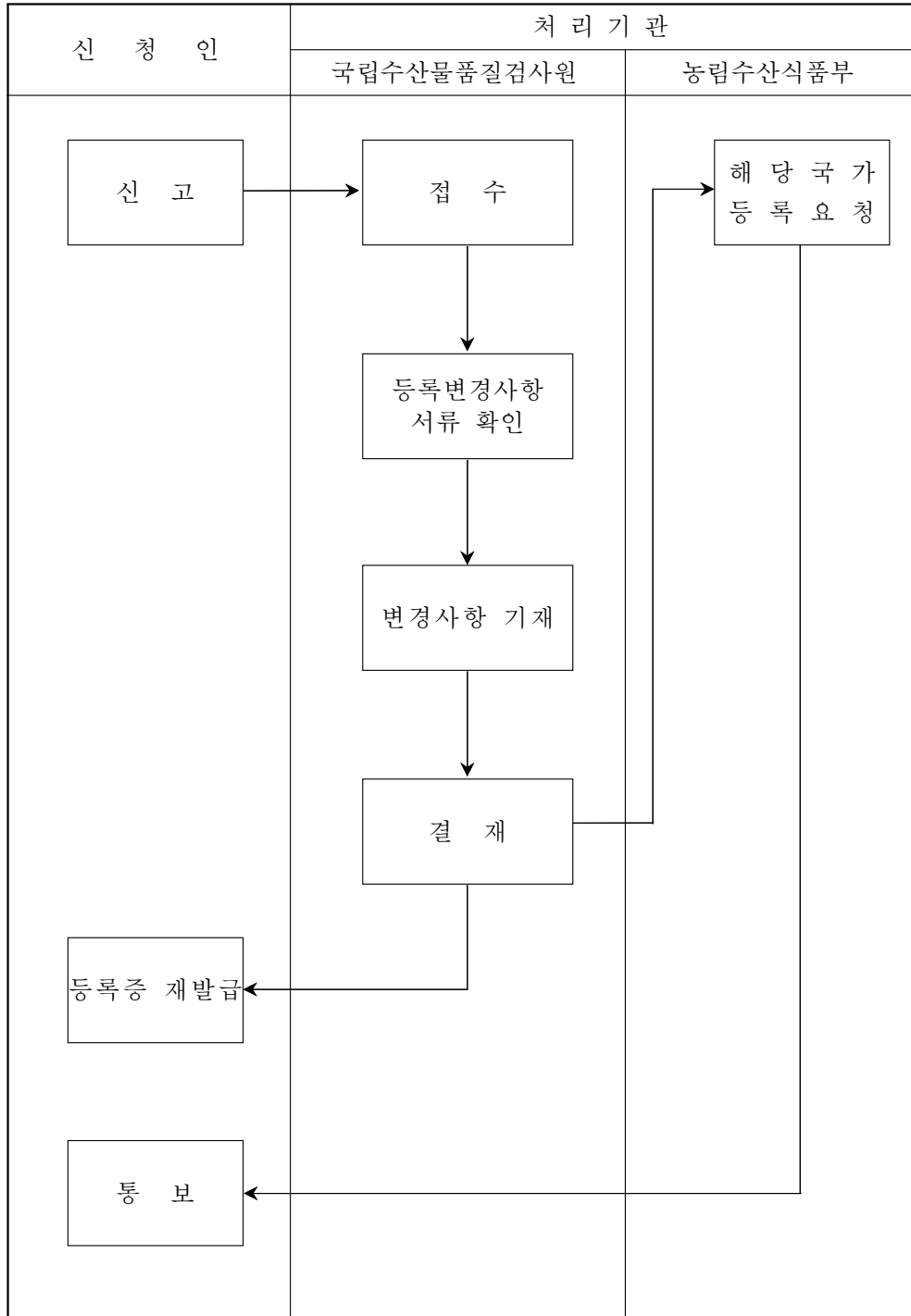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5.7.28>

검사(검역)시료채취증	
검사(검역)신청번호 :	
채취 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채 취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채 취 품 명	
채 취 수 량	
채 취 사 유	
입 회 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p>「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검역)시료를 채취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00px;">채취자 소 속 :</p> <p style="margin-left: 20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105mm×149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9호서식]

검사신청서접수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 체 명	품 명	수량		담당자	비고
		대 표 자		개수	중량		
		주 소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검사집행상황부																	
신청 번호	신청인	신청 개수· 중량	성 적 별 수 량								현품 부재	검사일	검사원	증명서 번호	용도	수출· 수입지	비고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불합격	기타							
신청 일자	품명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개수· 중량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31호서식]

검사증서발급대장										
발행 번호	발행일자	품 명	검사 결과	개수· 중량	검사일자	주 소	성 명	증명서 종류	발급 방법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검 사 관 증	
사진 (5cm×4cm)	
발행번호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55mm×80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사관고유번호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8.8.4>

(앞 쪽)

검사관증(감사기관명)
사진 (5cm×4cm)
발행번호
성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55mm×80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검사기관명칭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관고유번호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OF FISHERIES PRODUCTS 발행번호 Serial No. _____				
신청인 Applicant	성명 Name			
	주소 Address			
검사항목 Item of Inspection		생산지 Area of Products		
		목적지 Destination		
품명 Commodity	등급 Grade	수량 Quantity	1개의 내용량 Net Wt. Per Each	비고 Remarks
검사일 Date of Inspection		포장의 종류 Packing		
위의 수산물은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되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isheries products specified above have produced under sanitary conditions and passed the test in accordance with the Inspection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발행일 Date : 년 월 일 Stamp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SIGNATURE _____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분석증명서 ANALYSIS CERTIFICATE	
발행번호	발행일
Serial No. : _____	Date : _____
신청인	
Applicant : _____	
주소	
Address : _____	
아래의 수산물은 위생적으로 생산·가공되어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following fisheries products have been produced under sanitary conditions and passed the test in accordance with the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품명	
Commodity : _____	
포장	
Packing : _____	
등급	
Grade :	
수량	
Quantity :	
생산지	
Produced District :	
증명내용	
Contents of Certification :	
Stamp :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 농림수산물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Serial No. : _____ Date : _____	
Export Company(수출회사)	
Name and Representative (회사명 및 대표자)	
Address(수출회사 주소)	
Import Company(수입회사)	
Name and Representative (회사명 및 대표자)	
Address(수입회사 주소)	
Contents of Certification	
Commodity(품명)	
Quantity(수량)	
Lot Number of Export (수출로트번호)	
Culture Area(Registered Farm Number) 생산해역(양식장등록번호)	
Processor(Registered Number) 가공공장(등록번호)	
Date of Production (채취연월일)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statement is correct. Stamp : _____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div>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 농림수산물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발행번호 Serial No. : _____	발행일 Date : _____
신청인 Applicant : _____	
주소 Address : _____	
아래의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HACCP 및 위생프로그램을 이행하여 생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verify that the HACCP and sanitary programs is implemented by the company in the production of the following fisheries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품 명 Commodity : _____	
수 량 Quantity : _____	
포 장 Packing : _____	
생 산 지 Produced District : _____	
생산기간 Produced Term(Date) : _____	
수입자 주소 Importer : Address : _____	
성명(회사) Name(Company) : _____	
Stamp :	SIGNATURE _____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검역관증
사진 (5cm×4cm)
발행번호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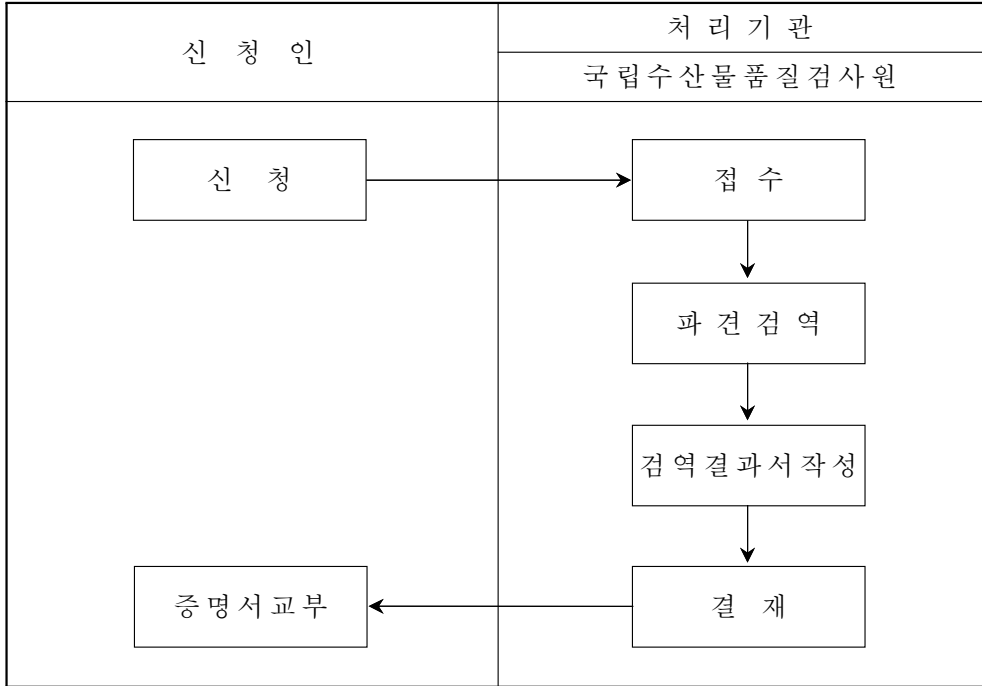
55mm×80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사관고유번호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8.3.3>

<p>대한민국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수출국가파견검역증명서</p>				
발행번호 :				
신청인	성 명			
	주 소			
품 중	품 명		학 명	
	규 격		수 량	
	원산지		시료채취장소	
검역결과	임상검사			
	정밀검사			
비 고				
<p>「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가파견검역 증명서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검역관 성명 : 서명 :</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5.7.28>

이식용수입수산물검역증명서				
발행번호 :				
신청인	성 명			
	주 소			
품 종	품 명		학 명	
	규 격		수 량	
	원산지		채취장소	
검역결과	임상검사			
	정밀검사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 농림수산물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수생동식물검역증명서 HEALTH CERTIFICATE FOR EXPORT AQUATIC ANIMALS AND PLANTS QUARANTINE Serial No(발행번호) :				
Applicant (신청인)	Name(성명)			
	Address(주소)			
Species (품종)	Common name (일반명)		Scientific name (학명)	
	Size(크기)		Quantity (수량)	
	Origin(원산지)		Location(채취장소)	
Result (검역결과)	Specified Diseases(대상질병)	Findings(판정)		
Remarks(비고)				
이 수생동식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검역되었으며 위 질병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animals or plants described herein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the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above disease. Stamp : Date of issue(발행일)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0.8.4>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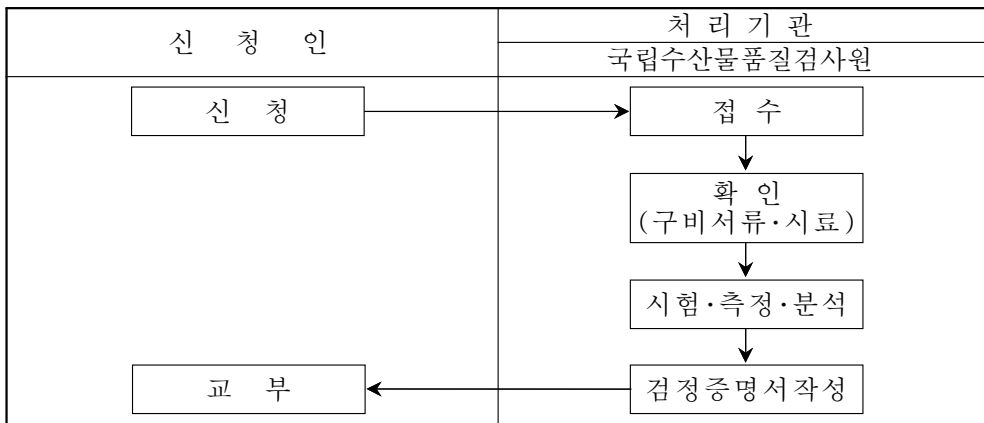
수산물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검정품목		
시료점수 및 증량		
산지 및 생산자		
채취연월일		
검정항목		
검정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품목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 첨부 : 검정용 시료		수수료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검정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0.8.4>

제 호 Serial No. : 수산물검정증명서 Analysis Certificate				
신청인 Applicant	성 명 Name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Name of Firm)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주 소 Address	(전화 :) (Tel :)		
검 정 품 목 Commodity				
시료접수 및 중량 Quantity				
검 정 항 목 Item of Analysis				
검 정 결 과 Result of Analysis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수산물의 시료에 대한 검정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result are performed on the sample according to the Fisheries Products Quality Control Act.</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Date :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input type="checkbox"/> 인 Signature : _____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뒤 쪽)

<p>제 호</p> <p style="text-align: center;">수산물조사공무원증</p> <p>소 속 :</p> <p>직 급 :</p> <p>성 명 :</p> <p>주민등록번호 :</p> <p>위 사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수산물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p>	<p>사진 (2.5×3cm)</p>
--	-------------------------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
다.

2. 이 사람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생산자·생산자단체·판매
업자·보관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업장·창고·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
십시오.

주) 색상 : 연노랑색 90mm×55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정 2007·12·21 법률 제8789호
타법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수산동물"이란 어류·패류·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동물질병"이란 수산동물의 체내에 병원체가 침입한 상태를 말한다.
3.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전염성채장괴사증,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5. "역학조사"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6. "수산동물양식시설"이란 수산동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에 설치된 수조 (수조,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배관·저수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을

말한다.

7. "수산동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동물의 매매·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동물이 취합·교류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동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로서 수출검역시행장과 수입검역시행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9. "수산동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동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2. 수산동물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7.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동물전염병관리대책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 ①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방역협의회에는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기술개발계획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동물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한 의약품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소유자·관리자·운영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그 종사자는 수산동물의 양식장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장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제7조 (수산동물방역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② 수산동물방역관은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 또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경력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

시설 등 수산동물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 수산동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수산동물질병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수산동물방역관이 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시료채취를 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수산동물방역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수산동물방역사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4항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7조제5항은 수산동물방역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5항 중 "수산동물방역관"을 "수산동물방역사"로 본다.

④ 수산동물방역사의 자격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와 그 수산동물을 진단하였거나 그 수산동물의 사체를 검안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및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연구조사활동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수산동물양식자가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또는 제10조제4항의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에 그 수산동물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경우 및 해당 사료 또는 약품을 판매한 자가 그 의뢰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

② 차량·선박·철도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운송하는 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수산동물이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는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동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동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동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3.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린 수산동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역학조사)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2조 (병원체분리의 신고 및 보존·관리) ①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 그 신고절차 및 병원체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동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경우로서 수산동물양식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조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게 하는 때에는 그 대상지역, 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수산동물거래기록의 서식 및 보존기간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 및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수산동물을 이동함에 있어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등증명서를 갖추고 이동하는 수산동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등증명서의 휴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5조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수산동물 또는 그 운송수단에 대하여 교통의 차단, 해당 수산동물에 대한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의 명령을 위반한 수산동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양식시설임을 알리는 게

시물 등의 부착

2. 그 수산동물양식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수산동물양식자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의 명령,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사항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살처분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그 수산동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동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수산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산동물양식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수산동물양식자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3.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체의 처분제한 등) 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산동물의 사체를 이동·매물 또는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수산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을 살처분한 수산동물양식자와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을 살처분한 수산동물방역관은 그 수산동물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물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산동물에 대한 병

성감정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을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수산동물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제18조 (오염물건의 소각 등) ① 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산동물양식자
2. 수산동물집합시설의 관리자
3. 수산동물운송업자
4. 활어수조 등 수산동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③ 수산동물방역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제19조 (발굴의 금지) ①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조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종묘(種苗)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동물(이하 "방류수산동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류수산동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동물이 수산

동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류수산동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 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동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3 장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제22조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①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수산물검역관을 둔다.

② 수산물검역관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물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를 수산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경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수산물검역관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자동차·열차·보세구역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수산물검역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포장 및 그 밖에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⑥ 수산물검역관이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수거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지정검역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살아있는 수산동물로서 이식용(移殖用),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인 것
2. 제1호의 수산동물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사료·기구·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24조 (수입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동물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동물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동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①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은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2.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

며,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수산동물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④ 수산동물검역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역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없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26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7조 (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지체 없이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수산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파견검역)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입 수산동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제2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동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 ②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의 세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수입장소의 제한) ① 지정검역물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수입장소의 지정요청 및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 (수입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수산물검역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 (수출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출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 ④ 수산동물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검역시행장) ①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각각 지정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이 아닌 곳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동물양식시설 또는 수산동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때
- 3.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이 가능한 장소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장소를 검역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검역을 위한 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한 때
- 2.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⑥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에서의 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인정받은 때
2.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33조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 ①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관관리인 또는 운송차량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징수금액은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7항에 따른 보관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

⑤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해당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⑥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그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소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수산동물검역관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할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화주로 하여금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화주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이 스스로 폐기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 대상물건을 처리하게 하거나 이를 폐기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불합격된 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5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35조 (재검역) ①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동물검역관 외의 수산동물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할 때
 2.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때
-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36조 (검역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 또는 제35조에 따른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 (수입위험분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과적인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 및 수중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수산동물의 수입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수입위험분석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4 장 보 칙

제38조 (방역교육)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이하 "방역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수산동물관련단체 또는 수산동물양식자 등의 의뢰를 받아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기준 및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수산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해당 수산동

물용의약품 또는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1조 (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은 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목적이 되는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는 명령이나 처분이 있는 사실과 그 내용을 새로운 권리의 취득 및 새로운 권리의 설정에 따라 관리자가 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2조 (보상금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동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의 대상이 된 수산동물(출하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
4.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수산동물(이동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5.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6.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수산동물양식자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제1항·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비용의 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수준이 우수한 어가(漁家) 또는 어촌계에 대하여 소득 등 수산동물질병의 관

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투약할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살처분할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라 오염방지 조치를 할 경우
5. 제18조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독·소각 또는 매몰할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보고)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동물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와 수산동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개정 2008.2.29>)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 외의 전염성 수산동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됨으로써 수산동물의 생산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또는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 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34조는 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하는 조치에 관하여 준용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중 "수산물검역관"은 "수산물검역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6조 (수산물방역기관의 장의 방역조치요구) 수산물방역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병성감정 또는 역학조사의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3조제1항·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 (수산물방역관 등의 증표) 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물방역관·수산물검역관 및 수산물방역사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8조 (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신고하고, 수산물전염병에 관한 예찰(豫察)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물양식자·사료판매업자·수산물용의약품판매업자·수산물운송업자 등을 명예수산물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명예감시원의 위촉절차·임무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9조 (사법경찰관) 수산물방역관 및 수산물검역관은 이 법에 따른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50조 (수수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의뢰자 및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험·분석의 의뢰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 (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4항의 시료채취 및 제38조제1항의 방역교육의 업무를 수산동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동물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관리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5 장 벌 칙

제5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5. 제2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28조 또는 제31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7.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입장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0조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자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독·소각 또는 매몰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동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자
11.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동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제56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3.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5항(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의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 6 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58조 (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으로 행한다.

제59조 (통고처분) ①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위반정도에 따라 이 법으로 정하는 벌금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범칙금의 납부) ① 제59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은행 본점이나 지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 이내에 수산동물방역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8789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에 따른 수입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입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하고,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은 이 법 시행 후 수출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지정검역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식용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역을 받았거나 검역이 진행 중인 이식용수산동물은 제27조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았거나 수입검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식용수산물"을 "이식용수산물(「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 또는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6> 까지 생략

<65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7호,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 전단,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6조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제2호,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전단,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7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정 2008·12·22 대통령령 제2117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의 범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체동물(연체동물) 중 두족류
2. 극피동물(극피동물) 중 성게류, 해삼류
3. 척색동물(척색동물) 중 미색류(미색류)
4.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제3조(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동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2.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3. 수산동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수산동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수산동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 소속의 수산동물방역 수행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가 소

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수산동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촉되는 수산동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3.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수산생물학·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수산동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자(이하 “수산동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운송업자(이하 “수산동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입식)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제8조(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동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도지

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설의 명칭
2. 폐쇄기간
3. 폐쇄 사유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쇄기간
2. 해당 시설의 출입금지를 명하는 내용

제9조(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동물(이하 “감축대상수산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감축대상수산동물의 수량은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동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1.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까지 감축
 2. 양식제한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양식제한기간의 만료일까지 감축대상수산동물 중 제1호에 따라 감축된 수산동물 외의 감축대상수산동물 감축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동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수산동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4개월 이내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동물양식시설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동물전염병의 전파가 우

려되는 지역에서 양식된 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명령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수산동물운송업자: 2개월 이내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가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동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수산동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13조(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기준)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촉되는 수산동물검역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자로서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동물 검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2.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어병(어병)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

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동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행·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무는 지정검역물 중 식용인 것에만 적용한다.

1. 지정검역물의 입고, 출고, 이동 및 소독에 관한 사항
 2. 지정검역물의 현물확인
 3.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 대한 시설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검역물의 검사시료 채취협조 및 송부협조에 관한 사항
 5. 검역장소의 종사자 및 관계자의 방역에 관한 교육과 출입자의 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동물검역관이 지시한 사항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동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동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동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및 법 제18조에 따른 소독·소각 또는 매몰에 드는 비용: 해당 비용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어가)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어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동물의 종류별·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임명
 4.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교육
 5.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의 위촉
 6. 법 제10조에 따른 병성감정(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8. 법 제13조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검사등증명서의 교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10.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의 시험·분석
 1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질병의 방역을 위한 긴급조치
 1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동물이나 물건의 수입허가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
 3.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
 4. 법 제35조에 따른 재검역
 5. 법 제36조에 따른 검역판정의 취소 및 재검역
 6. 법 제37조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 ③ 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동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4와 같다.
 -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수산물관련법령집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21174호, 2008.12.22>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의약품의 투약으로 죽은 수산동물: 검사 또는 투약 당시의 그 수산동물의 평가액
 -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산동물의약품의 투약으로 부상당한 수산동물: 부상 수산동물의 진료비나 부상 수산동물과 정상 수산동물의 출하가격의 차액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에 따른 손해: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수산동물: 살처분 당시의 그 수산동물의 평가액
 - 마.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검안 결과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죽은 것이 아닌 수산동물의 사체로 확인된 수산동물: 이동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 바. 법 제18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소각 또는 매몰 당시의 평가액
 - 사. 법 제35조에 따라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동물: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 다만, 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弊死)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제1호에 따른 보상금에서 뺄 수 있다.

[별표 2]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보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1일에서 3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4일에서 6일까지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다.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대상인 수산동물을 발견한 후 6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
 -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살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2를 감액하여 지급
2. 제1호 각 목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수산동물양식자의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감액을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합산한 총감액금액은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의 5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7조제5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등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1호	50	100	150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투약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1호	70	150	250
3.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2호·제3호	50	100	150
4. 법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2호	70	150	250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7조 제2항제4호	50	100	150
6.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법 제57조 제1항제3호	70	150	250
<p>(비고)</p> <p>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p> <p>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별표 4]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2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률 규정	범칙 금액
1.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	100
2.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각명령 또는 매몰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58조제1항	200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동물전염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2.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카엔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아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스페사증
3.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구상바쿨로바이러스증, 사면바쿨로바이러스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4.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제3조(병성감정 및 역학조사대상 수산동물전염병)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및 법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1.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채장괴사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제4조(수산동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활어위판장·활어공판장

2. 수산물도매시장
3. 수산동물을 보관·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 수산동물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제5조(수산동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산동물관련단체, 수산동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동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산동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방역협의회의 기능)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방역협의회(이하 "방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대책 및 방역제도의 개선
2.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대책 및 검역제도의 개선
3. 수산동물질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한 분쟁조정
4. 그 밖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및 검역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방역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방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방역협회를 대표하고, 방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출된 부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방역협의회의 위원은 수산동물의 양식 또는 수산동물질병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방역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방역협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방역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방역협회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방역협회의 운영) ① 방역협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산동물전염병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방역협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방역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산동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동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동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관·수산동물방역사·수산동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동물방역사의 위촉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 방역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수산동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가 수산동물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물양식시설 및 수산동물집합시설 등에의 출입
 2.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동물의 유무 확인
 3.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시료의 채취
- ④ 농림수산물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동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2. 신고 대상 수산동물의 종류 및 수량
 3. 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5.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 그 밖에 수산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학이나 수산동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동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동물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수출입 수산동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물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수산동물의 발견일시·장소·종류·수량·양식 환경 및 분포 등 일반 현황
2. 수산동물전염병의 감염원인 및 경로
3. 수산동물전염병 전과경로의 차단 등 예방요령
4. 그 밖에 해당 수산동물전염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8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사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1년 이상 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수산동물관련단체에서 수산동물방역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평가
2.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3. 수산동물전염병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그 밖에 역학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분석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하여

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양식시설의 종류와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4. 기간
5.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2. 수산동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수산동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동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 또는 수산동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명과 수산동물전염병의 종류
4. 명령의 내용
5. 그 밖에 검사증명서 또는 투약증명서의 휴대에 관한 사항

제18조(수산동물의 격리·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入殖)제한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 수산동물 또는 운송수단
4. 기간
5. 그 밖에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동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동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 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을 말한다.

1. 잉어봄바이러스병
2. 그 밖에 수산동물양식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살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전염병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산동물양식자의 질병·여행 등으로 인하여 살처분명령에서 정한 날까지 살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2. 2개 이상의 수산동물양식시설에서 동시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제20조(수산동물 사체 등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수산동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동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동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동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동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1. 매몰된 수산동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과 관련된 수산동물전염병 명칭
2. 매몰된 수산동물 또는 물건의 종류
3.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기간
4. 그 밖에 매몰과 관련된 사항

제22조(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면 품종: 전복, 넙치, 감성돔, 자주복, 해삼, 참가리비, 조피볼락, 황복과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2. 내수면 품종: 참계,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꺾지, 뱀장어, 자라와 그 밖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종

② 방류수산동물의 수산동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동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동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동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독·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 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이나 시·도지사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동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동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산동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동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동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이식용 수산동물[정액(精液)또는란(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3. 수산동물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 있는 물건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

안 지정검역물에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④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동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안전관리계획서

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이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시험용·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여부
2.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시설 및 장비 구비 여부
3.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수입물량의 적정성
4. 해당 수입금지물건에 대한 관리방법의 적정성
5. 해당 수입금지물건의 유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동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폐기·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1. 수산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물품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산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물은 제외한다)
 5.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6. 양식[축양(蓄養)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7.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경우
 8. 이식용 수산물이 아닌 지정검역물인 경우
 9. 별표 3의2에 따른 수산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제6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수산물부령 제45호(2008.12.22)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는 2009년 2월 23일까지 유효함]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

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支院)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5항에 따른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32조제4항에 따른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수산동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휴대한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수산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한다)을 첨부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

대품신고서를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출입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과건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건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과건검역 신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과건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2.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산동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5.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 ②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건검역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과건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건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건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2.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정밀검사
 - ④ 수산동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과건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과건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건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항구: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여

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

2. 공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제주공항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모사전송(FAX)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1.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을 지정하려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국립수산물과학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지정검역물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이 인근 수산동물 양식시설에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9.10.21>

1. 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2. 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을 포함한다] 양식시설
 3. 수족관 시설
 4. 저온 창고시설
 5.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이식용으로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64조에 따른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游性魚種)에만 해당한다]
- ②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한다)
 - 나.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 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제1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 나. 「수산업법」 제8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어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을 증명하는 서류
 - 다. 제1호다목 및 라목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변경)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의 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장소를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시설 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수산동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질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경우
 2.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자주 발견된 경우
 3. 특정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수입검역과정에서 새로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
-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 수산동물질병 확인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한 조사와 위험수준의 분석
 2. 수산동물질병 위험평가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수산동물양식산업 및 수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
 3. 수산동물질병 위험관리 단계: 해당 수산동물질병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새로운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결정
- ③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은 수입위험분석을 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3조제2항·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의

범위 변경 여부

2. 수산동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으로 결정할 것 인지 여부
3.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의 변경 여부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의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산동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 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 있는 수산동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낚시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동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동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산동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동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동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물관련법령집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공중위생학적 방법·독성학적 방법·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법 제40조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1. 수산동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 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도지사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수산동물명
4. 기간
5. 조치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수산동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 수산동물검역관 및 수산동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동물양식자
2. 사료판매업자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3. 수산동물운송업자

4. 수산동물방역사
 5. 사료 또는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련 단체의 소속 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동물 또는 수산동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 증상 등이 있는 수산동물의 신고
 2. 수산동물전염병이나 그 밖의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예찰
 3. 그 밖에 수산동물방역과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검역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신청내용의 오류 등 민원인의 과실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 민원인의 과실 없이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45호, 2008.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약정 체결 등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의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는 2009년 2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60호, 2009. 2.24>

이 규칙은 200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호, 2009. 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7호, 2009.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0호, 2010. 4.28>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 칙 <제125호, 2010. 5.3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④ 생략

[별표 1]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소각기준

가. 수산동물의 사체

-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 2)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오염 물건(사료·기구·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1)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2)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바다·수산동물양식장 및 가공시설·도로 및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나. 수산동물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 1)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 2)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 3)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kg 당 85kg 비율로 뿌린다.
- 4) 사체를 투입하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다.
- 5)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다. 수산동물의 사체를 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2]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1. 수산동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수산동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는다.
 -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3. 수산동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별표 3]

수산동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배점기준

가.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구분	배점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 초과	3년 초과 5년	2년 초과 3년	1년 초과 2년	1년 이하

나.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실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나)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을 제외한다)구입·사용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환경·위생 관리	가)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나) 병든 수산동물의 격리시설 설치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3) 수산동물의 거래기록유지	가)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구입기록 보관 나) 1년 이상의 수산동물의 출하 또는 판매기록 보관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4) 방역교육	가) 최근 1년간 수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2개 모두 적합	20
		1개 적합	10
		모두 부적합	0

2. 등급판정기준

- 가. 1등급: 80점 이상
- 나. 2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 다. 3등급: 40점 이상 60점 미만
- 라. 4등급: 40점 미만


[별표 3의2] <신설 2009.2.24>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수산동물전염병(제28조제1항제9호 관련)

구 분	종 류
1.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하지 아니한 수산동물전염병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전염성채장괴사증
2. 국제수역사무국이 지정한 수산동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수산동물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별표 4]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

모 형	규 격	용 도	비 고
	<p>지 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깥 원: 40mm — 안의 원: 25mm <p>글자의 굵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의 원: 1mm — 바깥 원: 1mm 	<p>○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스티커로 제작된 검역표지를 부착</p>	<p>스티커</p>

[별표 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보관관리 기준(제36조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활어차

- 1)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2) 지정검역물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
- 3)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4) 수조 칸별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활어차 외의 차량

- 1)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 2) 운송용기는 태양광선·비·눈 등으로부터 검역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수산동물전염병 병원체 등이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다. 공통: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수산동물 지정 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물은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정검역물 검역수수료

가. 검역신청 :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역료

항목	수수료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2)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3)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비고: 수수료는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3. 시험·분석의뢰 수수료

가.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성분분석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수산동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1성분/1점	248,100원	항균물질, 항생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2)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 분석법	1성분/1점	231,300원	항생물질 등
3)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 (흡광도법)	1성분/1점	161,300원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4) 수산동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 (적정법)	1성분/1점	118,200원	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5) 수산동물용의약품 특수기기 분석법(ICP 분석법)	1성분/1점	361,000원	미량광물질 등

수산물관련법령집

6)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154,000원	세균 등
7) 수산동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1성분/1점	257,200원	바이러스 등
8)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분석	1성분/1점	147,000원	
9) 그 밖의 성분분석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나. 병리검사시험

항목	단위	수수료	비고
1)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1점	40,400원	
2) 투과전자현미경 (Negative Staining)검사	1점	36,600원	
3) 주사전자현미경검사	1점	44,500원	
4)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동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동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동물시가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수거증명서		
채취·수거 장소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채취·수거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관리자)		
채취·수거 품명		
채취·수거 수량		
채취·수거 사유		
채취·수거 일시		
채취·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참석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소	
비 고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4항·제8조제2항·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 등을 채취·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수거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역학조사반원증	
소속:	사 진 (2.5cm×3cm)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직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표를 지닌 자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2. 이 증표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3. 이 증표를 주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1. 규격: 가로 56mm, 세로 80mm
2. 바탕색: 노란색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산동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검 사 내 역	검사의 목 적		검 사 연월일		
	검사방법				
검 사 수산동물	품 종	성숙 정도	수 량	특 징	검사 결과
검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0px;">직인</div>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수산동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수산동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투 약 내 용	실시 목적		실 시 연월일		
	검사방법	약물명(제조업체명)	투약방법	투 약 량	
투 약 수산동물	품 종	성숙 정도	수 량	특 징	실시 횟수
검사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약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20px; margin-right: 10px;">직인</div>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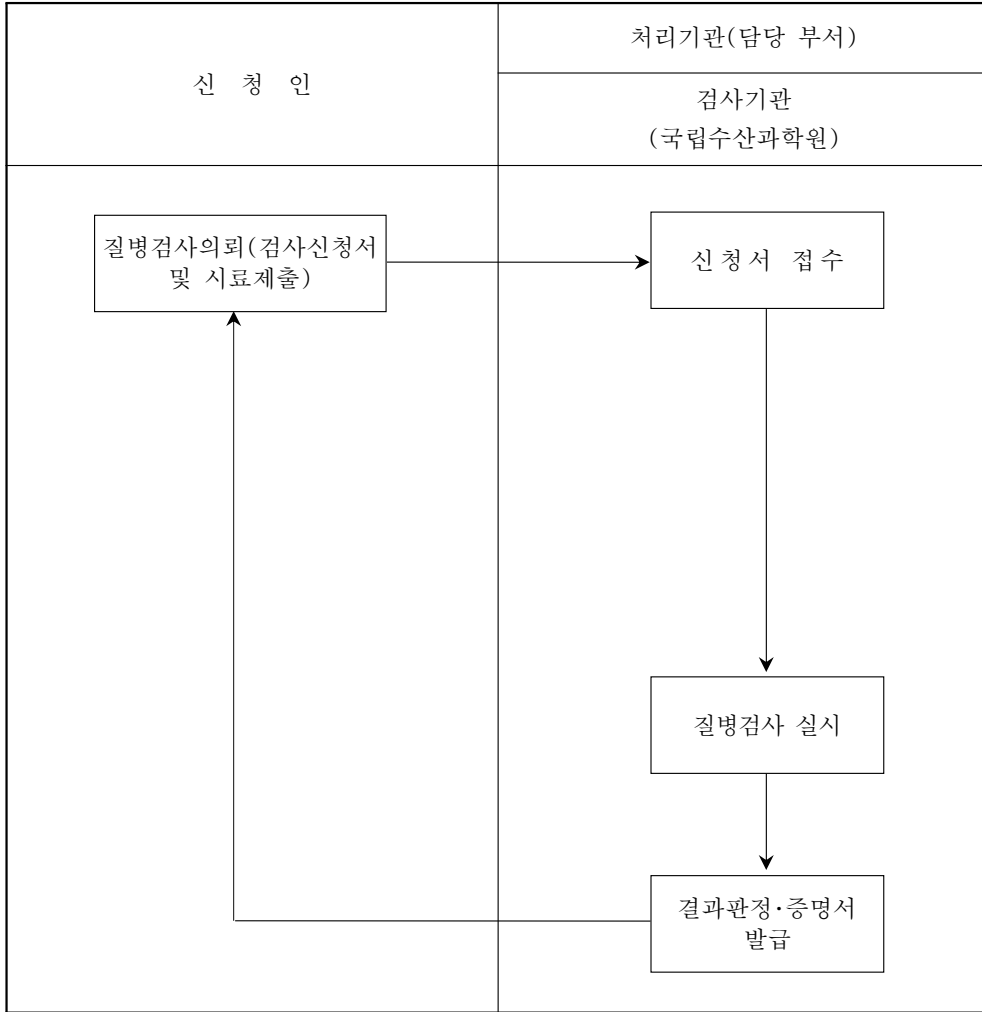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살처분 명령서				
수산물 양식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수량	이행기한
살처분 명령 대상 수산물	품종	성숙 정도	특징	비고
준수 사항				
<p>「수산물질병 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구청장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방류수산동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신청인				접수일	
검사시료	품 종		크기(cm)		
임상검사 결 과	육안적 관찰		기타검사 결 과		
정밀검사 결 과	검사 항목	합격 기준	검사 결과	판정	비고
종합 의견					
검사 비용	신청인 부담(), 수산동물양식자 부담()				
검사 기간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동물의 전염병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수 산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4.17>

방류수산물 소독·격리 명령서				
명령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소독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소독 및 격리			
방류수산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령 내용	명령 이유	수 량	이행기한	격리기간
명령 대상 방류수산물	품 종	성숙 정도	특 징	비 고
준수사항				
<p>「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독·격리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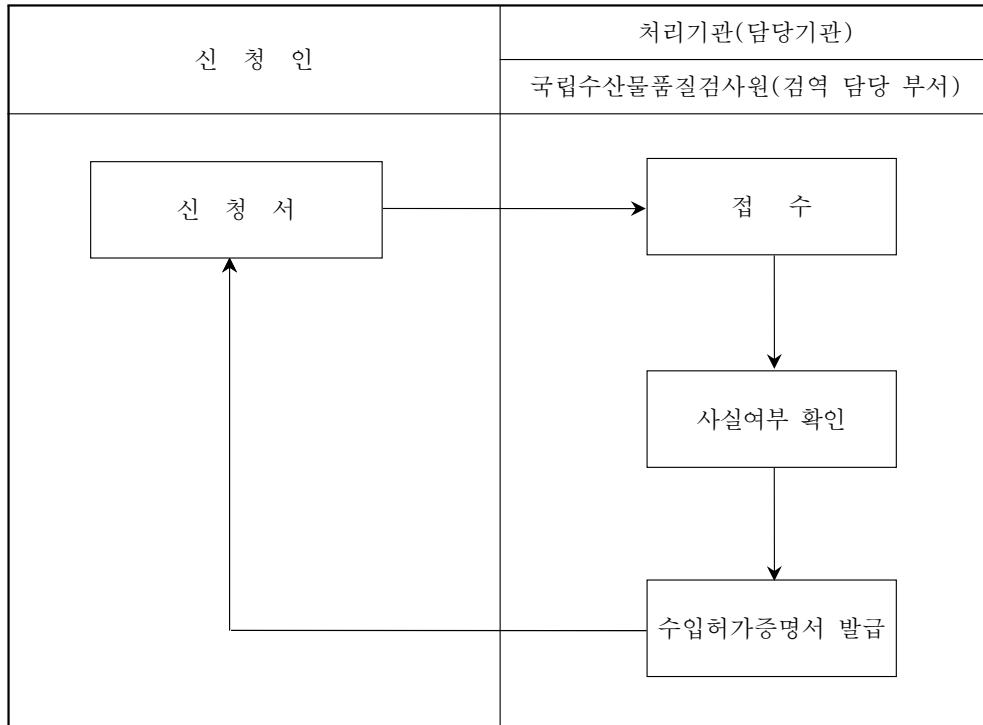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4.17>

방류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방류수산동물 보관시설	시설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살처분 명령의 내용	살처분 이유		수량	이행기한
살처분명령대상 방류수산동물	품종	성숙정도	특징	비고
준수사항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살처분할 것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직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작성 요령

- ① 신청인: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②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국내도착항) 등을 적습니다.
- ③ 수입목적: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 ④ 용도: 시험·연구조사용,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 ⑤ 관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 ⑥ 관리장소: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 ⑦ 사용기간: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⑧ 사용 후 처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소각·매몰 등)을 적습니다.
- ⑨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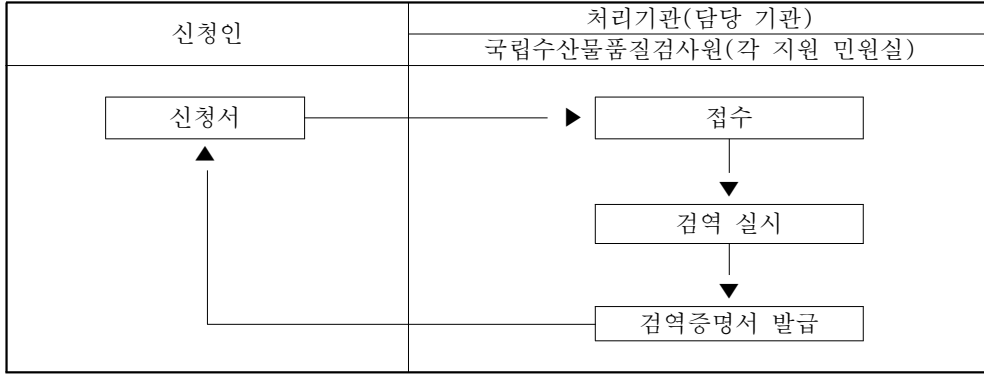
수입허가 증명서 (CERTIFICATE FOR IMPORT PERMIT)	
수입허가번호(Import Permit No.)	
수입허가일자(Date of Issue)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은 것임을 증명합니다.</p> <p>This is to certify that import permit was obtained as the following,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Item 1 of Article 24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5 of Article 2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p>	
신청인 성명,주소,전화번호 (Name & Address of Applicant)	
보내는 사람의 성명·주소 (Name & Address of Consignor)	
품명(학명) (Species or Article name, Scientific name)	
수량(Total Quantity)	
용도(Use)	
도착예정일(Estimated Date of Arrival)	
도착항(Arrival Port)	
<p>※ 주의(Remarks)</p> <p>1. 위의 수산동물 또는 물품을 수입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In consigning the above fishes or packages in which the above articles are packed, they should be accompanied with this certificate.</p> <p>2. 수입자는 위의 검역물을 수입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후 수취하여야 합니다. The consignee should receive the above commodities after the completion of inspection at the above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Branch.</p>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div> 직인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Back)

첨부서류	수수료
1.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이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에만 해당합니다) 5.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000원 (수입인지 /전자결제)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

- ① 신청번호: 신청자는 적지 않습니다.
-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 ③ 화물번호: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 적되, 화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④ 입항일: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에 입항일자를 적습니다.
- ⑤ 선(기)명: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⑥ 신청인: 해당 검역물을 검역기관에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⑦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⑧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cm, g, kg) 등을 적습니다.
- ⑨ 자연/양식산: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 ⑩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할 때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⑪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kg)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⑫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을 적습니다.
- ⑬ 용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적습니다.
- ⑭ 수출국: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⑮ 원산지: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명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 ⑯ 생산시설: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등록시설번호(한국과 약정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주소를 적습니다.
- ⑱ 선적항: 당해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 경로별로 일자를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한 경우 그 사유와 일자를 적습니다.
- ⑲ 선적일: 해당 검역물 선적한 일자를 항구별로 적습니다.
- ⑳ 도착항: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㉑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수입검역 증명서			
신청인	성 명		업체명
	주 소		
품 명		규 격	
개수(C/T)		중량(kg)	
금액(US\$)		용 도	
수 출 국		원산지	
생산시설			
수 출 자			
비 고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 수산물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직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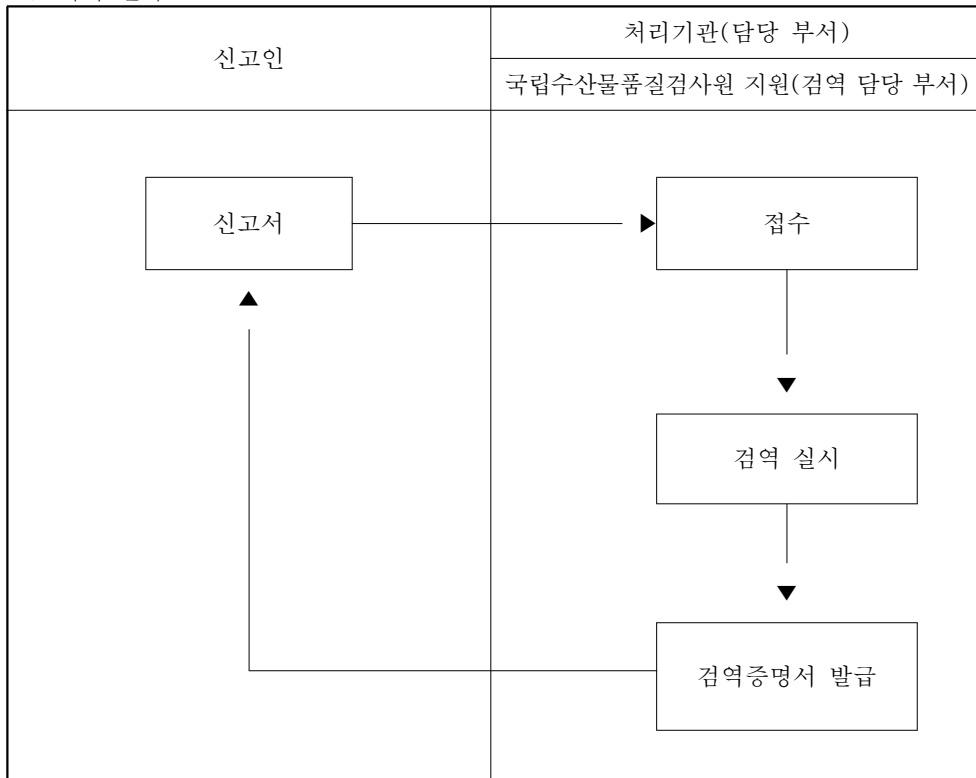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첨부서류

(뒤 쪽)(Back)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자가소비용 지정검역물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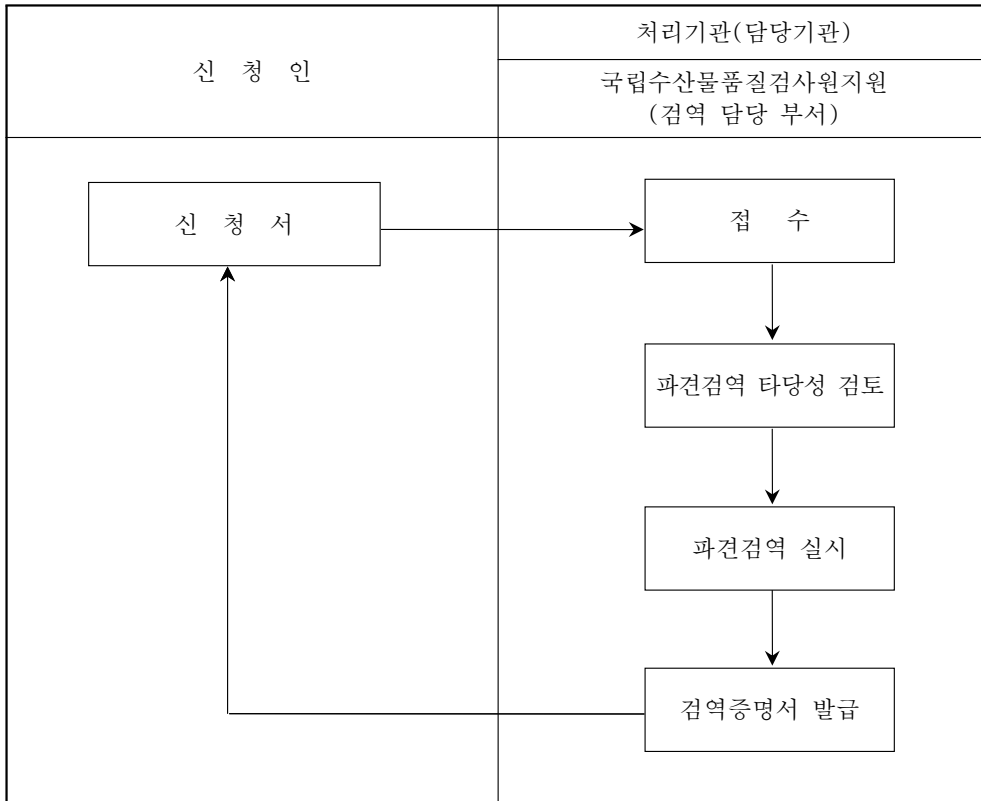


○ 작성 요령

- ① 신고번호: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② 신고일: 신고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③ 신고자: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신고한 자의 성명, 여권번호, 국적, 성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검역대상품: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의 한글명(영어명)과 학명 및 개수(C/T), 중량(kg 또는 개수), 수입국, 원산지를 각각 적습니다.
- ⑤ 용도: 관상용으로 적고, 괄호 안에는 판매용, 자가관상용 등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⑥ 선명 또는 항공편명: 해당 휴대물품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을 적습니다.
- ⑦ 그 밖의 사항: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뒤 쪽)



○ 작성 요령

- ① 신청인: 신청인 성명, 상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 ② 파견국가 및 지역: 파견검역 국가명 및 지역을 적습니다.
- ③ 파견기간: 파견검역기간을 적습니다.
- ④ 검역기관명 및 주소: 검역을 실시하게 될 기관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
- ⑤ 파견검역 신청사유: 파견검역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적습니다.
- ⑥ 정밀검사 방법: 희망하는 정밀검사 방법에 √ 표시를 합니다.
- ⑥ 지정검역 대상 수산동물: 품명, 학명, 중량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과견검역 증명서 (수입수산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					
신청인	성 명				
	주 소				
과견국가 및 지역					
검역기간					
검역결과					
증 명 내 용					
품 명	학 명	규 격	중량(kg)	금액(US\$)	보관장소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 과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산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산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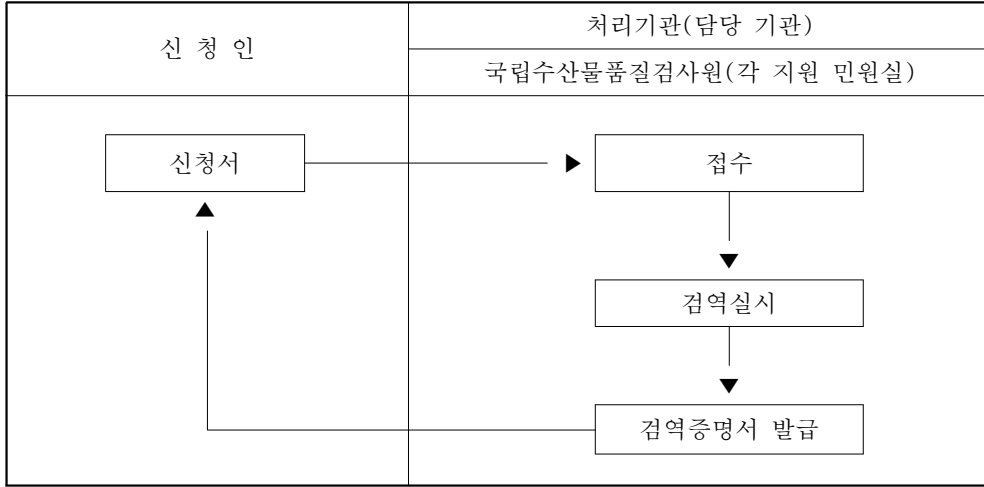
수산물관련법령집

○ 첨부 서류

(뒤 쪽)(Back)

1. 이식증인서 사본(「수산업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식증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0,000원 (수입인지/전자결제)

○ 처리 절차



○ 작성 요령

- ① 신청번호: 신청자는 적지 아니합니다.
-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 ③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의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④ 생산시설: 양식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생산한 양식장명, 자연산인 경우 해당 검역물을 집합한 장소를 적습니다.
- ⑤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 ⑥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cm, g, kg) 등을 적습니다.
- ⑦ 개수 : 해당 검역물의 C/T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출 시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 ⑧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kg)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립 등을 적습니다.
- ⑨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출 금액(US\$)을 적습니다.
- ⑩ 용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조사연구용으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도록 적습니다.
- ⑪ 수입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려는 국가의 수입회사명 및 주소를 적습니다(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⑫ 선적항: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 ⑬ 선적일: 해당 검역물을 선적하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 ⑭ 목적지: 해당 검역물이 수출하려는 국가명(항구·공항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⑮ 운송수단: 해당 검역물을 운송하는 수단을 항공·선박명을 적습니다.
- ⑯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을 입고 또는 입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⑰ 수입국 요구질병 항목: 수입국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질병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출검역 증명서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Republic of Korea (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ANIMAL QUARANTINE)			
검역증번호(Certificate No.):			
수출자 (Exporter)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 (Address)		
수입자 (Importer)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 (Address)		
품명(Common name)			학명(Scientific name)
개수(Quantity, C/T)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성명(Name)		상호(Company name)
	주소 (Address)		
검역대상질병 (Specified disease)			
선적항(Port of shipping)			선적일 (Date of shipping)
도착국가 (Country of destination)			운송수단 (Mean of conveyance)
비고(Remark)			
위의 수산동물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검역 하였으며, 위의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quatic animals described above have been quarant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of The Aquatic animal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4 of Article 34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and that they are free from the specified disease described above.			
발행 연 월 일(Date of Issue):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직인			
Chief of National Fisheries Products Quality Inspection Service ○○ Branch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9.10.21>

(앞 쪽)

제 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서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검역시행장소명						
검역시행장 주소	(전화번호:)					
지 정 사 항						
검역대상물						
검역관리인 성명						
검역관리인 임무						
지정면적 (수조수)	면적 : m ² (조)					
용수관리(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유입수	환수량	톤/일	배출수	환수량	톤/일
		소독방법			소독방법	
지정기간						
지정조건						
<p>「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 직인</p>						
※ 검역시행장 지정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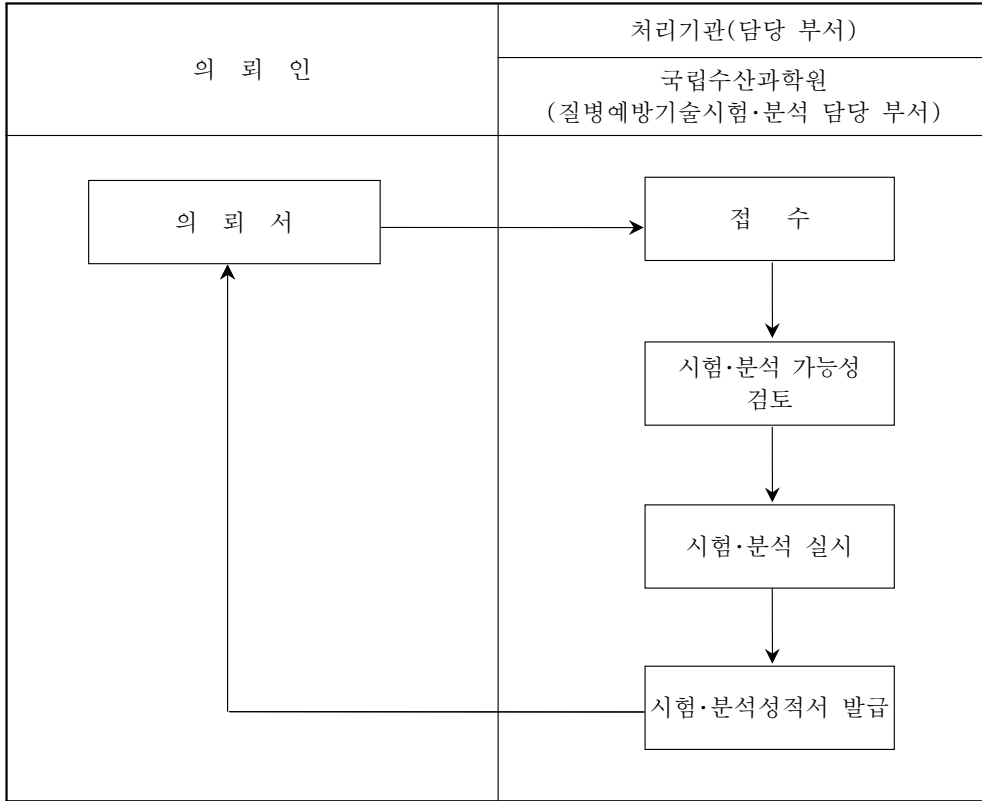
수산관련법령집

(뒤 쪽)

년 월 일	구 분	처 음	변 경	확인(날인)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26호서식]

제 호	
수산동물방역관증	
소속:	사 진 (2.5cm×3cm)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 7조에 따른 수산동물방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직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4.17>

제 호	
수산동물검역관증	
소속:	사 진 (2.5cm×3cm)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 22조에 따른 수산동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수산동물방역사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0px; height: 15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p>사 진</p><p>(3.5cm×4.5cm)</p><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div></div>
56mm×80mm[보존용지(1종) 120g/m ²]

(뒤 쪽)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20px; margin: 0 auto;"></div>
제 호 수산동물방역사증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8 조에 따라 수산동물방역사로 위촉되었음 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40px; height: 20px; 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직인</div>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0호서식]

범칙자 적발보고서					결재
제 호 수신자: 국립수산과학원장 제 목: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18조제1항·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산동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소각 또는 매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범칙자	성 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범칙행위	일시/장소				
	위반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시·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르는 어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정 2002·1·14 법률 제6611호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6호
2007·1·26 법률 제8298호
2007·4·11 법률 제8377호
2008·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09·4·22 법률 제962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산생물의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수산생물에 대한 질병의 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9.4.22>
2. "수산자원조성"이라 함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3. "바다목장"이라 함은 일정한 해역 등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여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번식하게 하고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수산생물"이라 함은 기르는어업의 대상이 되는 수산동식물과 그 알 또는 포자를 말한다.
5. "수산질병관리사"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수산생물진료업"이라 함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 2 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①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4.22>
3. 기르는어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르는어업 발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7.1.26,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
 4. 시·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인
 5. 지역어업인중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인
- ⑤심의회는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09.4.22>

제5조 삭제 <2009.4.22>

제6조 삭제 <2009.4.22>

제7조 삭제 <2009.4.22>

제8조 삭제 <2009.4.22>

제9조 삭제 <2009.4.22>

제10조 삭제 <2009.4.22>

제11조 삭제 <2009.4.22>

제12조 삭제 <2009.4.22>

제13조 삭제 <2009.4.22>

제 3 장 수산생물진료

제14조 (면허)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0.2.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마약·대마 그 밖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 (면허증 등) ①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부여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기재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면허대장에의 기재와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①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②관리사 국가시험은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산생명의학과 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수산생물의 양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관리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응시자격) 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학(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수산생명의학과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 국가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자 또는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연속하여 실시되는 관리사 국가시험에 2회를 응시할 수 없다.

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관리사가 아닌 자는 수산생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1. 「수의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수산생물진료업을 영위하는 관리사는 수산생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진단서 등) ①관리사는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검안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製劑)를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폐사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때에는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관리사는 그가 진료한 수산생물에 대한 진단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관리사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누구든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관리사(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으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련학을 전공하는 학교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①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경우로서 개설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수산질병관리원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는 관리사중에서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함에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

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산생물의 진료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5.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업무를 위촉받은 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관리사"라 한다)는 농림수산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위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①농림수산물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행한 때
4.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2008.2.29>

1.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단서·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행한 때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

8.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9.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10.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2008.2.29>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가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29조 (업무정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2.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3.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5.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7.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 [전문개정 2007.1.26]

제 4 장 보 칙

제30조 삭제 <2009.4.22> <삭제 2009.4.22>

제31조 (지도와 명령)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생물의 진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생물진료에 관한 업무상황·시설·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 (청문)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5 장 벌 칙

제3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생물을 진료한 자

② 삭제 <2009.4.22>

제36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2.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산생물의 진료를 거부한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자
 5.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7.1.26>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6611호, 2002. 1.1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5조제1항, 제36조 및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내지 제79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점·사용료 수입중 100분의 50 이상을 기르는어업육성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별 특성 및 점·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6제3항 단서중 "수의사"를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기르는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부 칙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중 "해양수산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2>내지 <68> 생략

부 칙 <제8298호, 2007. 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에 대한 적용례 등) ①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게 부과된 수산자원조성금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29조제1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한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휴업·폐업의 신고는 제2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377호, 2007. 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르는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를 "「수산업법」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제3항 단서"를 "「수산업법」 제77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6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률 제8298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로 한다.

⑤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36> 까지 생략

<637>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제2호·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본문,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2조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3항, 제18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6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9627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제정	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
일부개정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81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3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기르는 어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제2조(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①「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심의회 회의의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7.27>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 삭제 <2010.4.20>

제4조 삭제 <2010.4.20>

제5조(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수산자원조성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소속 시험연구·기술보급기관, 관계연구기관, 대학, 관계전문가 및 어업인 등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수산물관련법령집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중의 업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연구관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연구관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삭제 <2010.4.20>

제7조 삭제 <2010.4.20>

제8조 삭제 <2010.4.20>

제9조 삭제 <2010.4.20>

제10조 삭제 <2010.4.20>

제11조 삭제 <2010.4.20>

제12조 삭제 <2010.4.20>

제13조 삭제 <2008.10.20>

제14조(시험관리기관)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의 관리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시험관리기관의 시험관리요령, 보고사항 그밖에 시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출제위원 및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과목별 출제비율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 30일전까지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응시원서제출기간 그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응시원서) ①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18조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관리사 국가시험은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2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수산질병관련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식어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진료행위
3. 어촌지도 또는 수산연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관할지역에서 행하는 무상진료행위
4. 자기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행위
5.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의 양식어가가 사육하는 수산생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행하여지는 다른 양식어가의 무상진료행위

제21조(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 삭제 <2010.4.20>

제23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18052호, 2003. 7.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1조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내지 제59조의10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②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8881호, 2005. 6.23>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중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축제식양식어업 제외) 및 육상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양식어업중 축제식양식어업

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중 축제식 양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생략

부 칙 <제19513호, 2006. 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해양수산부소속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해양수산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내지 <241>생략

부 칙 <제20203호, 2007. 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어업자원국장"을 "기르는 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제4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4항·제5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제12조제7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 제22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제2항 및 제24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④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제22128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별표 1] 삭 제 <2010.4.20>

[별표 2] 삭 제 <2010.4.20>

[별표 3]

수산질병관리사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제16조제2항관련)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1.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의 양식, 수산생물의 구조와 기능, 수산생물의 질병발생 인자, 수산용의약품, 수산생물과 공중보건
2. 수산생물임상의학	질병예방, 질병진찰 및 진단, 감염성질병, 비감염성질병
3. 수산질병관련 법규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중 동물용 의약품관련 규정

[별표 4]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제21조관련)

개 설 자 별	시 설 기 준
수산질병관리사	1. 진료실 :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2. 처방실 : 소독장비, 약제기구 등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3. 그 밖에 수산질병관리원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과 장비를 갖추는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진료실 : 진료대 등 수산생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수산생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처치실 : 수산생물 진료에 필요한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기구·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
○수산질병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3. 조제실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임상병리검사실 : 현미경·세균배양기·항온수조·굴절계·마이크로피펫·교반기·전자저울·수질측정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할 것
	5. 기동장비 및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갖추는 것
	6. 기타 수산질병관리원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등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산질병관리원의 건물 총면적은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제외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일 것

비고 : 위 표의 시설기준중 진료실과 처치실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

과태료금액의 산정기준(제24조제3항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36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24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자	법 제36조제1항제2호	200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산생물의 진료를 거부한 자	법 제36조제2항제1호	100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법 제36조제2항제2호	100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제2항제3호	50
6.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자	법 제36조제2항제4호	50
7. 법 제26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질병 관리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6조제2항제5호	20

비고 : 행정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표의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2003· 7· 15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일부개정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5· 7· 1	해양수산부령 제299호
	2006· 6· 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7· 1· 16	해양수산부령 제355호
	2007· 7· 27	해양수산부령 제37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1호
타법개정	2010· 8·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르는 어업육성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6, 2007.7.27>

제2조(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①「기르는 어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 2007.1.16, 2007.7.27, 2010.8.5>

1. 바다목장 또는 인공어초 시설에 적합한 해역
2.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의 어장을 양식어장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해역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및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4. 그밖에 기르는어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또는 지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르는어업 개발지구를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수산물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에 대한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3조 삭제 <2010.5.31>

제4조(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관리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법 제15조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법 제1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당해 시험합격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리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5조(면허증의 재교부 등) 관리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잃어버린 경우 :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매

제6조(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그 성명·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및 성별)
3.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 면허증을 재교부하거나 면허를 재부여한 때에는 그 사유

제7조(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 국가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는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7.27>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관리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증량
2. 병명 및 진단소견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연월일
6.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7.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8. 관리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0조(처방전의 기재사항) 관리사가 교부하는 처방전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증량
2.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약의 명칭·성분분량·용법·용량·보관방법·사용기간
4. 처방전의 교부연월일
5.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개설장소·전화번호
6. 관리사의 성명·면허번호

제11조(폐사증명서의 교부)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진료하지 아니한 관리사가 폐사(斃死)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증명서 등의 교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가 교부하는 증명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안(檢案)서 : 별지 제6호서식
2. 폐사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진료부

- 가.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
- 나. 진료연월일
-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라. 병명, 주요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 마. 사육환경
- 바.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 검안부

- 가. 수산생물의 품종·특징 및 중량
- 나. 검안연월일
- 다.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라. 폐사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연월일)
- 마. 폐사의 원인과 장소
- 바. 사체의 상태
- 사. 해부의 주요소견

제14조(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8.7, 2006.6.26, 2007.7.27>

-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 2. 관리사(개설자 및 종사자를 말한다)의 면허증 사본 1부
- 3. 제2호의 관리사가 법 제1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 4.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7.7.27>

④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7.7.27>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2007.7.27>

제15조(수산물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필요한 검사·투약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
3. 다른 수산물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그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물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 소독 등 수산물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의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하는 때에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6.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7.1.16]

제16조(휴업·폐업의 신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수산생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수산물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17조(공수산물질병관리사) ①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물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②시·도지사는 공수산물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8조(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08.3.3>

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7.7.27]

제19조(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수산물질병관리원 개설자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생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필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생물진료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신고대장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정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신고필증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20조(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물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그 휴업·폐업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3.3>

제21조(수수료) ①관리사 면허증재교부 및 면허의 재부여수수료는 2천원, 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만원, 수산물질병관리원 개설신고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관리사 면허증재교부 및 면허의 재부여 수수료와 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산물질병관리원 개설신고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6>

부 칙 <제251호, 2003. 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시험응시대상학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았거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의 학과(주전공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학사의 학위

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의 학위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족병리학과
2. 어병학과
3. 해양생명의학과
4. 수산생명의학 주전공
5. 해양생명의학 주전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와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와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9호, 2005. 7. 1>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해수양식 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②내지 ④생략

부 칙 <제340호, 2006. 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5호, 2007. 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8호, 2007. 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 단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및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⑤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25호, 2010. 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 <제137호, 2010.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어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어업,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및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에 적합한 지역

② 생략

[별 표] <개정 2007.7.27>

행정처분기준(제18조관련)

I. 일반기준

1.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산질병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사에 대하여만 처분한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 이내에 개별기준 동일호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5. 행정처분권자는 수산생물의 질병에 대한 방역 및 진료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II. 개별 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 가.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 :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이내
 - 나. 면허취소의 경우 : 면허정지 6월 이상(관리사가 법 제1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II. 개별기준

1. 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28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자신의 관리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2호	면허정지 12월	면허취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2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 제28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1호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1년
6.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약·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2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7.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단서·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3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년
8.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4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9.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5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6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7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8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3.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9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4.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법 제28조 제2항제10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수산관련법령집

2.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및 검안부를 비치·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2.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29조 제2호	경고	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년
3.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3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4.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때	법 제29조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5.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상 휴업한 때	법 제29조 제5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6.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29조 제6호	경고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7.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때	법 제29조 제7호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별지 제1호 서식] 삭 제 <2010.5.31>

[별지 제2호 서식] 삭 제 <2010.5.3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면허번호 제 호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초교부일자	년	월	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질병관리사를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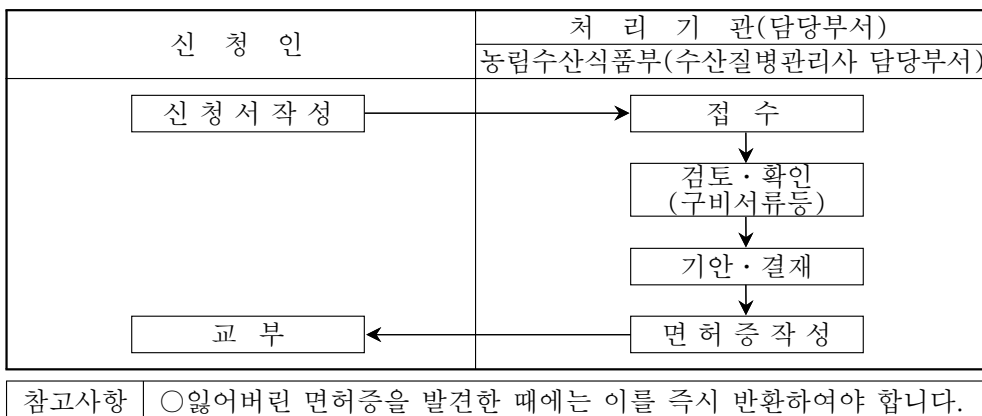
(앞 쪽)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input type="checkbox"/>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재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면허번호		② 면허일자 년 월 일
신청인	③ 한 글 성 명 한 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⑥ 자 격	제 회 수산물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
	⑦ 출신학교	⑧ 졸업일자 년 월 일
⑨ 재교부 및 재부여 사유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됨에 따른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수산물질병관리사면허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에 따른 재교부 <input type="checkbox"/> 면허의 재부여	
⑩ 잃어버린 경위(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물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교부(면허의 재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잃어버린 경우 :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2,000원 (수입인지 붙이는 난)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면허증과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당해 면허증과 그 변경에 관한 증빙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4. 면허를 재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정면·상반신 사진(3cm×4cm) 1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제 회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응시원서						
응시번호						
응시자	①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사 진 (3cm×4cm)
	성 명	한자				
	③주 소					
최종 출신 학교	④학 교 명					
	⑤졸업일자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 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굵은선안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수 수 료	20,000원(수입인지 붙이는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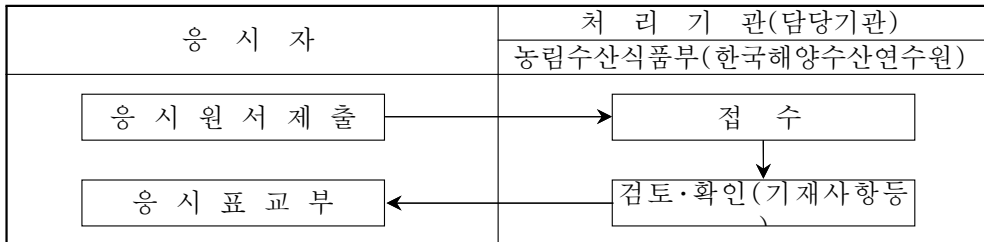
----- (간인) ----- 절 취 선 -----

제 회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응시표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이 응시원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절 취 선 -----
응시자 주의사항

1.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앉고 책상 오른쪽에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시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3. 필기구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검정색)만 사용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7.29>

검 안 서				
수산물 소유자 (관리인)	성명			
	주소			
수산생물의 특징				
품종		중량	발병연월일	년 월 일
폐사일시			폐사장소	
검안연월일				
임상진단명				
폐사의 원인				
사체의 상태				
주요조건 및 특기사항				
<p>「기르는 어업 육성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수산질병관리원명칭 : 소재지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 수산질병관리사성명 :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7.27>

신고번호 제 호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필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 소 재 지 :			
수산질병 관리사	성 명	면 허 번 호	주민등록번호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 g / m²(재활용품))

(뒤 쪽)

연 월 일	내 역	비 고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7.27>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수 산 질 병 관 리 원	④ 명 칭		⑤ 신 고 번 호
	⑥ 소재지		
⑦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7.27>

수산질병관리원 <input type="checkbox"/> 휴 업 <input type="checkbox"/> 폐 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명 칭			
⑤ 소 재 지	(전화 :)		
⑥ 폐 업 일 자			
⑦ 휴 업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⑧ 휴업 또는 폐업 사유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산질병관리원개설 신고필증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제정 1953·12·12 법률 제298호
일부개정 1966·4·23 법률 제1783호
1996·8·8 법률 제5153호(정부조직법)
타법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이하 관할수역이라 칭함)으로 한다.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열도)마안 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제3조 (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수산관련법령집

제4조 (범죄의 수사) 전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해군함정의 승무장교, 사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전항의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범칙선박의 회항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단순한 통과선박일지라도 이를 정지시키고 입검, 수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298호, 1953.12.12>

단기 4285년 2월 19일 현재의 어업에 관한 허가, 면허 또는 계출은 본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3호, 1966. 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업자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8> 까지 생략
<669> 어업자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제정	1954· 1· 18	대통령령	제861호
일부개정	1966· 5· 10	대통령령	제2529호
전문개정	1970· 7· 21	대통령령	제5217호
일부개정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수산업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제1조(어업의 범위)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먼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제2조(어업허가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제3조 삭제 <2007.10.31>

제4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수산업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는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부 칙 <제5217호, 1970. 7.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08호, 1991. 2.18> (수산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 칙 <제15135호, 1996. 8. 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계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허가·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정	1999. 9. 7	법률 제6029호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75호(국적법)
	2001. 9. 12	법률 제6515호
	2002. 1. 14	법률 제6611호(기르는어업육성법)
	2002. 12. 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3. 22	법률 제7207호
	2004. 12. 31	법률 제7275호
	2005. 5. 31	법률 제7571호
	2005. 7. 29	법률 제7639호
	2006. 10. 4	법률 제8045호
	2007. 1. 19	법률 제8260호
	2007. 4. 11	법률 제8377호
	2007. 8. 3	법률 제8625호
	2007. 8. 3	법률 제8629호
	2008. 2. 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10. 3. 31	법률 제102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11, 2009.4.22>

1.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 또는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조업구역, 어획량 기타 어업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와 어선원을 말한다. 이 경우 "어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를, "어선원"이라 함은 어업자등을 위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이하 "어업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어선 및 어구의 매입비,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을 말한다.
4. "관련산업"이라 함은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 어선수리·조선업 및 어업용기자재제작·수리업 기타 어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09.4.22>

제3조(적용의 특례) 이 법은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하는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제한받는 어업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 2 장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제4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 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어업자등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실직어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직어선원이 어업자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

정 2008.2.29>

③실직어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련산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융자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금액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해당광역시와 도에 광역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수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감정평가사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1.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2. 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법 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
4. 어업자등에 대한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5. 관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관한 사항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시·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금 확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평가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의 확정
4. 기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지급신청)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원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감정평가등) ①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의결하기 전에 당해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지급) ①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원금은 신청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일수는 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어업자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의견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어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심의·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사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다시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③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재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실업지원금의 보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조세감면의 특례) 지원금 기타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6조(지원금등의 환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시효)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 3 장 수산업의 육성

제18조 삭제 <2009.4.22>

제19조 삭제 <2009.4.22>

제20조 삭제 <2009.4.22>

제21조 삭제 <2009.4.22>

제 4 장 수산발전기금

제22조 삭제 <2009.4.22>

제23조 삭제 <2009.4.22>

제24조 삭제 <2009.4.22>

제25조 삭제 <2009.4.22>

제26조 삭제 <2009.4.22>

제 5 장 보 칙

제27조(매입어선·어구의 처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어업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매각 또는 양여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차원에서의 무상공여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소각 또는 해체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매입한 어선·어구의 취득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 <2009.4.22>

제29조(권한의 위임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별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제 6 장 별 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허위로 한 자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09.4.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6029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은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인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어선감척지원금등을 받거나 이에 수반하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이루어진 신청·심의·감정평가 및 재심의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규정중 어획물운반업자는 법률 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제4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2항제4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제5항 전단·제8항중 "비축용농수산물"을 각각 "비축용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의4제2항 및 제4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각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62조의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중앙회"라 한다)"를 "(이하 "농림축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농림축수협중앙회"를 "농림축협중앙회"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 칙 <제6075호, 1999.12.31> (국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부 칙 <제6515호, 2001. 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부과·징수한다.

제2조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 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 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제6611호, 2002. 1.14>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 칙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28>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9>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7207호, 2004. 3.22>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등의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생략

부 칙 <제7275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
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제7571호, 2005. 5.31> (어촌·어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
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 칙 <제7639호, 2005. 7.29>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045호, 2006.10.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 <제8260호, 2007. 1.19>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 <제8377호, 2007. 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수산관련법령집

제16조 생략

부 칙 <제8625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29호, 2007. 8.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 용부담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9> 까지 생략

<67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6호, 2009. 4.22> (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제10220호, 2010. 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地方稅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2호
일부개정	2001. 11. 24	대통령령	제17418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3. 7. 15	대통령령	제18052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9호
	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4호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10. 4	대통령령	제20318호
	타법개정	2007. 10. 23	대통령령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관련산업의 범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기타 어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1.24, 2005.6.30, 2007.10.4, 2007.10.23>

1.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얼음·어상자 등 선용품(船用品)을 공급하는 사업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위탁판매사업과 동 판매사업장에서의 중도매업
3.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어업관련 서비스업

제3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에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이하 "어업등"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있는 어업자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어획할당량의 감소 또는 조업수역의 제한으로 어업등을 계속할 수 없는 자
2. 어구규모의 축소 또는 조업기간의 단축 기타 조업조건외의 제한으로 어업등의 경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감정가격 및 평년수익액은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및 평년수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7.10.31, 2010.4.20>

③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지원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07.10.4, 2007.10.31, 2010.4.20>

1.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수역
2. 제1호외의 수역으로서 러시아연방 관할수역

제4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①법 제5조제1항에서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등의 폐업에 따라 실직하는 어선원으로서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날 이전부터 폐업으로 감척하는 어선에 계속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외국인인 어선원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은 「선원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7.10.4>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고정급은 선원근로계약(「선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물관청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선원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물관청에 신고하거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선원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단체협약도 없는 경우에는 동일지역·동일업종의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지역·동일업종의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동

일업종, 동일지역·유사업종, 인근지역·유사업종의 단체협약의 순으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9, 2007.10.4, 2010.7.12>

제5조(관련산업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산업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원료공급이 제한되거나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업종
2. 협정의 체결로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업종
3. 기타 협정의 체결에 의한 영향으로 그 경영안정을 위하여 긴박한 지원필요성이 있는 업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산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5.30, 2007.10.4, 2007.10.31, 2010.4.20>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삭제 <2001.11.24>
3.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자금의 용자조건을 위반하여 그 지원이 취소된 자

제6조(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어업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7.10.4, 2008.2.29>

1. 농림수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어업인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인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3. 협정과 관련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3인
4. 협정과 관련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또는 그 어선원이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1인
5. 수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1인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어업손실액 산출

및 평가에 경험이 있는 자 1인

8. 협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어업과 관련이 크다고 인정되는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4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인
9. 관련산업의 업체 또는 조합의 대표 1인

제7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사무지원)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기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업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0.4, 2008.2.29>

1. 시·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 어업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1인
2.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2인
3. 협정과 관련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 3인
4. 협정과 관련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또는 그 어선원이 속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1인

5. 수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1인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어업손실액 산출 및 평가에 경험이 있는 자 1인
 8. 협정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어업과 관련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5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인
- ④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시·도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용역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에 따른 어업손실액 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07.10.31, 2010.4.20>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개정 2007.10.4>

제13조(의견청취의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및 시·도 위원회가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청취일 15일전에는 의견청취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의견청취일시를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지급) ①법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금액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결정된 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회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2회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1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0.4.20>

제16조 삭제 <2010.4.20>

제17조 삭제 <2010.4.20>

수산물관련법령집

제18조 삭제 <2010.4.20>

제19조 삭제 <2003.7.15>

제20조 삭제 <2010.4.20>

제21조 삭제 <2010.4.20>

제21조의2 삭제 <2010.4.20>

제22조 삭제 <2010.4.20>

제23조 삭제 <2010.4.20>

제24조 삭제 <2010.4.20>

제25조 삭제 <2010.4.20>

제26조 삭제 <2010.4.20>

제27조 삭제 <2002.12.30>

제28조 삭제 <2010.4.20>

제29조 삭제 <2010.4.20>

제30조 삭제 <2010.4.20>

제31조(어선·어구의 처리) ①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양여받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목적

2. 처리방법별 어선·어구의 수량 및 대상어선의 규모

3. 처리하고자 하는 어선·어구의 관리방법

4. 기타 어선·어구의 처리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어선·어구를 매각 또는 양여하거나 공공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어선·어구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2조(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어구의 매입가격, 그 상태 및 매각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4,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어선·어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은 기금에 납입하거나 시·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1.11.24>

④ 삭제 <2010.4.2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어선·어구의 처리승인)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어선·어구처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과태료)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 칙 <제22269호,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수산관련법령집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87> 부터 <136> 까지 생략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정	1999·12·9	해양수산부령제153호
	2004·8·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타법개정	2006·6·26	해양수산부령제340호
	2007·12·3	해양수산부령제392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10·1·14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신청)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이하 "연근해어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선박등기부 등본 1부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6.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4. 어장의 이동 또는 업종의 전환에 관한 동의서 1부

제3조(새로운 어장의 개발지원)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또는 출어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어장개요, 조업계획·방법, 어획물의 생산·판매계획, 예상경비내역 및 손익계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어비용의 지원기간 및 지원액의 범위는 출어하고자 하는 수역의 위치 및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제4조(실업지원금의 지급신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획물운반선에 승선한 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한 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 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자등과 공동으로 별

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3, 2010.1.14>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2. 선원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른 선원명부 1부
3.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 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관련산업 지원신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용자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최근 3년간의 사업매출액(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시까지의 사업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3.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등 관련산업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제6조(어선·어구의 매각절차 등)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어구를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낙찰자는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③낙찰자는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부 칙 <제153호, 1999.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40호, 2006. 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92호, 2007.12.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각각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어선의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5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3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무선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43>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11호, 2010. 1.14>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제4조제2호 중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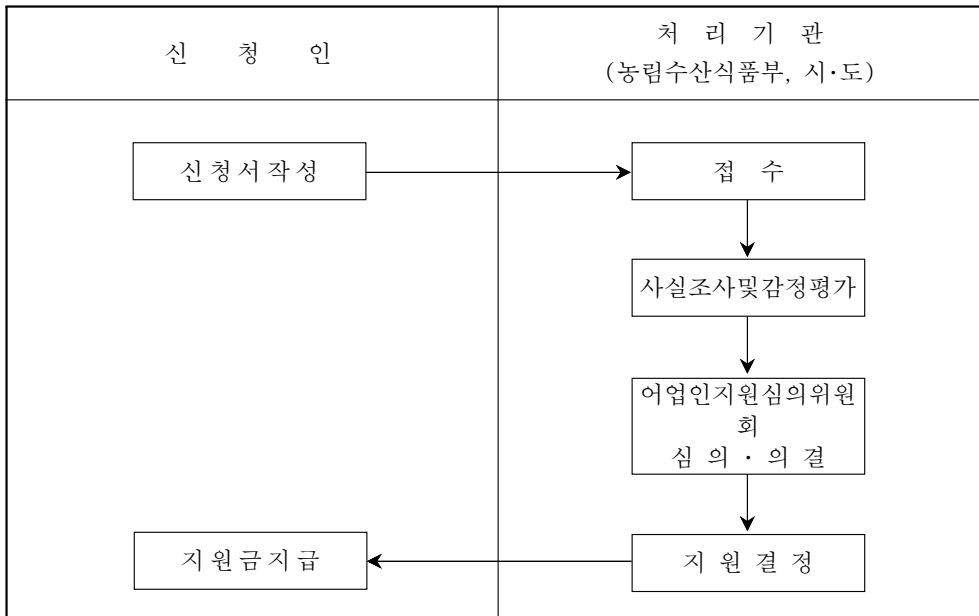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2.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관청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등기부등본 1부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이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6.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폐지동의서 1부

※ 작성요령

1. ㉞란은 어업허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㉟란은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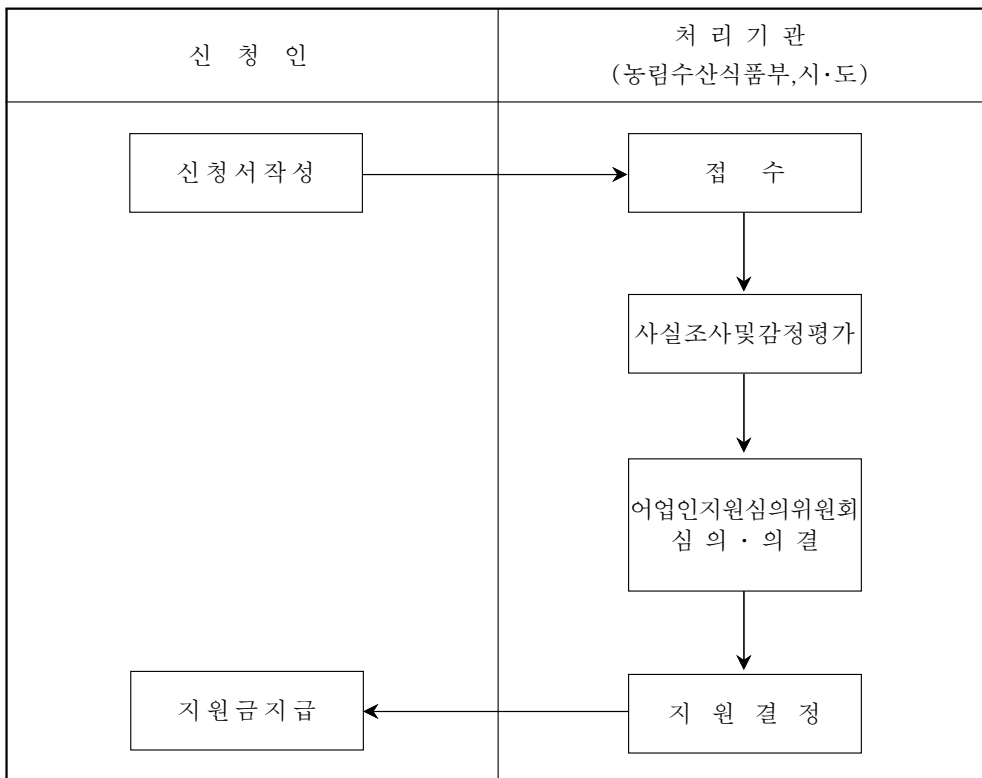
(뒤 쪽)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2톤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5톤미만의 무동력선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4. 어장의 이동 또는 업종의 전환에 관한 동의서 1부
--

※ 작성요령

㉓란은 해당 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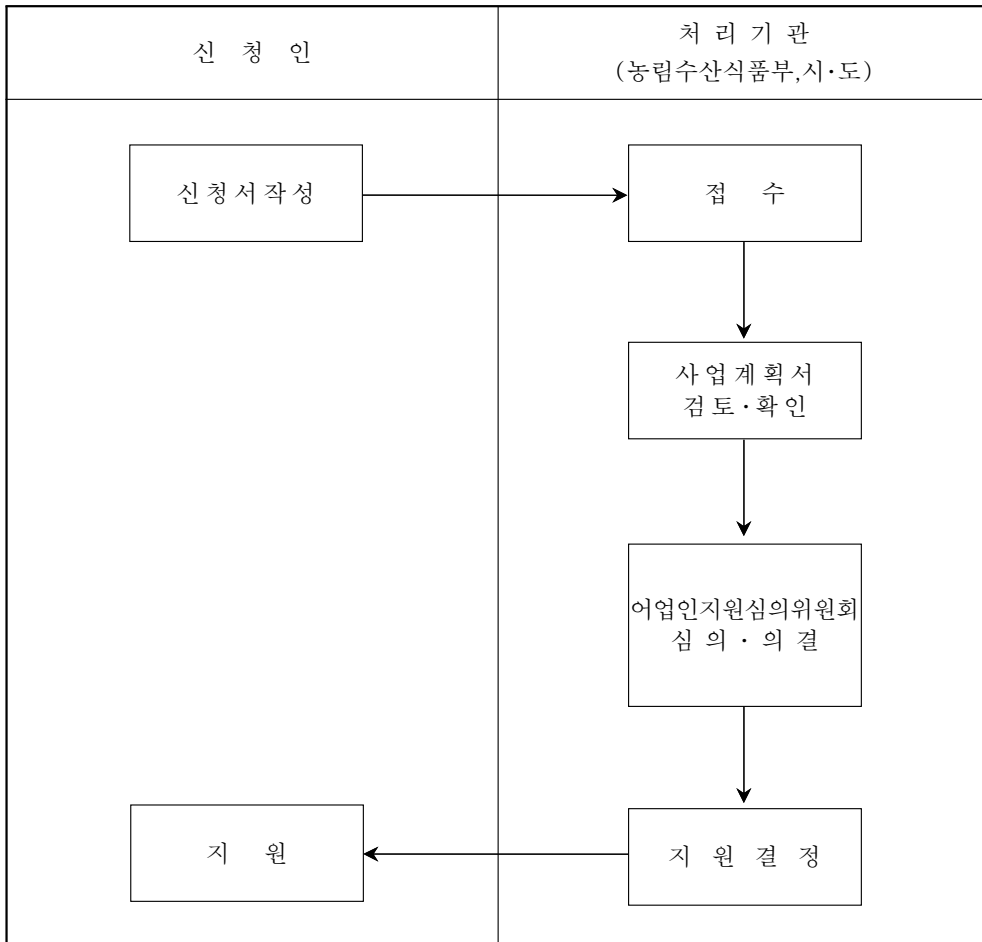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치보고를 한 사실을 어업정보통신국이 확인한 서류 또는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 작성요령

㉓란은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실업지원금지급신청서					
① 신청인에 관한 사항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		승선기간
어업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사항	② 허가(등록)번호		③ 허가(등록)기간		
	④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⑥ 어선명				
	⑦ 어선번호			⑧ 건조일자	
	⑨ 톤수			⑩ 선체질	
	⑪ 기관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육상디젤 <input type="checkbox"/> 디젤	⑫ 기관의 마력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어선원대표 (서명 또는 인) 어업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자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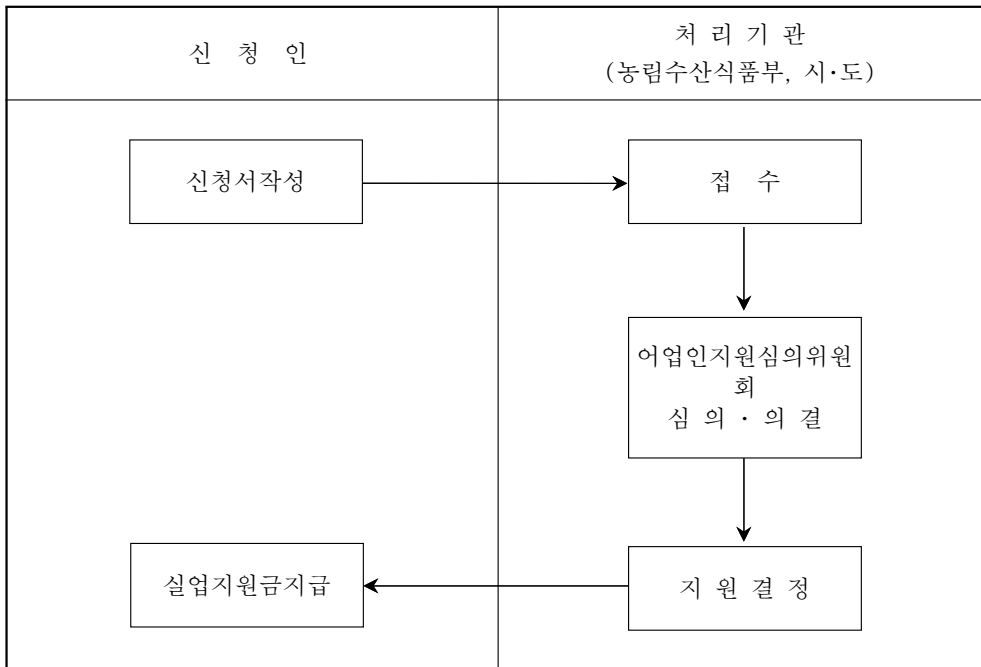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2. 선원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명부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원명부 1부
3.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작성요령

1. ①란을 기재하는 경우 어선원의 수가 많은 때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이전에 실업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도 ①란에 기재하고 신청서 앞쪽의 신청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3. ④란은 어업허가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⑩란은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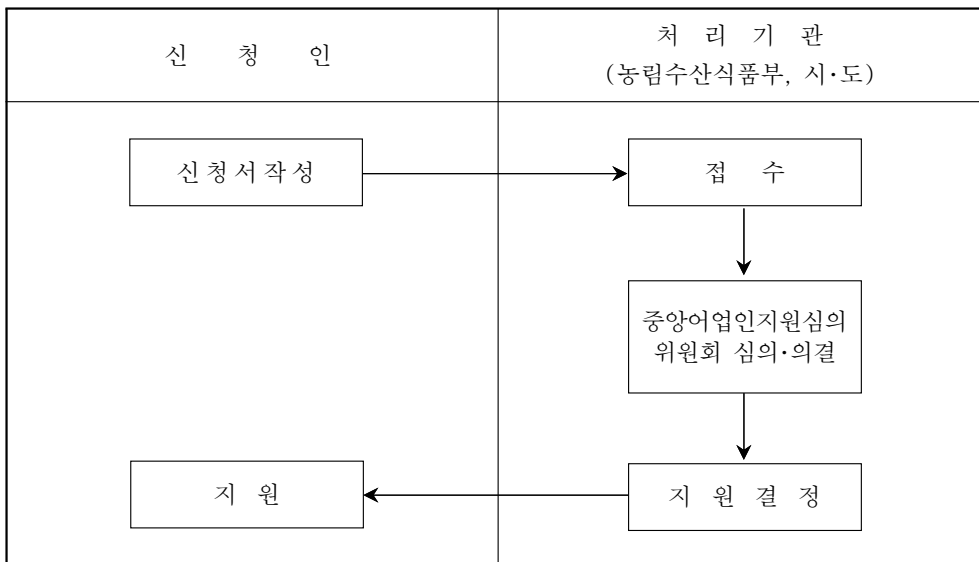
(뒤 쪽)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최근 3년간 사업매출액(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신청시까지의 사업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세무관서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등 관련산업을 경영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④란은 해당되는 업종에 √표시를 합니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정	1996·8·8	법률 제5152호
일부개정	1996·8·8	법률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9·2·5	법률 제5809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2007·1·3	법률 제8220호
	2007·4·11	법률 제8377호
	2008·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2009·4·22	법률 제9627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라 설정된 수역(水域)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3. "어업"이란 수산동식물(水産動植物)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어업활동"이란 어업이나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集魚),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선박에 필요한 물건의 보급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하여는 「배타적경제수역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漁業調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하 "특정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어업의 허가 등) ①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의 허가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허가 절차, 허가증 발급,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허가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의2(불법 어업활동 혐의 선박에 대한 정선명령) 검사(檢事)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 어업활동 혐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정선명령(停船命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박은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이 그 협정, 그 협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입어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入漁料)를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減額)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어료의 금액, 납부 기한·방법, 감액·면제 기준 및 그 밖에 입어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승인)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교육실습 또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잡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승인증의 발급 및 비치(備置), 승인 사항의 표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 사항"은 "승인 사항"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증 발급, 승인 사항, 표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수수료) ① 외국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감액·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이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제한 또는 조건은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어획물 등을 옮겨 신는 행위 등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실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어획물 등의 직접 양륙 금지) 외국인이나 외국어선의 선장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揚陸)할 수 없다. 다만, 해양사고의 발생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허가 및 승인의 취소 등)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이하 "어업활동등"이라 한다)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하천회귀성 어종의 보호 및 관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내수면에서 알을 낳는 하천회귀성 어족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의 외측 수역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6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이익과 책임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5조제1항의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 제11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자
4. 제13조에 따른 어업활동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항구에 직접 양륙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승인을 받

- 지 아니하고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10조에 따라 제8조제1항의 승인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한 또는 조건이나 변경된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3조(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벌칙) 제5조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8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몰수 또는 추징) 제17조,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어획물 및 그 제품, 선박, 어구(漁具) 또는 그 밖의 어업활동등에 사용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7조, 제17조의2 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 승선, 검색, 나포(拿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선박이나 그 밖의 압수물을 반환한다는 취지
2. 담보금의 금액
 -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고지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위반 사항의 내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담보금의 보관·국고귀속 및 반환 등)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

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
-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 사유로 해당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경우 등 담보금 보관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위반 선박에 대한 사법절차 등의 세부 시행 사항) 제23조에 따른 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제24조에 따른 담보금의 보관, 국고귀속 및 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수산관련법령집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 삭제 <2010.3.17>

부 칙 <제5152호, 1996. 8. 8>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1997.8.6 대통령령 제15449호에 의하여 1997.8.7부터 시행]

②(第5條 내지 第15條의 적용에 관한 特例)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外國人 및 水域에 관하여는 期限을 정하여 第5條 내지 第15條의 規定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5153호, 1996. 8. 8> (정부조직법)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8>省略

<69>法律 第5152號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의權利의行使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1項 本文·第2號, 第8條第1項 本文, 第10條, 第13條, 第14條第2項 및 第16條중 "水産廳長"을 각각 "海洋水産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4號, 第5條第4項, 第6條第1項第2號·第3號, 第8條第1項 本文, 同條第3項, 第9條第1項·第3項, 第11條 但書 및 第12條 但書중 "農林水産部令"을 각각 "海洋水産部令"으로 한다.

第4條 省略

부 칙 <제5809호, 1999. 2. 5>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權의權利의行使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 但書 및 第12條 但書중 "海難事故"를 각각 "海洋事故"로 한다.

⑦내지 <17>생략

부 칙 <제8220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377호, 2007. 4.11> (수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水産業法 第54條의2"를 "「수산업법」 제56조"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 <제8852호, 2008. 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
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2> 까지 생략

<64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
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 단서, 제12조 단서 중 "海洋水産部令
"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16조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6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제9627호, 2009. 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水産業法"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56조의 規定에 의하여"를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97· 8· 6 대통령령 제15449호
일부개정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6호
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1호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7>

제2조(특정금지구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은 별 표1과 같다. <개정 2007.3.27>

제3조(어업등의 허가사항)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어업의 종류
2. 어선의 규모
3. 부속선의 척수
4. 포획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예상어획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종류, 어업의 종류에 따른 어선의 규모, 부속선의 척수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조의2(사법경찰관)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경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0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

[본조신설 2007.3.27]

제4조(입어료)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는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입어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30톤이하의 어선(부속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만원
2.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어선 : 3만원에 총톤수 30톤을 초과하는 1톤에 대하여 1천원씩을 더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는 예상어획량 1톤단위로 산정하되,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3.27, 2007.10.31, 2008.2.29, 2010.4.20>

④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간내에 대한민국 통화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08.2.29>

⑤입어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입어료의 감액·면제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입어료의 감액·면제, 납부방법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어료를 감액·면제하거나 그 납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허가·승인의 취소요구등) ①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이 소속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인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정지명령등(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3.2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진술조서사본, 위반사실확인서 사본등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삭제 <2007.3.27>

제8조(위반선박등의 나포·억류 통보) ①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선박(이하 이 조에서 "위반선박"이라 한다) 또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 경우에는 당해위반선박의 선적국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선박의 명칭 및 총톤수
2. 위반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선장의 성명 및 주소
4. 승무원의 수

5. 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②검사는 위반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판결에 관한 사항을 당해 위반선박의 선적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담보금의 액수에 관한 기준)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 위반정도, 위반횟수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담보금이 있는 때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지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보금의 납입연월일
2. 담보금의 액수
3. 담보금의 납부사유
4. 국고귀속사유 및 그 발생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담보금의 국고귀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검사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부 칙 <제15449호, 1997.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1호 및 제2호의 <생략:별표1%> 규정은 199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시행일

수산관련법령집

에 관한 규정) 법률 제5152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2.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경제수역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에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법 제5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9976호, 2007. 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351호, 2007.10.31>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제20677호, 2008. 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항·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59> 까지 생략

부 칙 <제22127호, 2010. 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별표 1] <개정 2008.2.29>

특정금지구역(제2조관련)

1. 대한민국 동해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경제수역
 - 가. 북위 38도 37분 01.1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 나. 북위 38도 37분 00.78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1도 59분 50.76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 다. 북위 38도 15분 09.9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동경 131도 59분 50.78초(동경측지계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 라. 북위 38도 15분 07.33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15분)와 육안과의 교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 가. 북위 38도 03분 10.44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육안과의 교점
 - 나. 북위 38도 03분 09.80초(동경측지계 북위 38도 03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0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 다.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3도 59분 53.41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 라. 북위 37도 30분 10.04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3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5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 마. 북위 37도 10분 10.18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동경 124도 29분 53.26초(동경측지계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 바. 북위 37도 10분 22.83초(동경측지계 북위 37도 10분)와 육안과의 교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중 배타적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역
 -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8· 1· 10 해양수산부령제 43호
일부개정 1999· 8· 24 해양수산부령제133호(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4· 8· 7 해양수산부령제277호
2007· 5· 4 해양수산부령제369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타법개정 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제2조 (허가신청절차) ①「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어업활동을 개시하고자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선박마다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외국정부는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신청서 집계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기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3조 (공동신청) 외국인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하여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어업활동허가를 위한 신청사항의 확인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활동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5조 (허가증의 교부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한 경우에는 당해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어업활동허가현황 및 입어료부과내역서

2. 입어료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의하되, 그 내용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기재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다음 각 호의 1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당해부속선의 수와 동일한 수의 허가증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어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2. 어업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등을 교부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

한 입어료납부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6조 (허가증의 비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증을 허가받은 선박의 조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당해부속선의 조타실에 허가증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증의 재교부)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허가증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8조 (허가증의 반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활동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선박이 침몰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표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선박마다 별지 제1도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판(이하 "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조타실 좌우 측면의 중앙부에 각각 붙여야 한다.

제10조 (표시기의 게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2도에 의한 표시기를 선박의 마스트 상단부에 게양하여야 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안으로 들어오는(이하 "입역"이라 한다) 경우

2. 배타적경제수역밖으로 나가는(이하 "출역"이라 한다) 경우

3. 배타적경제수역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11조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활동허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번호의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선명
2. 선박의 총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
3.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또는 선장의 성명이나 주소
4. 2인이상이 공동으로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의 외국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5. 선장
6. 통신방법 또는 주파수
7.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3조 (어획량의 한도)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수산동식물의 종류, 해역 및 선박별로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획량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4조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등)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7.5.4>

제15조 (입어료의 징수절차)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입어료의 납입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시험·연구 등의 승인신청) ①외국인(외국정부가 당해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의 승인(이하 "시험·연구승인"이라 한다)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마다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등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서류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 구역, 어획계획량과 승선원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량
2. 기존 어업자의 어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에 미치는 영향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시험·연구승인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17조 (수수료)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00톤미만의 선박 : 3만원
2. 총톤수 100톤이상 1천톤미만의 선박 : 5만원
3. 총톤수 1천톤이상의 선박 : 10만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수료의 감액 또는 면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8.7, 2008.3.3>

제18조 (어업활동허가 및 시험·연구승인시의 제한 또는 조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3.3>

제19조 (어획물의 전적금지의 특례)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부속선에 옮겨 싣는 경우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선박에 옮겨 싣는 경우

제20조 (어획물의 직접양륙금지의 특례)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선박의 선장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9.8.24>

1.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선박 또는 인명의 안전유지상 부득이한 경우

제21조 (법령위반행위의 보고 등)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 감독공무원은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외국선박의 선장 또는 그 종사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위반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2.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위반조서 사본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사본

제22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거나 시험·연구승인을 얻은 외국인등이 법,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 (행정처분의 절차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인등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행

한다. <개정 2008.3.3>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처분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외국인에게 직접 교부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관에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제24조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조치)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 등의 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정지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제25조 (행정처분상황의 통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1. 부산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 및 도지사(충청북도 지사를 제외한다)
2. 해양경찰청장
3.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한 검사

제26조 (행정처분상황의 기록)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활동허가대장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7조 (정선명령) ①검사 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사법경찰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선박을 정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1.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계양
2.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사이렌·뱃고동 기타 음향신호에 의한 엘(L)의 신호 (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3.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의한 엘(L)의 신호(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
4. 마이크론 또는 육성

②제1항에서 "장음" 또는 "장광"이라 함은 3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하며, "단음" 또는 "단광"이라 함은 1초간 계속 소리를 울리거나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제28조 (어업감독공무원의 승선조사결과보고) ①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를 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어획물·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한 조사(이하 "승선조사"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
식에 의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고, 그 보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08.3.3>

②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29조 (서류의 표기문자) 법,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작성되는 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문서를 제출받는 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영문외의 문자로 작성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08.3.3>

제30조 (준용규정)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21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시험·연구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어업활동허가"는 "시험·연구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
가"는 "승인"으로 본다.

부 칙 <제43호, 1998. 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호, 1999. 8.24>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0조제1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⑤내지 ⑤생략

부 칙 <제277호, 2004. 8. 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69호, 200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7조제2항·제3항 단서, 제18조, 제21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단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뒤
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
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2쪽,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
식, 별지 제6호서식 2쪽, 별지 제7호서식 2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
식 2쪽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를 각각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로 한다.

수산관련법령집

<22> 부터 <63> 까지 생략

부 칙 <제125호, 2010. 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 내지 제11조, 제11조의3, 제17조(조업구역에 한한다)"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별표 1]

어업활동허가번호 및 시험·연구승인번호의 부여방법

(제11조제2항 및 제31조관련)

1. 어업활동허가번호 및 시험·연구승인번호는 국호의 약자,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2.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과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는 가운데 점으로 구분한다.
3. 국호의 약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일본국 : J 중화인민공화국 : C 러시아연방 : R 기타국 : E
4. 업종 또는 허가·승인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어업활동허가
기선저인망어업 : 21 트롤어업 : 22 선망어업 : 23 채낚기어업 : 24
자망어업 : 25 안강망어업 : 26 봉수망어업 : 27 통발어업 : 28
연승어업 : 29 기타어업 : 30 어업외의 어업활동 : 40
나. 시험·연구승인 : 70
5. 허가·승인의 일련번호는 허가·승인의 순서에 따른 업종별 일련번호로 한다.
(예시)
가. 어업활동허가번호의 예 : E21·0045(기타국의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허가 제45호)
나. 시험·연구승인번호의 예 : E70·0001(기타국의 시험·연구승인 제1호)

[별표 2] <개정 2008.3.3>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 등(제14조관련)

허가어업의 종류	허가선박의 규모	부속선의 허용기준	
	톤 수	종 류	척 수
기선저인망어업	140톤 미만	-	-
트롤어업	140톤 미만	-	-
선망어업	130톤 미만	등 선	2척 이내
		운 반 선	4척 이내
채낚기어업	90톤 미만	-	-
자망어업	70톤 미만	-	-
안강망어업	90톤 미만	-	-
봉수망어업	70톤 미만	-	-
통발어업	70톤 미만	-	-
연승어업	70톤 미만	-	-

비고 : 1. 톤수는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어업에 관한 협정·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표에서 정한 허가선박의 규모 또는 부속선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외국인이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한 어업인 때에는 위 표에서 정한 어업에 해당하는 허가선박의 규모 및 부속선의 허용기준에 의한다.
4. 외국인이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어업이 위 표에서 정한 허가어업 외의 어업인 경우로서 위 표에서 정한 어업과 유사하지 아니한 어업인 때에는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업의 방법, 어구 및 선박의 규모 등에 대한 당해 외국의 허가 등의 기준에 준하여 어업활동허가를 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자원의 보호,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업활동에 사용되는 어구의 규모 및 수량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0.5.31>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제18조관련)

1. 일반준수사항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해양경찰청장 및 검사의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에 관한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어업활동허가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검사 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이 승선하여 서류·어획물 등을 조사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승선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한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기타국의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 NO
E21-0045

(2) 승선조사하고자 하는 연·월·일·시·분을 각 두단위씩 구분하여 “DATE” 다음에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1997년 3월 22일 12 : 30분의 경우 :
DATE9703221230

(3) 승선조사하고자 하는 수역의 위치를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WAIT” 다음에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동경 132도20분 북위 36도30분인 경우 :
WAIT E13220N3630

(타전례 총괄)

NOE21-0045-DATE9703221230-WAITE13220N3630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일정기간 및 해역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정지명령서에 의하여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이 경우 정지명령서는 당해 외국정부에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1)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기지의 보위상 필요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상 필요한 경우

마.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선박을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행위
- (2) 기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

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영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지구역에서 시험·연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어업활동허가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입어료를 납부하기 전에는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조업구역으로 한정한다), 제18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을 하는 경우에 붙이는 제한조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총톤수 60톤 이상의 기선저인망어선 및 총톤수 70톤 이상의 트롤어선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중 동경 128도 이동의 해역에서는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속한 어획실태파악을 위하여 보고대상선박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매일 정오를 기준으로 선박의 위치 및 어획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이하 “정오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보고는 무선통신 등에 의하여 매일 17시까지 하여야 한다.
-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 번호를 “NO” 다음에 통보(이하 “타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타전례) 기타국의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 NO
E21-0045

(나) 선박의 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동경 133도10분 북위 35도18분인 경우 :
LOCA E13310 N3518

(다)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FISH” 다음에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 (소수점이하 1단위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타전한다.

타전례)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어류 70.7톤을 어획한 경우 :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라) (다)의 영문 어종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어류 FISHES

○가자미류 FLOUNDERS	○정어리 SARDINE
○명태 POLLACK	○전어 HICKORY SHAD
○병어 POMFRET	○청어 HERRING
○참조기 REDLIP CROAKER	○밴댕이 ROUND HERRING
○기타조기 OTHER CROAKER	○고등어 MACKERELS
○강달이 CONVENIAS	○전갱이류 JACK MACKERELS
○갈치 HAIR TAIL	○삼치류 SPANISH MACKERELS
○붕장어 SEA EEL	○꽂치 SAURY
○양미리 SAND LANCE	○아귀 MONKRISH
○복어류 PUFFERS	○기타어류 OTHER FISHES
○멸치류 ANCHOVIES	

2) 갑각류 CRUSTACEA

○새우류 SHRIMPS	○기타갑각류 OTHER CRUSTACEA
○게류 CRABS	

3) 연체동물 MOLLUSCA

○오징어 SQUID	○낙지 ROULPE SQUID
○문어 OCTOPUS	○기타연체동물 OTHER MOLLUSCA

4) 기타수산동물 OTHER AQUATIC ANIMALS

(타전례 총괄)

NOE21-0045-LOCA E13310N3518-FISHJ POLLACK50.5 SALMON30.3

나. 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싣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가.(2)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경우에는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후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은 직접 양륙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한민국의 영해 외측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수산물관련법령집

- (1)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기타국의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
NO E21-0045

- (2) 선박의 현재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동경 133도10분 북위35도18분인 경우 :
LOCA E13310 N3518

- (3) 양륙한 항구의 지명 및 부두명을 “PORT” 다음에 영문자로 타전하되, 부두명은 항구의 지명 다음에 괄호로 표시한다.

타전례) 여수 신부두인 경우 : PORT YEOSU(NEWPORT)
부산 제5부두인 경우 : PORT PUSAN(5PORT)

- (4) 양륙한 어종별 총톤수를 “FISH” 다음에 가.(2)(라)에 의한 영문 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1단위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례)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우 :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례 총괄)

NOE22-0045-LOCA E13310N3518-PORT PUSAN(5PORT)-FISH POLLACK 50.5 SALMON 30.3

라. 입역 또는 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입역신고 또는 출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입역 또는 출역하기 6시간전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역 또는 출역하기 1시간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2) (1)의 보고는 다음의 약호 및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입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NT”로, 출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UT”로 타전한다.

(나)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부여한 선박의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 승인번호를 “NO” 다음에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기타국의 기선저인망어업의 어업활동허가번호 제45호의 경우 :
NO E21-0045

(다) 입역 또는 출역하고자 하는 일시를 “DATE” 다음에 연·월·일·시·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두 단위씩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1997년 3월 22일 10 : 20인 경우 :
DATE 9703221020

(라) 선박의 현재위치를 “LOCA” 다음에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동경 133도10분 북위 35도18분인 경우 :

LOCA E13310 N3518

(마) 입역 또는 출역시 통과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외측 경계선의 위치를 “PASS” 다음에 동경 및 북위로 구분하여 타전하여야 한다.

타전례) 동경 132도26분 북위 36도20분인 경우 :

PASS E13226N3620

(바) 어종별 총누계 어획톤수를 “FISH” 다음에 가.(2)(라)에 의한 영문어종명과 아라비아숫자(소수점 이하 1단위까지 표시한다)로 타전한다.

타전례) 고등어 30.3톤, 명태 50.5톤, 기타어류 70.7톤을 양륙한 경우 :

FISH MACKERELS 30.3 POLLACK 50.5 OTHER FISHES
70.7

(타전례 총괄)

○입역의 경우 :

INT-NOE22-0045-DATE9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NONE

○출역의 경우 :

OUT-NOE22-0045-DATE9703221020-LOCAE13310N3518-PASSE13226
N3620-FISHPOLLACK50.5 SALMON30.3

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보고 또는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무선국의 통신기, 호출부호 및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한다.

(2) 보고 또는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보고 또는 신고방법에 따라 첫머리에 “AMEND”라고 타전하고 다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전화를 이용하여 보고 또는 신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에 의하여야 한다.

4. 어획실적의 기록·유지 및 보고

가. 어획일자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매년말을 기준으로 한 어획실적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어획실적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해 3월말까지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08.3.3>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 동일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동일한 위반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산정은 최근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가. 어업활동허가기간 또는 시험·연구승인기간의 종료로 동일인이 동일선박으로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새로이 승인을 얻은 경우
 - 나.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당해 선박이 임차되어 동일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동시에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법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지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4.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행정처분에 관하여 외국과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합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5.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의 정지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그 처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정지일수에 30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또 다시 그 행정처분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 등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의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8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활동의 허가(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시험·연구 등의 승인(이하 이 표에서 “승인”이라 한다)을 얻은 때	법 제13조	취소	-	-
3. 법 제5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외의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4.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5. 법 제5조제3항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허가번호판 또는 승인번호판을 비치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6.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역·출역 또는 어업활동 중임을 표시하는 표시기를 게양하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게양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7.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식별하기 곤란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한 표시기를 게양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8. 법 제5조·법 제8조·이 규칙 제10조 및 이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사항 또는 승인사항이 변경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등을 계속한 때	법 제13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60일
9.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종별 할당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취소	
10. 법 제6조·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규모 또는 어구규모를 초과하거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 또는 사용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수산관련법령집

11. 법 제7조·영 제4조 및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 활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최종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취소		
12.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하거나 기타 대한민국의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선박을 이용한 때	법 제13조	정지 90일	취소	
13.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간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14.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획일자별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종별 어획실적을 기록·유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유지 또는 보고를 허위로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15.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3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채취 금지체장, 포획·채취금지구역과 기간, 어구사용금지구과 기간, 특정어구의 사용금지, 어망목 및 어구규모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어업활동 등을 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16.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정선·승선·서류조사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정지 60일	취소	-
17. 법 제10조 및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조건중 이행처분의 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제한·조건에 위반한 때	법 제13조	정지 20일	정지 40일	정지 60일
18.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거나 다른 선박으로부터 받아 실은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19.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직접 양륙한 때	법 제13조	정지 30일	정지 60일	취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어업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Fishing License)	
1.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Name of Vessel and Reg. [License] No.)	_____
2. 어업의 종류 (Type of Fishery)	_____
3.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_____
4. 어선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_____
5. 신청인 (Applicant)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_____ (Address)	_____
6. 선 장 (Captain) 성 명 _____ (Name) 주 소 _____ (Address)	_____
7. 승선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_____
8. 무선전신의 방법 (Radio-Telegraph Communication) 긴 급 호 출 무 선 호출부호 _____ 전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Radio Call Frequency) Telegraph Communication Frequency)	_____

9.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 류 _____ 수 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_____ (No.) _____ (Storage Capacity)

10. 허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조업수역(위치) (Area)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사용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조업기간 (Period)	어획예정수량(톤) (Planned Amount of Catch [t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부속선의 척수 :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

12.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Auxiliary Vessel and Specifications)

구 분 (Type)	선 명 (Name of Vessel)	총 톤 수 (Total Tonnage)	마 력 (HP)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license to fish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신청인 _____ (서명)
(Applicant) _____ (Signature)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application vessel has license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 [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Fisheries Act])

※ 비 고 : _____ 한 글 _____ 영 어
(Remark _____ Korean _____ English)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신청서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Conducting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1. 신청인 (Applicant)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	
2. 선 박 (Vessel) 명 칭 _____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_____ (Reg.[License] No. _____) 총톤수 _____ 톤 선장의 성명 _____ (Total Tonnage) (Ton) (Captain's Name) _____	
3. 선박의 국적 및 선적항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_____	
4. 선박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5.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6. 어업활동(어업제외)의 목적 (Purpose of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sive of Fishing)) _____ _____	
7. 무선전신의 방법 (Radio-Telegraph Communication) 긴 급 호 출 무 선 호출부호 _____ 전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Radio Call Frequency) Telegraph Communication Frequency)	

(뒤 쪽)

8.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 류 _____ 수 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_____ (No.) _____ (Storage Capacity)

9. 허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조업수역(위치) (Area)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사용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조업기간 (Period)	어획예정수량(톤) (Planned Amount of Catch [t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 부속선의 척수 :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

11.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Auxiliary Vessel and Specifications)

구 분 (Type)	선 명 (Name of Vessel)	총 톤 수 (Total Tonnage)	마 력 (HP)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어업제외)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ding fishing) to be conducted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신청인 _____ (서명)
(Applicant).....(Signature)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1. 어업활동허가를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의 허가(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application vessel has license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2. 해당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 [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n Fisheries Act])

※ 비 고 : _____ 한 글 _____ 영 어
(Remark _____ Korean _____ English)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앞 쪽)

어업활동등의 허가·승인신청서집계표

(Summary Sheet for the Application for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신청국가명 : _____
(Country)

선박의 종류 (Type of Vessel)	신청우선 순위 (Priority)	신청인 주소·성명 (Name and Address of the Applicant)	선박의 명칭 (Name of Vessel)	어업활동 등의수역 (Area)	어업활동 기간 (Period)	어획예정량 (톤) (Planned Amount of Catch[ton])	비 고 (Remarks)

48277-34011일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업인이 어업활동등을 할 수 있도록 허가 또는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The Government of hereby requests for the issuance of a license or authorization for the nationals of to pursue fishing-related activities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r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_____국 _____(서명)
(Country :)(Signature)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비고 1.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Remarks) (This form should be completed in Korean or English.)

2. 신청우선순위는 어업활동허가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Priority" means the priority g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licensing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3. 선박의 종류별로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This form should be completed separately for each vessel type.)

4. 수역은 동경 및 북위를 연결한 네점을 표기한다.

(Area should be expressed by the combination of four coordinates[east longitude and north latitude] constituting the area.)

5. 신청인의 주소·성명란에는 개인에 있어서는 그 성명과 주소를,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관명·법인명 등과 주소를 기재한다.

(The "Name and Address" of applicant means, for individuals, that of the natural person, and for institutions, that of the legal.)

6. 어업활동허가와 시험·연구 등의 승인 신청은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The application for a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y and the authorization for experiment and research should be completed separately.)

[별지 제5호서식]

어업활동허가대장

연월일	허가번호	신청국가	신청인주소명	어업인종류	선박의명칭	무선전신의 방법		조업수역	조업기간	어획당량(톤)	입어료	행정처분상황	비고
						호출부호	긴급호출무선전신연락주파수						

48277-34211비
97.7.25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쪽)

10.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 류 _____ 수 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_____ (No.) _____ (Storage Capacity) _____

11. 허가신청의 내용
(Contents of License)

조업수역(위치) (Area)	조업대상물 (Target Species)	허가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조업기간 (Period)	어획할당량 (Quota [t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 부속선의 척수 :
(No. of Auxiliary Vessels)

13.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of Auxiliary Vessels and Specifications)

구 분 (Type)	선 명 (Name of Vessel)	톤 수 (Tonnage)	마 력 (HP)
_____	_____	_____	_____

14. 제한 또는 조건 :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 (Attached)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을 허가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have been licensed to conduct fishing-related activities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 on Foreigner's Fishing,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_____년 _____월 _____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_____인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ficial seal)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3.3>

(1 쪽)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제외)허가증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Exclusive of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1. 허가번호 _____
(License No.)

2. 어선의 명칭 및 등록(허가)번호 _____
(Name of Vessel and Reg.[License] No.)

3. 어업활동(어업제외)의 목적 _____
(Purpose of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sive of Fishing))

4. 어선의 국적 및 선적항 _____
(Vessel's Nationality and Port of Registry)

5. 어선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6. 허가받은 자
(License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_____
(Address)

7. 선장의 성명 및 주소 _____
(Captain's Name and Address)

8.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48277-34411일
97.7.25 승인

380mm×268mm
(보존용지(1종) 120g/m²)

9. 무선전신의 방법
(Radio-Telegraph Communication)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무선 전신연락 주파수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Telegraph Communication Frequency) (Radio Call Frequency)

10.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 류 _____ 수 량 _____ 선척용량 _____
(Type) (No.) (Storage Capacity)

11. 허가내용
(Contents of License)

어업활동기간 (Period)	어업활동해역 (Area)	어업활동의 종류 (Type of Activities)	허가어구 및 수량 (Gear Type and No.)	어업활동의 대상물 (Target Species)	대상물의 수량 (Quantity of Catch)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 부속선의 척수 : _____
(No. of Auxiliary Vessels)

13. 부속선의 선명 및 제원
(Name and Specifications of the Auxiliary Vessel)

구 분 (Type)	선 명 (Name of Vessel)	총 톤 수 (Total Tonnage)	마 력 (HP)
_____	_____	_____	_____

14. 제한 또는 조건 :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 (Attached)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어업제외)을 허가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have been licensed to conduct fishing-related activities(exclusive of fishing)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_____년 _____월 _____일
(Date)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_____ (Official seal)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시험·연구승인신청서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 for Catch or Coll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for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

1. 시험·연구를 할 자
(Research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

2. 선 박
(Vessel)
명 칭 _____ 허가(등록)번호 _____
(Name) _____ (License(Reg.) No.) _____
총톤수 _____ 톤 선장의 성명 _____
(Total Tonnage) (GT) (Name of the Captain) _____

3. 시험·연구의 목적
(Purpose of the experiment or research)

4. 승인신청의 내용
(Contents of the Application)

시험·연구등의 예정해역 (Expected Area of Experimentation or Research)	포획·채취할 수산동식물의 종 류 (Target Species)	포획·채취의 방 법 (Methods of Catch or Collection)	포획·채취 예정기간 (Expected Period of Catch or Collection)	포획·채취 예 정 량 (Expected Amount Catch or Collecti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 등을 위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등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uthorization for catch or collection of aquatic animals and plants for research purpose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48277-34911번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뒤 쪽)

년 (Date)	월	일)
신청인 _____(서명) (Applicant)(Signature)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귀하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구비서류(Requirement)		
1. 시험·연구승인을 신청한 선박이 자국의 법령에 의한 어업활동 등의 허가 (면허·승인·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One copy of document verifying the vessel which applied for the approval of experiment and research has license for fishing, etc. [authorization, approval, report, etc. included] in accordance with its domestic laws.		
2. 해당 어업방법에 대한 해설서(어업방법이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방법과 현저 하게 다른 경우에 한한다) 1부 (Explanation of fishing methods[in case of fishing metho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Korea fisheries act])		
3. 시험·연구 등의 계획서(시험·연구 등의 시기, 주된 시험·연구구역, 어획계획 량, 승선원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Plan of experiment and research, etc. [period and area of experiment and research, etc. planned catch amount, status of crew members should be included])		

[별지 제13호서식]

시험·연구승인대장

연월일	승인번호	신청국가	신청인의주소·성명	어업의종류	선박의명칭	무선전신의 방법			시험·연구수역	승인기간	시험·연구의목적	수수료	행정처분상황	비고
						호출부호	긴급호출 무선전신 연락주파수	무선전화주파수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3>

(1 쪽)

<p>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등의 승인증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for Experimentation/Research in the EEZs of the Republic of Korea)</p>	
1. 승인번호 _____ (Certificate No.)	
2. 승인을 얻은 자 (Certificate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주 소 _____ (Address)	
3. 선 박 (Vessel)	
명 칭 _____ 허가(등록)번호 _____ (Name) (License No.)	
총톤수 _____ 톤 선장의 성명 _____ (Total Tonnage) (Ton) (Name of the Captain)	
4. 시험·연구의 목적 (Purpose of the Experiment/Research)	

5. 선박의 국적 (Vessel's Nationality)	
6. 선박의 제원 (Vessel Specifications)	
총톤수 _____ 톤 기관의 출력 _____ 마력 최대속력 _____ 노트 (Total Tonnage)(GT) (Engine Power) (HP) (Maximum Speed) (Knots)	
7. 승무원 수 _____ 명 (No. of Crew Members)	

8. 무선전신의 방법
(Radio-Telegraph Communication)

호출부호 _____ 긴급호출무선 _____ 무선전화주파수 _____
(Call Sign) (Emergency Call Radio (Radio Call Frequency) Telegraph Communication Frequency)

9. 화물의 적재가능용량
(Cargo Capacity)

종류 _____ 수량 _____ 선창용량 _____
(Type) (Amount) (Storage Capacity)

48277-35111일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쪽)

10. 승인내용
(Contents of the Authorization)

시험·연구등의 예정해역 (Area)	포획·채취할 수산물식물의 종류 (Target Species)	포획·채취의 방법 (Methods of Catch or Collection)	활동예정 기간 (Expected Period of Catch or Collection)	포획·채취 예정량 (Expected Amount Catch or Collection)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 제한 또는 조건 : 별첨
(Restrictions or Conditions) : (Attached)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시험·연구 등을 승인 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application for experimentation or research has been appro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8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년 월 일
(Date)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ficial seal)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위 반 조 서 (Record of Violation)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Address)	_____
2. 선장 또는 그 대리인 (Captain or Captain's Agent)	
성 명 (Name)	_____
주 소 (Address)	_____
3. 어업활동 등의 종류 (Type of Fishing Activities)	_____
4. 어획물 (Type of Catches)	_____
5. 선박의 명칭 (Name of Vessel)	_____
6. 허가·승인번호 (License·Authorization No.)	_____
7. 계류예정항명 (Mooring Port)	_____
8. 위반일시 (Time of Violation)	_____
9. 위반장소 (Area of Violation)	_____
10. 단속장소 (Location where vessel was stopped)	_____
11. 적용법조 (Relevant Provisions)	_____
12. 압수물 (Items Confiscated)	_____
13. 사건경위(Details Concerning the Violation)	

48277-35311일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14. 처분의견(Comments)	

년	월
(Date)	
사법경찰관 직급 _____성명 _____인	(Official)(Grade).....(Name).....(Signature)
비고 : 계류항 명은 선박을 계류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Remarks) (Name of "Mooring Port" is necessary only when the vessel is moored)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3.3>

허가·승인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요구서 제 호	
1.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주 소	_____
2. 선박의 명칭	_____
3. 허가·승인번호	_____
4. 위반사항	
일 시	_____
장 소	_____
내 용	_____

5. 행정처분 근거법령	_____
6.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_____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구비서류	
1. 위반조서 1부	
2.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는 진술조서 1부	
3. 위반사실확인서 기타 위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행정처분요구 기관장) _____ 인	
농림수산물부 장관 귀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No.)
<p>행정처분통지서 (Notice of Administrative Measures)</p>
<p>1. 허가(승인)를 받은 자 (License[Authorization] Bearer)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Name and Affiliation) _____ 주 소 _____ (Address) _____</p>
<p>2. 선박의 명칭 _____ 3. 허가·승인번호 _____ (Name of Vessel) _____ (License[Authorization] No. _____)</p>
<p>4. 위반사항 (Contents of Violation) 일 시 _____ 장 소 _____ (Time) _____ (Place) _____ 내 용 _____ (Contents) _____ _____</p>
<p>5. 근거법령 (Related Acts and Regulations) _____</p>
<p>6. (경고의 경우)시정사항(For Warn)(Action to be Taken) _____ (_____)</p>
<p>7. (경고의 경우)시정기한 :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For Warn) (Action to be Taken by _____) 위의 자 및 선박은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 등에 대한 [경고(정지)를 명합니다. [허가를 취소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e [warn, suspension, cancellation] of the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for the above-mentioned person and vessel, as a result of the above-mentioned viol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put type="checkbox"/> (정지처분의 경우) 어업활동허가(승인)의 정지처분기간 (For Suspension) (Period of Suspension of the License[Authorizat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일간) (FROM _____ TO _____) (For.....days) (Date _____) 행정처분기관의 장 _____인 (Chief of Administrative Office) _____(Official seal)</p>

48277-35511일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18호서식]

외국선박행정처분상황기록부

행정 처분 번호	행 정 처 분 연월일	국가명	허가 승인 번호	외국인의 주소·성명	선박의 종 류	단속 일자	행정 처분 내용	관 련 법 령	행 정 처 분 기 관	단 속 사 법 경 찰 관	단속 해역	사건 번호	비고

48277-35811비
97.7.25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승선조사결과보고서	
1. 선박의 국적 _____	2. 승선조사일시 _____
3. 허가(승인)를 받은 자 소속·성명 또는 기관명 _____ 주 소 _____	
4. 선 장 성 명 _____ 주 소 _____	
5. 어업활동 등의 종류 _____	
6. 선박의 명칭 _____	7. 허가·승인번호 _____
8. 어획물의 종류 및 수량(톤수) _____ _____	
9. 승선조사시 발견한 특이사항 _____ _____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위의 선박에 승선하여 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48277-35911보
97.7.25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수산관련법령집

[별지 제20호서식]

외국선박승선조사상황기록부

조사 일시	조사자 소 속	조사자직급 ·성 명	국가명	허 가· 승인번호	외국인의 주소·성명	선박의 종 류	선박의 명 칭	어획물의 종 류 및 수량	승선조사시 발견한 특이사항	비고

48277-36011비
97.7.25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8.3.3>

<p>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정지명령서 (Suspension Order of Fishing-Related Activities or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p>	
<p>1. 정지하고자 하는 해역 (Area of Suspension)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The area of suspension in terms of longitudes and latitudes for four points encompassing the area)</p>	
<p>1) 동경 _____, 북위 _____, (Latitude) (Longitude)</p>	<p>2) 동경 _____, 북위 _____ (Latitude) (Longitude)</p>
<p>3) 동경 _____, 북위 _____, (Latitude) (Longitude)</p>	<p>4) 동경 _____, 북위 _____ (Latitude) (Longitude)</p>
<p>2. 정지기간 (Period of Suspension)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_____ ~ _____ (From : _____ To : _____)</p>	
<p>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활동허가 또는 시험·연구승인에 붙인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하여 위의 하역에서는 위의 기간동안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를 금지하오니 이 사실을 귀 국가 소속 선박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hereby notifies the relevant authorities of of the suspension of Fishing-Related Activities,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 for the above-mentioned period and area according to restrictions or conditions Regarding License for Fishing-Related Activities, Authorization for Experimental or Research Purpose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the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Etc.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p>	
<p>_____년 _____월 _____일 (Date _____)</p>	
<p>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ficial seal)</p>	
<p>_____국 _____귀하 (Country : _____) (To : _____)</p>	

수산물관련법령집

[별지 제22호서식]

어획실적보고서
(Catch Report)

선박의 국적 (Vessel's Nationality)		선 질 (Building Materials)	강선·목강선 (Iron·Wood and Iron)
본선총톤수 (Mother Ship's Tonnage)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승인을 얻은자의 성명 (License or Authorization Bearer's Name)	
본선마력 (Mother Ship's HP)		선장의 성명 (Captain's Name)	

허가·승인번호 (License or Authorization No.)		입항일자 (Port Entry Date)	
어획할당량 (Quota)		항해일수 (Period of Voyage, in days)	
출항일자 (Port Departure Date)		조업일수 (Fishing Period, in days)	

(단위 : M/T)

MONTH	T O T A L	어 류 (Fishes)																				갑 각 류 (CRUSTACEA)		연 체 동 물 (MOLLUSCA)				기타		
		가자미류 (FLOUNDER-S)	명태 (POLLOCK)	병어 (POMFRIET)	참조기 (REDLIP CROAKER)	기타조기 (OTHER CROAKER)	강달이 (CONVE-NIAS)	갈치 (HAIR TAIL)	붕장어 (SEA EEL)	양미리 (SAND LANCE)	복어류 (PUFFER-S)	멸치류 (ANCHOVIES)	정어리 (SARDINE)	전어 (HICKORYSHAD)	청어 (HERRING)	밴댕이 (ROUND HERRING)	고등어 (MACKEREL)	전갱이류 (JACK MACKEREL)	삼치류 (SPANISH MACKEREL)	꽂치 (SAURY)	아귀 (MONK FISH)	기타어류 (OTHER FISHES)	새우류 (SHRIMP)	게류 (CRABS)	기타갑각류 (OTHER CRUSTACEA)	오징어 (SQUID)	문어 (OCTOPUS)	낙지 (ROULPE SQUID)	기타연체류 (OTHER MOLLUSCA)	기타수산물 (OTHER AQUATIC ANIMALS)
CODE NO.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TOTAL																														
1																														
2																														
3																														
4																														
5																														
6																														
7																														
8																														
9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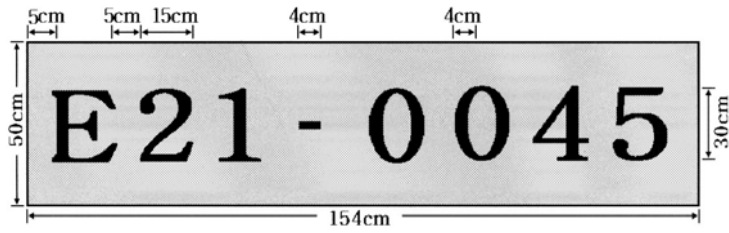
- 단위 : 어획량이 1톤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1단위로 표시하시오(unit : calculate the amount of production less than 1 ton, to one place of decimals)
- 선실 : 해당란에 ○표하시오(Building materials : Mark ○ in the given column)

48277-36111보
97.7.25 승인

364mm×25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 제1도]

어업활동허가번호판 또는 시험·연구승인번호판의 규격 및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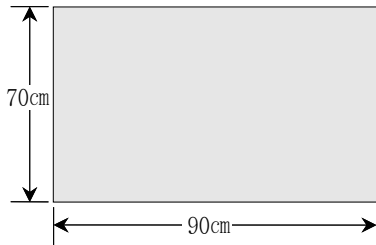


1. 바탕 부분은 검은색, 문자 부분은 허가 번호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승인의 경우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부속선이 있는 경우 그 부속선의 문자 부분은 푸른색으로 한다.
2. 표지에는 야간에 약자 및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료를 칠한다.
3. 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제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별지 제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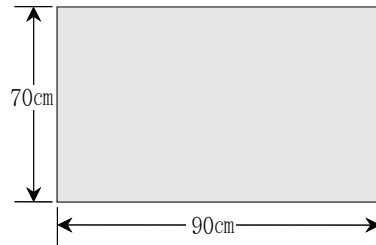
표시기의 규격 및 재질

1. 입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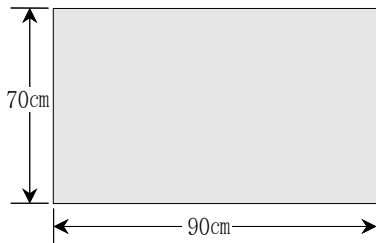
재질 : 노란색 천

2. 출역의 경우



재질 : 녹색 천

3. 어업활동 또는 시험·연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재질 : 붉은색 천

수산관련법령집(하)

2010년 11월 인쇄
2010년 11월 발행

발행인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편집인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88(중앙동 1번지) 2동 7층
Tel : (02)500-2359
Fax : (02)503-9127

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73-1775
